#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1. 개항 후의 국제무역
- 2. 국내적 상품유통의 변동
- 3. 방곡령실시의 사례와 원인
- 4. 사회신분제의 동요
- 5. 개항기 지주제와 농업경영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1. 개항 후의 국제무역

#### 1) 불평등조약 체계의 성립

#### (1) 일본에 의한 개항과 무관세무역

1876년 2월 3일(양력 2월 27일)<sup>1)</sup> 일본과 맺은 朝日修好條規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6개월 후인 7월 6일에 조인된 조일수호조규 부록과〈朝鮮國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이하,〈한일무역규칙〉으로 칭함), 그리고 수호조규 부록에 부속하는 왕복문서 등에 의해서상호 밀접하게 보완되어 일본의 조선 침략을 보장해 주는 불평등조약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sup>2)</sup>

이들 각 조약의 내용 중 국제무역과 관련된 조항만 정리하면, 부산항과 차후 별도의 2개 항구 개방, 무관세무역, 일본화폐의 유통, 자유무역, 조선 연안무역의 특권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항구 추가 개방의 문제는 조일수호조규 제4관과 제5관에 규정된 것으로 '향후 20개월 이내에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개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일본국 인민의 왕래·통상을 준허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조선은 1876년에 개항한 부산에 이어 1880년에 원산을, 1883년에 인천을 개항함으로써, 일본에 뒤이어 수호조규를 체결한 미국·청·영국·러시아 등 열강의 정치 경제적 침

<sup>1)</sup> 음력 1895년 11월 16일까지는 조선의 모든 공문서에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후의 모든 일자는 음력으로 표기하였다.

김경태, 〈개항과 불평등조약관계의 구조〉(《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비평사, 1994), 24~25쪽.

략을 허용하게 되었다.

둘째, 무관세무역은 일본정부가 수출입세 5%를 용인할 의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측 대표의 국제법 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성립된 것으로, 국제 관계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가혹한 국가주권의 침탈이었다. 조선보다 앞서서구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던 일본과 청국도 비록 극도로 낮은 세율이었지만 관세의 전면적 부인에는 이르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은 국내시장과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수단을 상실했을뿐만 아니라 주요한 정부재정원으로 삼을 수 있는 관세수입을 박탈당한 것이었다.3)

셋째, 일본화폐의 유통은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현행하는 화폐로써 조선국인민이 소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의 화폐로써 일본국 토산의 화물을 매득할 수 있으며 이로써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들에서 인민은 상호 통용할 수 있다'(「수호조규 부록」제7관)라고 하는 조항에서 허용되었다. 이는 개항장 내에서만 허용된 것이었지만 1883년 이후 일본 제일은행이 한국의 해관세를 관리하고 조선정부가 1883년부터 당오전 등 惡貨를 발행하면서부터 일본의 은화·지폐가 조선인민의 신용을 획득하는 단서가 되었고 조선상인을 일본상인에 종속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4)

넷째, 자유무역은 '양국이 이미 通好하였으니 피차 인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할 수 있다.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干預하지 못하며 또 제한 금지하지 못한다'(「조일수호조규」제9관)라고 하여 조일무역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어떠한 간섭이나 규제도 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유무역 규정은 통상관계를 봉건적 국가권력의 개입과 제한으로부터 이탈시켜 자유롭게 전개시킨다는 점에서 일정한 진보성을 가지고 있으나, 무관세무역 조항과 함께 면포 등 외래상품의 무제한 유입과 쌀・콩 등 국내 곡물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의 경제적인 수탈과 지배를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

<sup>3)</sup> 김경태, 〈개항 직후의 관세권 회복 문제〉, 위의 책, 249~254쪽.

<sup>4)</sup> 도면회, 〈화폐유통구조의 변화와 일본금융기관의 침투〉(《1894년농민전쟁연구》 1, 역사비평사, 1991), 235~236쪽.

이었다.

다섯째로, 조선 연안무역의 특권이란 '조선국정부나 인민이 지정된 무역항이외의 다른 포구로 물건을 운수하려 할 때 일본국 상선을 고용할 수 있다' (〈한일무역규칙〉제8칙)는 조항에서 확보되었다. 문맥만으로는 일본상인이 자유롭게 연안무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일본상인들이 금융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조선상인을 고용주로 내세우고 자국 상선을 동원하여 연안무역을 할 경우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무역상의 불평등 조항들은 여타 편무적 영사재판권, 租界地설정권, 연안측량권과 해도 작성권 등 정치 군사적 불평등조항들에 의하여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 있었다. 특히 편무적 영사재판권은 조선에서 일본인이조선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모두 일본인 관리가 심판한다는 것으로, 일본인의 범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1881년 하반기 부산 영사재판소 기록에 의하면 2천 명도 안 되는 거류민 중에서 형사범칙자총수가 248명이었다. 그 중 처분된 자 36명, 기각 15명, 취하 119명, 조사 2명, 미조사 30명, 未濟 3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범칙사건의 대부분이조선인과의 분쟁으로 보이는데 처벌된 자가 극히 적은 점으로만 보더라도이 조항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5)

1876년부터 무역거래가 시작되면서 위 불평등조항들로 인하여 많은 폐단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은 무관세무역 조항과 조약체결 과정에서 일본측의 농간으로 들어간 곡물 수출입 조항이었다. 조선측은 조선 전기 이래 미곡 수출을 금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1876년 2월의「수호조규」담판 과정에서도 일본정부가 곡물 수출입 조항을 넣으려던 것을 반대하여 철회시켰었다. 그러나 조선측의 반대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타결된 그해 7월의「한일무역규칙」제6칙은 조선용 원문과 일본용 원문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조선용 원문에는 '이후 조선국 항구에 재류하는 일본인민은 식량용 미곡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 일본측 원문에는 '이후 조선국

<sup>5)</sup>姜徳相、〈李氏朝鮮開港直後に於ける朝日貿易の展開〉(《歷史學研究》 제265호, 1962),4等.

항구에서 식량용 미곡 및 잡곡도 수출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조선 측은 곡물 교역 금지의 전제 아래 인도적인 견지에서 흉년시의 개항장 재류 일본인의 식량 사정을 고려하여 곡물 수출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조항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재류하는 일본인민'이란 자구를 삭제함으로써 수출입무역을 조선측이 허가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6)

이후 곡물은 정규 무역과정 외에 밀무역을 통해서도 대량 유출되면서 국내의 곡물가격을 폭등시키고 식량 수급사정을 혼란시키기 시작하여 도시 빈민과 일반 빈농의 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변경 지방인 함경도의 경우 원래 경상도 지방으로부터 미곡의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개항 후경상도 지방의 미곡이 일본으로 유출됨에 따라 농민들의 유민화가 급증하였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일본과의 조약에 직접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대항 조처를 강구하였다. 그리하여 개항장인 부산의 豆毛浦에 해관을 개설하여 수출입 무역에 종사하는 조선 상인에게 먼저 수세할 것을 의정하 고 세목을 책정하여 1878년 8월 10일 경상도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실행을 지시하였다. 여기서 규정된 세율은 수출세 15%, 수입세 24%의 고율이었다.

이로 인하여 수출입품의 대종을 차지하던 곡물·면포류 거래가 격감하게 되자, 부산거류 일본상인 등 2백여 명이 동래부로 가서 과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공사 花房義質 역시 조선 정부에 대해 두모포에서의 收稅를 정지하지 않으면 병력을 동원하겠다는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조선정부는 일본측의 위협에 굴복하여 11월 26일 당분간 수세를 정지하라는 훈령을 동래부에 내림으로써 이 사건은 약 3개월만에 일단락되었다.7)

그러나 이 단계까지도 조선정부는 내국세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관세의 독자적인 성격과 그 의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정부의 인식 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1880년 7월 金弘集이 제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 고 체류기간 중 주일청국외교관 何如璋・黃遵憲과 접촉한 것, 1881년 신사유 람단의 일본 견문 등으로부터 근대적 통상관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으며,

<sup>6)</sup> 김경태, 〈개항과 미곡문제의 구조〉, 앞의 책, 48~58쪽.

<sup>7)</sup> 김경태, 〈개항 직후의 관세권 회복 문제〉, 앞의 책, 271~286쪽.

이로부터 자주적 입장에서 일본측과 조약 개정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8) 김홍집의 귀국 이후 조선정부는 1880년 12월과 1881년 9월, 그리고 조미조 약 체결 직후인 1882년 5월 3차에 걸쳐 일본과 조약 개정 교섭을 추진하였 는데,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무관세무역 철폐와 곡물 유출 금지 조항의 설정 이었다. 그러나 개정 교섭은 일본측의 회피와 지연 술책으로 인하여 계속 결 실을 맺지 못하였으며, 1882년 5월의 제3차 교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 으나 이 역시 군인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무기 연기되었다.9)

부진한 조약 개정 교섭에 돌파구를 열어 준 것은 1882년 4월 6일에 조인된 「조미수호조규」였다.10) 조미수호조규 체결 교섭은 청국 李鴻章이 對日견제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에 대해 구미제국과의 조약 체결을 권고함으로써시작되었다. 이 조약은 후술하듯이 최혜국대우라는 치명적인 불평등조항을 포함하지만 수출입 관세와 곡물 유출 금지 조항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그간 부진했던 일본측과의 조약 개정 교섭을 타결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동「조규」제5관에 의하여 조선정부의 관세 자주권이 회복되었다. 수입품의 경우 일상 생활용품은 10% 이하, 사치품·기호품은 30% 이하, 수출품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5% 이하의 관세율이 책정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과 청국이 구미 열강에 의하여 관세 자주권을 상실한 채 수입세 5%를 유지하고 있던 것보다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어서 제8관에서는 국내에 식량난을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미국 관리를 통하여 미국민의 곡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특히 인천항에서는 곡물 수출을 일체 금지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국과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은 관세자주권을 회복하고 수출 입관세의 설정, 곡물수출 금지 조항 등을 확보하였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정 세 속에서 1882년 6월 이후 더욱 불평등한 조약체계를 강제당하게 되었다.

<sup>8)</sup> 이병천, 〈개항과 불평등조약체제의 확립〉(《경제사학》제8집, 1984), 65~69쪽.

<sup>9)</sup> 김경태. 〈불평등조약 개정교섭과 방곡문제〉, 앞의 책, 112~145쪽,

<sup>10) 《</sup>高宗實錄》, 고종 19년 4월 6일.

#### (2) 청의 속방화정책과 불평등조약체계의 성립

1882년 6월 5일에 발생한 군인폭동을 진압한 청국은 1882년 8월 22일「朝 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통해 정치·경제적으로 조선을 예속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청은 종래의 전통적인 정책, 즉 '조선이 비록 중국의 속 국이기는 하나 조선의 政敎와 禁令은 조선 스스로가 主持하도록'하던 정책 을 버리고 궁극적으로 식민지화를 겨냥한 속방화 정책을 취한 것이다.

무역과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청국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기존의 어떤 나라보다 극심한 불평등조항을 강요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① 한성·양화진 에서의 行棧(상점·창고·여관) 개설권 ② 내지통상권 ③ 연안무역권과 연안 해운권 ④ 招商局輪船 항로 개설권 등이다.

첫째, 중국 상민이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와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首都시장을 개방하게 되었고, 이는 그후 한성의 시전상인을 비롯한 조선상인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내지통상권은 '양국 상민이 피차의 내지에서 상점을 개설하지 못하고 상품 매매도 못하되, 피차의 商務委員과 지방관이 발행하는 護照(이하 여행권으로 청함)를 받을 경우 土貨(본국 상품)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표현대로 아직은 수출품 매매만 허용한 부분적 내지통상권에 머물고 있었지만 조만간수출입상품 모두를 매매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조선 내륙의 상권을 위협하는 조항이 되었다.

셋째, 양국 상민은 피차의 개항장에서 모든 국내외 상품을 교역할 수 있고, 出口稅만 내면 본국 상품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할 수 있다고 하여 개항장과 개항장간의 연안무역 및 개항장과 미개항장간의 해운을 허용하였다. 다. 이는 청국과 일본이 밀수무역을 자행하게 하는 보장 장치로 작용하였다.

넷째, 당시까지 외국무역의 조선항로가 일본상선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청국은 자국의 대형 선박회사인 초상국 윤선을 상 해-인천간 왕래하게 하였다.

무역과 관련하여 이같은 불평등조항을 설정함과 아울러 청국은 영사재판

권을 더욱 확대 악용하여 조선인이 피고가 된 사건일지라도 중국 상무위원이 조선관원과 공동 재판하게 함으로써 조선측의 재판권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이 체결된 1882년 7월부터 1894년 청일전쟁기까지 이러한 영사재판권이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었다. 청국상인과 부랑아의폭력·사기·횡포라든가, 서해안에서 자행된 청국어민의 약탈·살인·폭력,압록강·두만강 근처 청국 비적의 약탈·방화·살인 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체포되어 재판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11)

이같이 심각한 불평등조항을 담고 있는 조청수륙무역장정은 다른 나라가 균점할 수 없다는 청국의 일방적 선언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그치지 않고 후술하듯이 「한일무역규칙」의 개정과 「조영조약」의 비준문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일본과의 조약 개정 교섭은 1883년 6월 시작되었는데, 조선측 교섭을 주관한 것은 조선 속방화정책의 일환으로 청국의 이홍장이 추천하여 고빙된 묄렌도르프였다. 그는 그동안 조선정부가 견지해 온 자주적 자세를 후퇴시키고 주로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조선 측 초안에 설정된 관세자주권, 수입관세 10%의 조항조차 탈락시킨 채 일본 측 초안을 거의 100% 반영한 내용으로 타결시켰다.

1883년 6월 22일 체결된「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이하「조일통상장정」으로 약칭함)에는 첫째, 조미조약에서 명시되었던 관세자주권이 부정되어 협정관세로 되었으며, 수입품은 8종으로 나누어 일본인의 생필품은 5%, 일반상품은 8~10%, 사치품은 25~30%, 화폐·金銀地金은 免稅로 하였고, 수출품은 면세품(화폐·금은지금)과 홍삼(15%)을 제외한 일체의 품목에 대해 5%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조청장정과 조미조약에서 인정되었던 내지관세권이완전히 부정되었다.

둘째, 조미조약과 조청장정에서 부분적으로 승인되었던 연안해운권과 연안 무역권이 통합 승인되었다.

<sup>11)</sup> 김정기, 앞의 글, 44~52쪽.

셋째, 조미조약에서 승인된 최혜국대우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는 '현재 또는 장래 조선정부가 어떠한 권리 특전 및 惠政恩遇를 막론하고 타국 관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으면 일본 관민도 즉시 일체 이를 균점할 수 있다'(제42관)라고 하여 차후 조선정부가 열강에게 허용하는 어떠한 이권이 있을지라도일본 역시 이와 유사한 이권을 양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곡물 수출 금지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조미조약에서와는 달리 방곡 시행 1개월 전에 반드시 지방관이 일본영사관에 알려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을 뿐 아니라, 인천항에서의 곡물 수출 금지권도 폐지하였다.12)

일본과의 조약에서는 조미조약에서 획득하였던 조선측의 관세 자주권이 침해되었고, 조청장정에서 인정되었던 내지관세권 역시 부정되었다. 조선측이 획득한 유일한 성과는 1880년 이래 견지해 왔던 곡물 수출 금지 조항의설정과 수출입 관세 설정이 제한된 형태로 관철된 것 뿐이었다. 일본으로서는 1876년 이래 줄곧 추구해 온 특권을 거의 대부분 획득하였다고 할 수있다.

최종적으로 영국은 이러한 불평등조항들을 완성된 형태로 성립시켰다. 영국은 1882년 4월 조미조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조영수호조규」을 체결하였지만 비준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가 조청장정 체결 이후 이와 대등한 조건의 조약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주일영국공사 파아크스(Harry. S. Parkes)는 1883년 5월경부터 조선이 체결한 조청장정과 영국이 청국・일본과체결한 조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1883년 타결된 조일통상장정까지 고려하여영국의 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약 초안을 새로 작성하였다.

교섭에 임한 조선측 대표는 영국측 초안을 거의 전적으로 수락할 수 밖에 없었다.<sup>13)</sup> 1883년 10월 27일에 체결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파아크스의 말대로 영국측 입장에서 최선의 것인 반

<sup>12)</sup> 이병천, 앞의 글, 82~87쪽.

<sup>13)</sup> 조약 교섭 당시 김옥균·박영효 등 개화파는 내지통상·연안무역·연안해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사재판권에 대해서도 쌍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묄렌도르프 및 민씨 척족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속에서 조약 체결 직전 권력 요직에서 밀려남으로써 조영조약 체결에 그들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없었다.

면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의 내용으로 되었다.

첫째, 관세율은 수출세 5%, 수입세 7.5%를 기본으로 하는 협정관세로 되었고 관세 이외의 내지과세를 일체 부정하였다. 특히 수입 대종품목인 면제품은 조일통상장정의 8%에서 7.5%로 인하되었다.

둘째, 부산·원산·인천 세 항구와 함께 조청장정에서 청국의 독점으로 규정해 놓았던 한성·양화진의 개방이 영국에도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 거류지 밖 4km까지 외국인에 의한 토지·가옥의 임차·구매권을 규정함으로써 개항장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셋째, 거류지에서 40km 이내를 여행권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보다 앞서 1882년 군인폭동 이후 조선과 일본이 제물포에서 체결한 「조일수호조규속약」에서 규정된 것을 균점한 것이었다. 또 수출품 구매의 경우에 대해서만 청국에 독점적으로 인정했던 내지통상권을 구매・판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 게다가 내지통상시 여행권의 발급권자는 영국영사이고 조선지방관은 부서 또는 날인만 하게끔 되었다.

넷째, 조일통상장정에서 인정되었던 연안무역권과 연안해운권이 역시 균점되었다. 특히 조선정부 또는 조선상인의 명의로 영국상선을 임차하여 조선국내 미개항장에 상품이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고 하여 미개항장으로의 침투 여지도 열어 놓았다.

이외에도 영사재판권과 최혜국대우가 조일통상장정과 마찬가지로 규정됨으로써 위 조영수호통상조약은 불평등조약의 완결판이 되었으며, 조선이 이후 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 등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들은 모두 이 조약을 원형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미국·청국도 최혜국대우 조항에 의하여 조선이 영국에 부여한 특권을 동일하게 균점하게 되었다.14)

불평등조약에 의하여 자본주의 열강이 탈취한 제특권, 통상항의 개방, 거류지의 설치, 저율의 협정관세, 내지통상권, 연안무역권과 연안해운권, 관세를 제외한 일체의 내지과세·연안과세의 면제, 치외법권, 최혜국대우 등은

<sup>14)</sup> 이병천, 앞의 글, 88~101쪽.

이제 조선을 이들 열강의 공업제품의 판매시장과 식량·원료 공급지로 재편하기 위한 기초 조건으로 되었으며 조선의 민족 산업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게 되었다.

#### 2) 국제무역의 추이(1876~1894)

#### (1) 개항 이전의 국제무역

개항 이전 조선의 대외 무역은 청·일본과의 전통적인 통교관계에 의한 公貿易과 私貿易이 있었을 뿐이며, 그것도 엄격한 국가의 감시하에서 행해졌다. 청에 대해서는 조공을 통한 공무역과 국경지역인 義州에서의 柵門開市와 함경도의 會寧·慶源 開市를 통한 사무역이, 일본에 대해서는 倭使의 왕래에 따른 부산 왜관에서의 공무역과 사무역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정규 무역 외에도 광범위하게 밀무역이행해지고 있었고 특히 책문·왜관을 통해 인삼·우피·곡물의 밀수출이 극성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면직물이나 일반 서양상품의 수입이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곡의 유출, 곡가의 등귀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15)

개항 직전 조청무역은 대체로 300~400만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16) 수출의 경우 금과 은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그밖에 우피·인삼·해삼·
虎皮·熊皮 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품은 서양 면제품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고급직물류·약종류·高級皓級類·寶褥 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즉 봉건지배층의 수요에 의한 소비품 비중이 높고, 金銀 등의 수출은 그에 대한 지불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적어도 개항 10년 전인 대원군 집정 초에 이미 '요즈음 洋貨가거의 온 나라에 널리 퍼져 이미 識者들이 우려하고 탄식하는 바가 되었다'고할 정도였고, 특히 서양면포는 책문무역의 최대 수입품으로 등장하였다.

<sup>15)</sup> 韓活劤.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일조각, 1970), 23~44쪽.

<sup>16)</sup> 姜德相, 앞의 글, 10쪽.

한편, 개항 직전의 조일무역에서 일본측의 수출상품으로는 솥·주전자·화로·톱·못·가위 등 일용기구와 漆器·縮綿 외에 특히 서양 목면·직물류를 轉賣해서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조선측의 수출상품은 미곡과 우피·호피·인삼·목면·곡물류 등이었다. 무역액은 1875년에 약 24만 5천원, 1876년에 약 16만원 정도로서 조청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약 12분의 1 내지 8분의 1에 불과한 것이었다.17)

#### (2) 일본의 독점무역기(1876~1882)

1876년 부산에 이어 원산(1880년), 인천(1883년)의 순으로 개방된 개항장은 무역에 종사하는 국내외 상인이 모여 들어 자본이 집중 투하되고 무역을 보조하는 교통·금융·통신 등 근대적인 유통수단을 정비하면서 기존의 한성·대구·평양 등 대시장을 압도해 나갔다.

반면, 육로를 통한 조청무역은 1년 평균 300~400만원이던 것이 1870년대 말부터 해마다 감소하여 1883년에 이르러서는 120만원 미만으로 쇠퇴하였 다.<sup>18)</sup> 이처럼 조청무역이 쇠퇴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개항장무 역이 무간섭, 무관세, 선박에 의해 자유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 데 반하여 조청무역은 정부의 간섭, 고율과세, 隊商 형식의 운수였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었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두 무역로의 질적 차이가 있었다. 육로를 통한 조청무역의 경우 수출품목은 인삼·종이 등 조선특산품 이외에 중국이 요구하는 상품을 발견하기가 곤란하였고 수입품은 전품목에 걸쳐 사치품의 성격이 농후하였다. 반면 조일무역은 광범한 수출시장을 가짐과 아울러 일반민중을 상품경제에 편입시키면서 전개되고 있었기에 조청무역을 압도할 수 있었다. 이 경향은 개항장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가속되었다. 예를 들어 원산의 개항은 부산과의 거리적 관계 때문에 주저하고 있던 북방상인의 조일무역 참가를 촉진하였다.

<sup>17)</sup> 김경태, 〈개항 직후의 관세권 회복 문제〉, 앞의 책, 258~261쪽,

<sup>18) 《</sup>通商彙編》 명치 17년, 釜山港之部, 242쪽.

이처럼 조선상인의 교역 대상이 육로를 통한 조청무역으로부터 개항장을 통한 조일무역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은 정부와 특권상인의 결합에 의한 구래의 시장통제의 해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조선상인이 일본상인의 개항장독점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19)

한편, 이 시기 대외무역의 추이를 살피는 데는 몇 가지 곤란한 점이 있다. 첫째, 1876년부터 1883년까지 대일무역은 무관세무역이었기 때문에 조선측에 통계가 없고 일본측이 일본 국내의 세관 및 區務所(일본의 미개항지 경우)와 부산의 일본 管理官廳에서 집계한 통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본측에서 정리한 통계들도 원자료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없고 대체적인 추이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대청무역은 서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밀무역의 규모를 추산할 수 없는데다가 육로를 통한 정규무역도  $1881 \sim 1882$ 년간의 자료밖에 남아 있지 않다.<sup>20)</sup> 이를 감안하면서 조선의 국제무역 추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877~1882년간 조선의 대외무역

(단위 : 천円)

		총 수	: 출	대	일 무	역	대 청	무 역
연도	총수입	상 품	사 금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6 古	\r =	Тн	상 품	사 금	Тн	十 章
1876				188	93			
1877				127	59	35		
1878				245	181	22		
1879				567	612	53		
1880				978	1,256	114		
1881	2,269	2,373	468	1,874	2,230	468	395	143
1882	1,852	1,931	529	1,562	1,769	529	290	162

\* 출전: 대일무역액은 梶村秀樹、〈李朝末期の綿業の流通および生産構造〉(《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發展》(東京;龍溪書舍,1977)): 국역본、〈이조말기 면업의 유통 및 생산구조〉(梶村秀樹 외、《한국근대경제사연구》、사계절,1983),108~116쪽;高嶋雅明、《朝鮮における植民地金融史の研究》(東京;大原新生社,1978),218쪽. 대청무역액은 姜德相、앞의 글、10쪽 참조.

<sup>19)</sup> 姜德相, 앞의 글, 10~11쪽.

<sup>20)</sup> 姜德相, 앞의 글, 10~14쪽.

\*주:1881~1882년간 조청무역액에는 인삼과 금은의 수출입액이 제외되어 있다. 당시 홍삼의 수출액만 추산하더라도 50~100만원이 되므로 이를 추가할 경우 수출입 무역액은 도합 100~150만원이 된다(姜德相, 위의 글, 12쪽).

위 표에서 보듯이 조선의 국제무역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일무역액(수출입 합산)은 1876~1877년 20만원대에 머물다가 1879년에 100만원을 넘고, 1880년을 경계로 300~400만원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리고 1880년부터 1882년까지 계속 수출초과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후술하는 품목별 구성에서 보듯이 곡물 수출의 급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반면 대청무역은 도표상으로는 1881~1882년 2년간 수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금은과 홍삼 수출액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위 두 품목을 합산하면 역시 수출초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표 2〉 1876∼1882년간 주요상품별 대일수출입액 구성

(단위:천円.()안은 수출·수입에 대한 백분비)

연 도		수		출		수	입
민エ	총 액	쌀	짬	우 피	섬 유 류	총 액	면 제 품
1876	93				10(11.5)	188	12( 6.2)
1877	59	2( 3.3)	4(7.1)	55(92.8)	2(1.2)	127	54(42.9)
1878	181	51(27.9)	25(14.0)	45(24.8)	19(10.4)	245	168(68.7)
1879	612	359(58.6)	99(16.2)	59( 9.7)	11( 1.8)	567	477(84.2)
1880	1,256	730(58.1)	119( 9.5)	193(15.4)	86(14.7)	978	768(78.6)
1881	2,230	381(17.1)	197( 8.8)	330(14.8)	162(7.3)	1,874	1,495(79.8)
1882	1,769	21( 1.2)	311(17.6)	292(16.5)	216(12.2)	1,562	1,283(82.1)

\*출전:하원호, 〈개항후 제국주의의 침탈과 경제구조의 변동(1876~1894)〉(《水邨朴 永錫敎授華甲記念韓國史學論叢》下, 탐구당, 1992), 9쪽.

이처럼 급성장한 대일무역의 품목별 구성은 어떠하였던가?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수출은 쌀·콩·牛皮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외에도 해삼·소라·멸치·포·건어 등 해산물과 생사·견포·솜·면포·마포 등 섬유류, 그리고 인삼이 수출되고 있었다.<sup>21)</sup>

<sup>21)</sup> 姜德相, 앞의 글, 5~8쪽.

쌀 수출은 조선쌀이 수입쌀 중에서는 뛰어나게 품질이 좋아 일본인의 기호에 적합하다는 점, 일본쌀에 비해 극히 저렴한 점 등의 이유로 일본 자본주의 발전의 중심지였던 오사카(大阪)·고베(神戸) 지방에 집중되어, 공장노동자용의 값싼 미곡을 공급함으로써 일본자본주의 형성 발전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22)이 당시 일본은 조선의 값싼 쌀을 수입하는 반면 일본의 쌀을 고가로 런던의 미곡시장을 비롯한 유럽과 호주 시장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일본 국내의 지주에게는 고미가를, 자본가에게는 저임금정책을 보장하여 일본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에 기여한 것이다.23)

쌀 수출량이 극심한 변동을 보이는 원인은 풍흉에 따른 수확량의 증감과 조선내의 정치사회적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1876~1877년은 미증유의 대흥년이라 수출량이 적었을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일본산 쌀 3만 7천여 석 (14만 4천원)과 보리 5천 2백여 석(3만 1천원)을 수입할 정도였다.<sup>24)</sup> 1878년부터 작황이 좋아져 수출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1879~1880년에는 풍작인 데다가 일본의 米價가 급등하여 수출이 급증하였다. 1881년의 경우수출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9월 이후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미곡 수출이 급감하였고, 1882년은 흉작이 아니면서도 군인폭동의 영향으로 수출이 격감하였다.

이에 반하여 콩은 기후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기에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일본인은 콩을 간장·두부 등의 원료로 사용하였는데, 조선산 콩이 값싸고 품질이 비교적 좋아서 그 수입을 조선에 의존하여 매년 콩밭을 뽕밭으로 바꾸는 자가 많아지는 등 콩의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 조선인 입장에서는 콩 수출의 이익이 높아쌀의 흉작에 대비하여 점차 콩의 재배 면적을 넓히고 있었다.25)

우피는 이미 철종대부터 고종초에 걸쳐 私商都賈에 의하여 동래・의주 등

<sup>22)</sup> 吉野誠、〈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12, 朝鮮史研究會, 1975), 37~38等.

<sup>23)</sup> 김경태, 〈개항과 미곡문제의 구조〉, 앞의 책, 71~74쪽,

<sup>24)</sup> 김경태, 위의 글, 59~62쪽.

<sup>25)</sup> 하원호, 〈곡물의 대일수출과 농민층의 저항〉(《1894년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1991), 245~246쪽.

국경지방에서 정부의 금압에도 불구하고 수출되었던 품목이다.26) 특히 일본의 군비 확충이 진전됨에 따라 군화·배낭 등 피혁 수요가 증대되면서부터 중요한 수출품목이 되어 1881년부터 수출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세 가지 품목 외에 해삼·포·건어·김·멸치 등은 일본상인이 큐슈·호카이도産을 중화요리 재료로 중국에 수출하여 큰 이익을 올리고 있던 품목이다. 따라서 일본상인이 이들 조선산 해산물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는 가공 기술이 유치하여 양호한 수출품이 없었기에 일본상인은 조선상인에게 가공법을 가르쳐 중국으로 중계수출하려 한 것이었다.27)

생사·견포·솜·면포·마포 등 섬유류의 수출량이 상당히 보이지만, 이러한 섬유류 수출은 같은 시기 수입되는 외국제 면제품의 수입량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는 없다. 게다가 1884년 이후 섬유류 수출량은 더욱 감소하여 수출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sup>28)</sup>

무역수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 금 수출량이 187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금은 면세품인 데다가 다른 물품에 비해 휴대·운반이 손쉽고 편리한 관계로 수출량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 파악이 어렵지만, 1876년의 흉년으로 일본에서 곡물을 수입하고 그 지불수단으로 수출되어 신고된 금의 양만 해도 1878년까지 약 8만 6천원에 달하고 있다.<sup>29)</sup> 이는 당시 수출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이다.

이외에 신고되지 않은 금과 은의 양을 합하면 2년 동안 수출된 금과 은의 양은 30만여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금의 수출량은 다음 항에서 서술하듯이 일본정부의 국가적 정책에 의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조선의 화폐제도 확립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sup>26)</sup> 한우근, 앞의 책, 19쪽.

<sup>27)</sup> 姜德相, 앞의 글, 5쪽.

<sup>28)</sup> 梶村秀樹, 앞의 국역본, 116쪽의 〈표 3〉.

<sup>29)</sup> 김경태, 〈개항과 미곡문제의 구조〉, 앞의 책, 65쪽. 이 글에서의 금 유출 통계 가 〈표 1〉보다 많은 것은 〈표 1〉의 수치가 사금만 집계한 데 반해 이 글에 실린 통계는 사금 외에 금지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품목은 〈표 2〉에서 보듯이 면제품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1883년 전후 당오전 대량 주조를 위하여 구리·아연 등 금속의 수입이 급증한 적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들 면제품은 모두 영국산 제품으로서 상해를 경유하여 수입한 것을 다시 조선에 중계수출하는 형태로 수입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상인으로서는 중계무역에 들어간 추가부담(운송비·이자·換差額 등)을 줄이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팔아버려야 했으므로 큰 이윤을 남길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일본상인이 면제품류를 수입한 것은 단순히 그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보다 그 판매 대가로 곡물을 매집하여 수출하려는 데 의도가 있었다. 즉 면제품류의 구입원가와 일본시장에서의 곡물 판매가격의 차이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었다.

수입면제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生金巾(canequin)30)・寒冷紗31)의 두 종류로 양자가 항상 섬유제품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887년 당시 이 두 품목은 어떤 산간 벽지에도 보급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두 품목은 아직 사치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층의 직접생산자층까지 구매하지는 못하고 하급관료층・도시중인층・상인층, 지방관청의 서리층, 나아가 농촌의 신흥상인층이나 지주・부농층이 구매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32)

따라서 이 시기 무역의 기본적인 구조는 조선이 일본에 대해 쌀·콩 등 곡물과 우피를 수출하고 일본은 영국 면제품을 중계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1883년 청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등장한 이후에도 청일 양국 상인의 경합 관계 속에서 더욱 확대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 (3) 청·일 경쟁무역기(1883~1894)

가. 청의 해관 주도와 일본 제일은행의 침투 일본의 독점무역은 1882년「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조미수호조규」, 그

<sup>30)</sup> 생금건은 포르투갈어 canequin의 번역어로서, 공장제 공업제품으로 가장 기본 적인 平織 면포이다. 조선에서는 唐木·洋木 혹은 廣木이라고도 불리었으며 겨울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sup>31)</sup> 얇고 거친 기계제 면포로서 여름옷 제조에 사용되었다.

<sup>32)</sup> 梶村秀樹, 앞의 책, 128~129쪽.

리고 1883년 이후 영국·독일·러시아 등 서구 열강들과 체결한 통상조약들에 의하여 종언을 고하였다. 이어서 1883년 6월 이후 인천·원산·부산 순으로 해관이 설치되고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무관세무역 역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33)

조선정부는 관세 수입을 근대화정책의 자금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해관을 설치하기도 전에 관세를 담보로 청·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함으로써 해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욱이 청은 묄렌도르프를 조선해관의 총세무사로 고빙하게 하여 일본의 해관 침투를 봉쇄하고 이를 통해 청의 경제적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묄렌도르프는 청국상인의 활동에 하등의 혜택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1884년 2월 해관업무의 핵심인 관세 징수 업무를 겨우 2만 4천원의 차관을 제공한 일본 제일은행에 위탁 양도함으로써 청이 우려한 일본의 해관 침투를 허용하였다.

1884년 말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청의 이홍장은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상권 확대의 일환으로 조선해관을 청국 해관에 통합하기 위하여 묄렌도르프를 해임하고 청국 해관의 총세무사하트(Robert Hart)의 직속부하인 메릴(Henry F. Merill)을 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하트와 이홍장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하트는 일본이획득한 해관세징수권까지 장악함으로써 조선해관을 완전히 청국 해관에 통합하려 한 반면, 이홍장은 관세 수입의 관리권을 영국인 통제 하에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하여 일본 제일은행은 해관세 징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조선정부에 대해 계속적인 단기차관을 제공하면서 일본의 경제적 침투의 든든한 교두보가 되었다.

조선은 1889년 이래 고종 주도하에 새로운 외채를 끌어들여 청국 차관을 상환함으로써 청으로부터 해관의 인사·운영권을 회수하는 한편, 은행을 설립하여 일본으로부터 해관세 징수권을 회수하여 해관의 자주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알렌·데니·메릴 등 고용 외국인을 통한 차관 도입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모두 청의 조직적인 해외 방해운동

<sup>33)</sup> 김순덕, 〈1897~1905년 관세정책과 관세의 운용〉(《한국사론》15집, 서울대 국 사학과, 1986), 267쪽.

으로 인하여 좌절되었다.

최종적으로 1890년 데니의 후임으로 내무부협판에 임명된 르젠드르(C. W. LeGendre)가 적극적으로 전개한 다섯 차례의 차관 교섭도 모두 좌절되었다. 청은 이를 계기로 189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관세 수입을 담보로 20 만냥의 차관을 또 다시 제공하여 해관에 대한 관리권과 해관세의 선취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조선 관세의 예속화, 즉 조선 재정의 예속화를 심화시켜 1894년 청일전쟁까지 조선 해관은 청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34)

청이 해관의 인사·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제일은행은 해관세 장수 업무를 통하여 일본의 경제적 진출과 일본상인의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894년까지 조선에 지점을 설치한 은행은 제일은행(1878), 제18은행(1890), 제53은행(1892) 등 3개였지만, 이중 제일은행은 자본축적이 미약한 단계에 있었던 일본자본주의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하는 데 선봉을 맡고 있었다.35) 이 은행은 부산(1878), 원산(1880), 인천(1883), 한성(1887) 등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여 일본인의 무역·상업 금융은물론 1886년부터는 일본정부와의 위탁계약 하에 조선산 금 매입으로 조선의부를 유출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36)

그러나 제일은행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본력의 견실함에 있었다기보다는 일본 및 조선정부의 예금을 취급하고 있었던 점, 조선 해관세 취급특권을 획득했던 점, 이를 바탕으로 한조선정부에 대한 소규모차관의 지속적인 공여 등 다른 일반은행에는 없는 특별한 신용창조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884년에 획득한 조선 해관세 취급특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해관세 취급특권은 일본 제일은행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신용 창조 능력을 가져 왔다. 첫째 조선해관세 취급 자체가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수료를 받는 유리한 사업이었다는 점(처음에는 해관세 취급

<sup>34)</sup> 김순덕, 위의 글, 294~300쪽.

<sup>35)</sup> 제18은행·제53은행의 조선에서의 금융활동은 1894년까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高嶋雅明, 앞의 책, 240~247쪽).

<sup>36)</sup> 村上勝彦,〈植民地〉大石嘉一郎 編,《日本産業革命の研究》(下)(東京;東京大學出版會,1975) 下. 정문종 역,《식민지》(한울출판사,1984).

액의 0.25%, 1887년의 제2차계약 때는 5%), 둘째 해관세라는 가장 확실하고 안 정적인 예금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셋째 해관세를 수납하고 그 대신 납 세자에게 발행한 예탁어음이 은행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유통되면서 일본 상인이 발행하는 '韓錢於音'의 신용도를 제고시켰다는 점 등이다.37)

이같은 제일은행의 금융적 지위로 인하여 관세 수납 화폐로서 일본화폐가 유통하게 되고 이에 의해 일본상인의 무역·상업활동이 엄호되었다. 나아가서 1900년 전후 조선정부가 화폐제도 수립을 위해 열강들과 차관 교섭을 할때마다 제일은행은 해관세 취급은행이라는 기득권을 이용하여 해관세를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선정부의 화폐정책을 저해할 수 있었다.

당시 해관세는 수출세·수입세·톤세를 합쳐서 1885~1894년간 총계로 약 343만원 정도의 거액으로서<sup>38)</sup> 조선정부에 실로 중요한 재정수입원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관세 취급권을 겨우 2만 4천원의 단기차관의 대가로 제일은행에 넘겨 줌으로써 이상과 같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게 만든 것이다.<sup>39)</sup> 게다가 제일은행이 예금으로 확보한 해관세 등 공금예금은 단순히 조선정부의 요구에 의해서만 지출되는 부동자금이 아니라 자본력이 취약한 일본상인들의 상업·무역 자금으로 유용됨으로써 일본상인의 조선상인에 대한 자금적 지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sup>40)</sup>

따라서 몇몇 유력한 일본상인을 제외하고는 이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융자에 바탕해서 무역·상업자본을 마련했던 것이고 이러한 자금이 '곡물수출·면제품수입 구조'에 편입되어 가던 조선상인들에게 주로 곡물 구입을 위한 선대자금으로 대부되어 금융 연쇄 체제를 형성하고 일본인들의 곡물수출과 내지행상을 촉진하였다. 이것이 곧 농촌에서의 미곡 상품화 진전 및 토착

<sup>37)</sup> 村上勝彦, 위의 글(국역본), 59쪽.

<sup>38)</sup> 김순덕, 위의 글, 312쪽의 통계에 나오는 관세액을 통산한 액수임.

<sup>39) 《</sup>韓國ニ於ケル第一銀行》(東京:第一銀行, 1908), 5~26\.

<sup>40)</sup> 이는 1897년 일본상인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진정서 내용 중 "관세 및 기타 공금이 (조선: 필자) 탁지부에서 제일은행 등에 예입된 것은 거의 100만 엔에 달하고 이 금액의 대부분은 일한무역의 운전자금으로 이용되어 널리 각지에서 유통되고 있다"(《京城府史》제2권, 663~664쪽)라는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공업의 파괴로 귀결되면서 지주경영의 강화와 소농민·소상인의 성장 가능성을 억압했음은 물론이다.

#### 나. 국제무역의 확대

1883년 이후 조선의 국제무역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는 곡물 수출·면제품 수입 구조가 심화되어 갔다. 일단 1883년 이후 1894년까지의 대외무역의 추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물론 이 통계는 일본 및 조선의 해관에보고된 통계를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당시 광범하게 성행하고 있던 청·일본의 해상 밀무역액과 해관에 보고되지 않고 유출된 金 수출액이 누락되어있고 게다가 관세를 줄이기 위해 수출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있어 실제 무역액은 통계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을 것이다.41)

〈표 3〉 1883∼1894년 무역 동향

(단위 ; 천円)

		총 수	- 출	대	일 무	역	대	청 무	역
연도	총수입	상품	叩	수입	수	출	수 입	수	출
		Оф	П	1 11	상품	금	ТН	상품	금
1883				2,178	1,656	522			
1884				794	884				
1885	1,671	388	599	1,378	378	599	301	9	
1886	2,474	504	1,130	2,064	488	912	439	15	218
1887	2,815	805	1,388	2,081	784	1,178	732	18	210
1888	3,046	867	1,373	2,196	785	1,025	847	71	348
1889	3,378	1,234	982	2,299	1,122	608	1,085	109	373
1890	4,728	3,550	749	3,087	3,475	275	1,651	70	474
1891	5,256	3,366	689	3,226	3,220	273	2,044	136	415
1892	4,598	2,444	852	2,542	2,272	367	2,050	149	485
1893	3,880	1,698	918	1,949	1,543	425	1,906	134	493
1894	5,832	2,311	934	3,647	2,051	639	2,065	162	259

<sup>\*</sup>출전: 〈표 1〉과 같음

<sup>\*</sup>주:1885~1886년 총수입액이 대일수출과 대청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료의 출처가 각각 다른 소치이기 때문이다.

<sup>41)</sup> 한우근, 앞의 책, 60~77쪽 및 293~297쪽.

〈표 3〉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우선 대일·대청무역이 국제무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역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대일무역 규모는 1886년 200만원대를 초과하여 1890년 전후 600만원대로 급증하였으며, 대청무역액 역시 1889년 100만원대를 초과하여 1891년 이후 200만원대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일무역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지만 수입 항목만 볼 경우 대청무역 규모가 점차 증대하여 1890년 이후가 되면 대일수입액에 육박해 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무역 수지면에서 일본과의 경우 1890년대에 들어 곡물 수출이 급증한 결과 수출초과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선측이 흑자를 보이는 때도 있지만, 청국과의 교역에서는 항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역수지의 차이는 조선에서 청으로 수출할 품목이 인삼ㆍ종이 외에는 거의 없어 청국상인이 주로 수입무역에 종사한 데 반하여, 일본상인은 자본제 상품의 수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국내 저미가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에서 대량의 곡물을 수출해 간 결과였다.

이는 금 수출항목의 대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국상인은 수입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주로 엽전을 받고 이를 다시 금이나 은화 등 正貨의 형태로 바꾸어 유출했으므로 일본보다 청국으로의 금 수출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일본의 경우 주로 조선에 진출한 제일은행을 통하여 금을 매입 유출함으로써 정화를 축적하고 나아가 1897년의 금본위제 확립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본상인은 청국상인과는 달리 수입 자본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다시 곡물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1890년 이후 곡물수출이 증대하면서 자금이 주로 곡물 매입에 투하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본으로의 금 유출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42)

무역 품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4〉에서 보듯이 대일수출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때는 쌀 수출액이 증가한 경우이다. 쌀은 18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계속된 흉작 외에도 1884년의 갑신정변과 같은 정치적 변동으로 인하여 수출이 격감하였다. 1880년대 후반에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

<sup>42)</sup> 하원호, 〈개항후 제국주의의 침탈과 경제구조의 변동(1876~1894)〉(《水邨朴永 錫敎授華甲記念韓國史學論叢》下, 탐구당, 1992), 7~8쪽.

#### 158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지여서 오히려 수출량보다 더 많은 외국쌀이 수입되고 1889년 1월에는 일본 쌀 3만 석을 삼남 각 연해읍에 나누어 굶주린 인민이 매식하도록 하는 실정이었다.

〈표 4〉 1883~1894년 주요 상품별 대일수출입액 구성비

(단위:千円, ()안은 수출·수입총액에 대한 백분비)

연도		수	출		수	입
신-1	총 액	쌀	콩	우 피	총 액	면 제 품
1883	1,656	46(2.8)	270(16.3)	155(0.3)	2,178	913(41.9)
1884	884	0( 0.0)	101(11.4)	172(19.5)	794	498(62.7)
1885	388	16(4.0)	29(7.4)	282(72.8)	1,672	1,122(67.1)
1886	504	12( 2.4)	52(10.3)	382(75.8)	2,474	1,306(52.8)
1887	805	90(11.2)	335(41.7)	300(37.3)	2,815	1,894(67.3)
1888	867	22(2.5)	472(54.4)	211(24.3)	3,046	1,962(64.4)
1889	1,234	78(6.3)	645(52.3)	222(18.0)	3,378	1,709(50.6)
1890	3,550	2,038(57.4)	1,005(28.3)	147( 4.2)	4,728	2,675(56.6)
1891	3,366	1,820(54.1)	914(27.1)	215(6.4)	5,256	2,875(54.7)
1892	2,444	999(40.9)	798(32.7)	291(11.9)	4,599	2,185(47.5)
1893	1,698	367(21.6)	628(37.0)	275(16.2)	3,880	1,733(44.7)
1894	2,311	979(42.4)	507(21.9)	337(14.6)	5,832	2,495(42.8)

\*출전: 앞의 〈표 2〉와 같음

그러나 1890년부터는 쌀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1889년 가을의 대흉작, 1890년 여름보리의 대흉작으로 인하여 이른바 '쌀소동'이 일어난 반면, 조선은 대풍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1891~1892년의 수출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다만 1893년에는 흉작으로 인하여 수출량이 격감하였다.

1880년대 중반까지 조선쌀은 일본의 임노동자층의 수요 충당에 그치고 있었으나, 18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본 곡물시장 전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 수입되고 있던 안남미 등에 비해 조선쌀은 품질이 월등하여 일본인 기호에 적합하였고, 정미 방식만 개선한다면 일본미와 결코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1890년 이후 일본상인은 현미로 수출하는 경향이 증대하여 갔다. 인천항에서는 1891년부터 현미의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여

갔고, 부산항의 경우 1892년 이후 거류지의 일본인들이 매입한 현미를 도정 하여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었다.43)

반면, 콩은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기후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에서의 수요 역시 증가하여 1887년 이후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이 추세는 1890년의 100만원대를 최고 기록으로 하여 큰 변동없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의 입장에서도 무역을 통한 콩 재배의 이익이 높아 후기로 갈수록콩의 재배면적을 넓히고 있었다.44)

우피는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일본 군수공업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계속 증가되어 갔으며 흉작으로 곡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때 상대적 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흉작일 때 전염병 발생이 많아 폐사한 농우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기근을 면하기 위해 농민들이 농우를 처분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sup>45)</sup>

대일수입 품목에서 대종을 차지하는 것은 위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제 면제품으로서 1894년까지 대일 총수입액 중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표 3〉의 대청수입 품목이 급증하고 있던 것도 과반수 이상은 자본제 면제품 수입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본상인이 1894년 이전까지 주로 영국산 섬유제품을 상해에서 일본을 경유하여 매입하고 조선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고 있었던 반면, 청국 상인은 상해에서 조선으로 직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일본상인이 열세에 놓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46 특히 1890년 이후에는 부산항을 제외하고 인천항과 원산항에서는 대청수입

<sup>43)</sup> 하원호, 〈곡물의 대일수출과 농민층의 저항〉(앞의 책, 한국역사연구회), 247~251쪽.

<sup>44)</sup> 宮嶋博史,〈朝鮮 甲午改革 以後의 商業的 農業〉(《史林》제57권 6호, 1974); 국역본《한국근대경제사연구》(사계절, 1983), 219쪽.

<sup>45)</sup> 러시아대장성 편,《韓國誌》(《國譯 韓國誌》, 정신문화연구원 역), 562~563쪽. 그런데, 이 시기 일본으로 수입된 우피 중 거의 전량이 중국·영국으로 재수출되었다는 일본측 통계에 의거해 볼 때 조선산 우피 수출이 일본의 군수공업 확대에 따른 국내수요와 결부되어 이루어졌다는 통설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村上勝彦, 앞의 글, 15쪽).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sup>46) 《</sup>通商彙纂》 제4호, 〈明治26年中京城商況年報〉(京城, 明治 27년 4월 16일)(麗江 出版社 영인본, 1987), 241~242쪽.

액이 대일수입액을 능가할 만큼 급증하기에 이르렀으며 일본의 무역상은 세력 만회에 골몰하게 될 정도였다.47)

1890년대 초가 되면 대일수입 면제품 중에는 영국제 면포가 아닌 일본제 小幅木綿과 시이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48) 특히 소폭목면은 청국상인에게 상권을 점차 빼앗기고 있던 일본상인이 상권을 탈환하고 조선의 토착면포 시장을 잠식하기 위하여 조선 토포의 품질과 사이즈가 비슷하게 제조한 제품이었다. 그러나 일본산 소폭목면의 수입량은 1894년 이전에는 가격과 품질 차이로 인해 순조로이 증가되지 못했고, 1894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조선의 토포시장에 침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1895년 이후 일본의 기계 직포제품인 시이팅이 조선시장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었다.

지속적으로 대량 수입된 영국제 면포와 1890년대 이후 등장한 일본제 면제품은 1894년 단계에 이르러 국내 면포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장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조선의 토포생산자는 18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생산력을 충분히 발전시킬 사이도 없이 民藝品的 사치품 생산으로 잔존하든지, 아니면 이윤과 노임부분을 줄여 가격면에서 높은 생산력의 이점이 있는 저렴한 자본제상품과 대항하든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49)

# 3) 외국 상인의 침투와 조선 상인층의 대응

## (1) 일본 독점무역기(1876~1882)

미국·청국·영국 등과 수교하기 전의 시기였으므로 이 시기에 조선의 개

<sup>47)</sup> 小林英夫、〈日本の金本位制移行と朝鮮〉(《朝鮮歷史論集》下,旗田巍先生古稀記 念會(東京:龍溪書舍, 1979)), 180等.

<sup>48)</sup> 소폭목면은 일본 및 중국의 가내공업 내지 공장제수공업 제품으로 조선의 토 착면포와 품질과 규격 등이 매우 유사하였다. 시이팅(Sheeting)은 영국, 특히 미국 제품으로 생금건과 똑같이 제작되었지만, 단지 보다 굵은 실을 기계로 짠 것이다. 당시 '상인들간에는 미국목면이라 불리우고 바탕질의 올이 굵어서 성기고 거칠어 겨울옷 안감 등에 많이 사용되고 전적으로 하층 사회에서 쓰 였다'고 하듯이 직접생산자층이 주된 수요자였다(이상 梶村秀樹, 앞의 글, 194 ~197쪽).

<sup>49)</sup> 梶村秀樹, 위의 글, 194~196쪽.

항장에 들어온 것은 오로지 일본상인들 뿐이었다. 개항으로 종래 조선 왕래에 가해지던 제한이 해제되었지만, 자본력있는 일본상인이 대거 조일무역에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상인은 조선이라고 하면 '호랑이가 숨어있는 황야와 같이'인식하고 있어서 일본정부가 무역에 종사하라는 권유를 해도 응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자본·선박의 대여,조선항로의 개설, 사금의 우선 매입 등 보호정책을 제시하면서 澁澤榮一·大倉喜八郎·高須謙三 등 유력상인에게 조선무역 종사를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50)

이렇게 하여 이들 유력상인을 필두로 하여 일본인들이 조선에 쇄도하기 시작하였지만, 다음 〈표 5〉에서 보듯이 일본인의 조선 거류는 1879년 이후에 야 급증하기 시작한다. 이를 〈표 1〉의 무역통계 추이와 연관지어 보면, 1879 ~1880년부터 쌀 수출이 급증하면서 무역량이 확대되는 것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다.

〈丑 5〉	1876~1882년	개항장의	일본거류민	주이

		부	산			원	ž.	<u>}</u>		합	;	계
	호 -	수	인 구		호	수	인	구	호	수	인	구
1876			82	2(200)							3	32(200)
1877				(332)								(332)
1878				(700)								(700)
1879			700(	1,150)							700	(1,150)
1880	402		2,066(2,066)				2350	(209)	4	02	2,301	(2,375)
1881	426		1,925(1,926)				2810	(300)	4	26	2,206	(2,226)
1882	306		1,519(	1,519(1,952)			2600	(281)	3	06	1,779	(2,233)

<sup>\*</sup> 출전: ①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일지사, 1982), 106, 123쪽. ②姜德相, 앞의 글, 2쪽.

<sup>\*</sup> 주 : 손정목의 통계와 姜德相의 통계는 자료 출처가 다른 관계로 차이가 나므로 姜 德相 글의 수치는 ( )안에 넣어 처리하였다.

<sup>50)</sup> 姜德相, 앞의 글, 1~2쪽.

부산항의 경우 개항 당시에는 東京의 거상인 三井組·小錦組를 위시하여 大池忠助·大倉喜八郎·迫間房太郎·香椎源太郎 등 쟁쟁한 유력상인도 끼어 있었으나 일본상인의 대부분은 자국의 근대화과정에서 밀려난 영세상인이거 나 중상주의적 약탈무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 일본정부에 의해 하루아 침에 만들어진 투기상인·모험상인들이었다.51)

이들 일본상인은 조선에서 매매가격의 표준 등이 거의 혼란한 상태라 1백엔 가격의 수입품이 의외로 1천엔 가격으로 뛰고, 일본배 한 척의 적하량으로써 1만 엔의 엄청난 이득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일확천금의 폭리를 탐할 수 있었다. 또 '요즈음 한인들이 물건을 팔 경우 그들이 10냥이라고 말하면 우리(일본상인:필자)는 7냥으로 값을 깎는다. 그가 듣지 않을 때는 대갈일성하며 즉시 주먹을 들어내리면 그는 7냥에 방매한다'라든가, 조선 도량형이일정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크고 작은 두 개의 됫박으로 사기치는 사건이 빈발했지만 모두 영사재판권의 비호하에 처리되고 조선측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52)

그러나 이 시기까지 일본상인의 활동 범위는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개항 초 일본상인의 활동 범위는 거류지로부터 사방 4km로 한정되어 있었다가 1882년 7월의 「조일수호조규 속약」에 이르러서야 사방 20km로, 1884년 부터 사방 40km로 확장되었으므로<sup>53)</sup> 일본상인은 개항장이 아닌 포구나 내륙지방으로 들어가 직접 수출입품을 거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출입무역에 종사하는 내외국 상인을 상대로 매매를 주선하는 새로운 유통조직으로서 개항장객주가 출현하였다. 개항장객주는 내륙의 생산지나 소비지의 객주와 마찬가지로 위탁매매, 외국상인과 조선상인이 발행한 어음의 인수 및 할인 등 금융업무도 하였으며 독자적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를 이용하여 상업행위를 해 오던 船商도 집산지의 포구

<sup>51)</sup> 임승표, 〈개항장거류 일본인의 직업과 영업활동〉(《홍익사학》제4집, 홍익대학교, 1990), 163쪽.

<sup>52)</sup> 姜德相, 앞의 글, 2쪽.

<sup>53) 《</sup>高宗實錄》, 고종 17년 7월 17일.

에서 포구객주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개항장으로 수송해 외국상인에게 팔거나 수입상품을 외국상인에게서 구입할 때 이들 개항장객주의 주선을 거쳐야하였다.54) 따라서 개항장에서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림 1〉 1876~1882년간 수출입품 매매경로

(→는 수출품, ←은 수입품의 경로)

생산자(소비자)  $\rightleftarrows$  행상  $\cdot$  중매  $\rightleftarrows$  포구  $\cdot$  산지 객주  $\rightleftarrows$  행상  $\cdot$  선상

⇄ 개항장객주 ⇄ 거류지 외국상인

이러한 다단계 수출입 구조 하에서는 일본상인들의 매매 이윤이 적어질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상인들은 가능한 한 개항장객주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 제한된 활동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내륙지방에 들어가 곡물을 유출하거나, 조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곡물을 매집해 오게 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879년에는 일본상인들이 조선상인들과 사전연락하에 범선으로 조계지 밖인 동래 북쪽의 機張에 불법 침투하여 쌀 수백 석을 매입하다가 발각되었으나 조선인만이 즉시 사로잡혀 투옥되었던 사실이었다.55)

#### (2) 청·일 경쟁무역기(1883~1894)

가. 청국상인의 침투

1882년 군인폭동을 전후하여 미국·청·영국 등 여러 국가와 수교함에 따라 일본의 독점무역은 종말을 고했지만, 이들 불평등조약으로 인하여 외국상인의 조선 침투는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즉 1883년의「신조영조약」에

<sup>54)</sup> 이병천, 〈거류지무역기구와 개항장객주〉(《경제사학》제7호, 경제사학회, 1984), 52~79쪽.

<sup>55)</sup> 김경태, 〈개항과 미곡문제의 구조〉, 앞의 책, 77쪽.

의하여 연안무역권과 연안해운권이 확보된 데다가 한성과 양화진이 개방되었고, 조계지 밖 사방 40km까지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조선정부가 발행하는 여행권을 지니고 내륙지방까지 들어가 통상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선은 열강의 상품시장으로서 한성에서 벽촌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이어서 1884년 8월 18일 일본측의 요구로 용산도 개시장으로 개방됨으로 써56) 외국상인, 그 중에서도 청・일 상인의 한성 開棧과 내지통상이 시작되었다.

한성 개잔과 내지통상이 허용된 것은 조선 상인층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다. 한성 개잔은 조선에서 가장 거대한 소비도시인 한성의 상권을 청・일상인이 잠식해 들어오는 결과를 낳아 시전상인・공인 등 기존의 상인층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내지통상은 이보다 더 파괴적이었다. 위〈그림 1〉의 개항장객주의 개입과정을 배제하여 수출입 무역기구 지배권을 외국상인이 직접 장악할 수 있게 하였고 개항장과 내지 사이 상품 때매가격의 차이를 외국상인이 직접 흡수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서 개항장에 들어오는 조선상인을 상대로 해서만 상품을 때매해야 한다는 제한에서 벗어나 시장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수입품 판매에 주력하던 외국상인에게 상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57)

청국은 1883년 9월 이후 치외법권이 인정된 총영사격인 總辦朝鮮商務委員으로 陳樹棠을 파견하고 인천·부산·원산 등 각 개항장에 상무위원 분서를 두고 상무관을 주재시켜 청상의 상업 지원을 하는 한편 영사 업무와 청국단독 조계지 설정 등을 추진하였다. 1885년 10월에는 진수당을 소환하고, 조선사정에 정통한 袁世凱를 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책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 및 외교와 상무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후 갑신정변 때 피난갔던 청상들이 다시 도래하기 시작하였다. 1885년 10월 수십 명에 불과하던 청상이 몇 년 사이에 6백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당시 인구 25만 명의 대소비도시 한성을 주요 목표로 그 관문인

<sup>56) 《</sup>高宗實錄》, 고종 21년 8월 18일.

<sup>57)</sup> 이병천, 〈개항기 외국상인의 내지상권 침입〉(《경제사학》제9호, 경제사학회, 1985), 296~300쪽.

인천항을 거점으로 경인지역 일대에 세력을 확장시켰다. 이어서 원산·부산으로 뻗쳐 나갔고, 점차 내지통상에 주력하여 농촌장시에 침투하여 상권을 확대시켜 나갔다.

청상의 진출은 다음 〈표 6〉과〈표 7〉에서 보다시피 한성과 인천을 중심으로 하여 특히 188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여 일본상인을 압도하는 추세였다. 〈표 6〉은 상인 외에 관리나 고용인, 기타 가족들도 포함되었겠지만 절대 수치만으로 볼 때에도 한성과 인천에서 청국 거류민의 증가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6〉 1890∼1891년 일·청 양국거류민수

		1	8 9 0	년		1891년				
	부 산	원 산	인 천	한 성	합 계	부 산	원산	인 천	한 성	합 계
일 본	4,644	1,387	2,650	770	9,451	5,255		2,330	1,000	8,585
청	164	86	967	1,480	2,697	138		550	1,300	1,988

\*출전: 한우근, 《한국개항기 상업연구》, 58쪽.

〈표 7〉 청국 상인의 개항장·개시장 진출상황

	한	성	인	천	원	산	부	산	합	계
	상인	상점	상인	상점	상인	상점	상인	상점	상인	상점
1883	99	19	54	8	10		20		183	27
1884	352	48	235		13		10	3	610	51
1885	111	25	50		13	13			174	38
1886		14	205		12	12	28		245	26
1887										
1888										
1889	600	80							600	80
1890	625	100							625	100
1891	751		563				138		1,452	
1892	957		637		63		148		1,805	
1893	1,254	142	711		75	10	142		2,182	152

\*출전: 김정기, 〈1890년 서울상인의 철시동맹파업과 시위투쟁〉(《한국사연구》67, 한국사연구회, 1989), 86쪽.

청상은 막강한 청나라 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월등한 자금력과 상거래방식, 특유의 단결력과 근검절약, 전신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망 등을 바탕으로 수입품의 판매권을 장악해 가고 일본 잡화도 취급하여 일본상인을 압도하고 조선상인의 상권을 침탈하였다. 인천항의 廣東 상인 同順泰와 山東 상인 瑞盛泰, 雙盛泰 등의 무역상은 모두 수 명에서 수십 명의 상인이 합자한 상업조직이었다. 가장 규모가 큰 동순태는 200~300만 냥의 대자본을 소유하고 그밖의 소상인 조직도 5~6만 냥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풍부한 자본으로 수입면제품을 영국이나 상해에서 다량으로 값싸게 구입할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 회관을 설치하고 내외 각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함으로써 상호 금융 및 상품 운반의 편의를 도모하고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상호 경쟁을 피하였다.58)

급속한 속도로 증가한 청상은 일상과 함께 한성 육의전의 판매 독점권을 붕괴시켰고, 부수적으로 인천 개항장객주의 한성 진출을 차단시켜 버렸다. 특히 개항 이전부터 금건과 한냉사 등 영국제 면포를 독점판매하고 있었던 白木廛이나 청국제 견직물을 독점하고 있던 立廛이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육의전 외에도 한성 전역 장터에서 노점상을 펼쳐 1891년 12월 현재청국 노점상이 100여 개를 헤아릴 정도로 늘어났다. 아울러 한성 내외 주민에게 일용품을 공급하는 일일시장으로 남대문과 동대문에서 열리는 朝市에까지 침투하여 한성 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59)

또 청상은 연안해운권을 근거로 자국 선박으로 개항장간을 다니며 연안무역에 종사하였고, 조선인의 명의를 빌어 자신들의 선박에 조선국기를 매달고개항되지 않은 포구로 침투하는 경우도 많았다.600 특히 평안·황해도 연안의미개항지에서 청상의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청상의 배를 통한 밀무역에는 또한 약탈과 폭거가 수반되게 마련이었다. 1885년 11월 木花·雜物·鉛塊 등을 싣고 황해도 長連에서 甕津으로 가던 조선상인이 해적으로 보이는 청인들에

<sup>58)</sup> 나애자, 〈개항후 외국상인의 침투와 조선상인의 대응〉(《1894년농민전쟁연구》 1, 역사비평사, 1991), 193쪽.

<sup>59)</sup> 김정기, 앞의 글, 91~93쪽.

<sup>60)</sup> 나애자, 앞의 글, 188쪽.

게 약탈당한 것이나, 심지어는 인천 해관에서도 화물 검사를 거부하고 巡監을 구타하며 해관에 난입하여 집기를 파괴하는 일까지 있었다. 청상은 綿布·白木·銀子·甘藷 등을 수입해 와서 조선의 우피·인삼·쌀·콩·어물 등을 수출해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61)

청상은 한성에서의 개잔, 밀무역 외에도 내지통상을 통해 조선 상인층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청상의 내지통상은 다음 〈표 8〉에서 보듯이 1889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원세개는 1890년 조선정부에 여행권을 수시로 청구 발급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꺼번에 2백 장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는 이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이후 여행권을 20장씩 '空名護照'형식으로 발급해 주었다.

/	- 1 - 111	- 1 -			—	
〈丑 8〉	연노별	정・일	! 양국상인	내지여행권	발급	주이

		청		j	상		일		상	
	한성	인천	원산	불명	합계	한성	인천	부산	원산	합계
1884	5	2		20	27(15)					
1885	2	3		19	24(21)		1			1
1886					(12)		9			9
1887			5		5(29)		69(59)		29	98
1888				20	20(51)		76		88	164
1889	58	10		11	79		102		119	221
1890	71	14	5		90(11)		101		126	227
1891	31	30	10	20	91	30	46		71	147
1892	40	20			60	43	39		44	126
1893	33	40			73	81	88		67	236
1894	40				40	50	93	72(52)	34	249

<sup>\*</sup>출전: 이병천, 〈개항기 외국상인의 내지상권 침입〉(《경제사학》제9호, 경제사학회, 1985), 301, 307쪽.

<sup>\*</sup>주:청상의 경우 1889년과 1891년의 '불명'수치는 한성과 인천 양 지역을 모두 포 함하는 수치이다. 또, 1892~1894년간 여행권 발급 숫자가 1889~1891년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통계자료상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sup>61)</sup> 한우근, 앞의 책, 68~75쪽.

그런데 청상 내지통상자를 위의 여행권 발급 숫자에 의해서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 외에도 여행권을 소지하지 않은 불법행상자가 상당히 많았다. 이들은 주로 배를 통해 황해도 · 평안도에 들어온 밀입국자로서 여행권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조선 내륙 어디에서든 자유로이 활동하였다. 1889년 개성에서 활동하고 있던 청상 43명에 대한 조사 결과 여행권 없는 불법 행상자가 25명이나 되었던 사실이나, 竹山 白巖里 場市에서 조선상인들을 칼로난자한 청상 3명이 모두 불법행상자였다는 사실 등이 이를 말해 준다.

청상은 이처럼 유리한 조건에서 한성 시장에서 수입품의 상권을 장악하고 적극적으로 내지행상을 확대하여 1893년 말에 이르면 다음과 같이 경기・충청・전라지역 상업 중심지에서 조선상인의 상권을 위협하였고 불법적인 내지 定住상업도 전개하였다.

어떠한 벽촌이더라도 장날에 청상이 오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공주·강경·예산 등의 시장에는 어느 곳이든지 20~30인의 來住者가 있다. 대부분은 장날을 순회하는 賤商이지만 공주·강경·예산 등에는 상당한 상인이 들어와 있어 아주 큰 거래를 한다고 한다. … 종래 안성시에는 수원 상인이 대체로 외국품을 인천에서 구입 판매하였다. 이들 상인이 백 명이나 있었지만 근래 청상이 다수 장날에 오기 때문에 상권을 점차 탈취당해 최근 폐업하는 자가 많다는 것으로도 그 일면을 알 수 있다. 공주·강경은 모두 가옥을 소유하고 점포를 열었으며 전라도 전주는 30인 정도의 청상이 들어가 각지의 장날에는 이들이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62)

청상은 조선산 상품을 살 때 물건값과 운송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선 행상의 물건이나 좌판 등을 약탈하려다가 저 항을 받으면 칼을 휘둘러 위협하는 등의 횡포를 저지르곤 하였다. 또 내륙지 방을 떼지어 다니면서 조선 행상을 구타하고 이를 단속하는 조선 관리들을 욕보이고 관의 명령을 무시하여 조선인의 반감을 샀다.

그러나 한성 이남의 경기 및 충청 지방에 비해 한성 이북의 중부 지방은 개성상인의 유통지배권이 강고하였기 때문에 청상이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

<sup>62) 《</sup>通商彙纂》第1號,〈京畿道及忠淸道地方商況幷ニ農況視察報告〉(京城, 명치 26년 10월 21일)(여강출판사 영인본), 61~62쪽.

였다. 또한 청상이 내륙지방의 상업 중심지에 침투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구나 장시 어느 곳에서나 현지 객주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는 상품 매매를 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청상(일본상인도 마찬가지)의 내지활동이 객주의 중개에 의존하는 동안은 적어도 위탁매매에 관한 한 청상의 내지통상은 현지 객주의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다.<sup>63)</sup>

#### 나. 일본상인의 침투 확대

1882년까지 2천명에 달하고 있었던 개항장의 일본 거류민은 〈표 9〉와 같이 1883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수출무역량이 급증한 1890년을 경계로 하여 일본 거류민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7천~9천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다.

한성이 개방된 이후 일본인은 남산 기슭의 진고개(泥峴) 일대에서 거의 10 리에 가까운 지대를 점거하여 갔다. 그러나 한성에서는 청인의 수가 압도적 으로 많았던 데다가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속방화하려는 청국의 대한정책으 로 인하여 일본상인의 세력은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

〈표 9〉 1883∼1894년 개항장의 일본거류민 추이

	부	산	원	산	인	천	한	성	합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883	432	1,780		199	75	348			507	2,327
1884	430	1,750	62	173	26	116			518	2,039
1885	463	1,896	73	235	109	562	19	89	664	2,782
1886	488	1,957	81	279	116	706	34	163	719	3,105
1887		2,006	82	374	112	855	65	245	259	3,480
1888		2,131	94	433	155	1,359	86	348	335	4,271
1889	628	3,033	114	598	167	1,362	130	527	1,039	5,520
1890	728	4,344	143	680	255	1,616	137	523	1,263	7,163
1891	914	5,254	140	655	338	2,331	157	698	1,549	8,938
1892	938	5,110	174	705	388	2,540	169	715	1,669	9,070
1893	993	4,750	185	795	425	2,504	234	779	1,837	8,828
1894	906	4,028	202	904	511	3,201	260	848	1,879	8,981

<sup>\*</sup> 출전 : 손정목, 앞의 책, 106, 123, 142, 251쪽.

<sup>63)</sup> 이병천, 앞의 글, 303~305쪽.

다만 위 〈표 9〉와 앞의 〈표 6〉,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원산·인 천 등 개항장에서는 청국 거류민이나 청상이 증가하고 있는 중에도 일본거 류민의 규모가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상과 달리 일본상인은 곡물 수출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본력이 매우 취약한 형편이었고, 어민·목수·土役軍·채무자·모험자 등 극빈한 계층에 속하여 기만적인 수단이나 부동산·귀금속 등을 저당으로 잡는 고리대를 위주로 했던 영세상인에 지나지 않았다.<sup>64)</sup> 따라서 일본상인의 수가 청상보다 많다고 하여 청상보다 압도적인 세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891년 원산항에는 청상 40여 명의 수출입액이 일상 6백여 명의 수출입총액과 거의 맞먹는 정도였다.<sup>65)</sup>

이들 일본상인은 한성에서 청상과 마찬가지로 수입품만이 아니라 국내 무역품으로서 시전상인의 전매상품인 명태 등의 생선과 백목면 등을 개항장이나 내륙지방에서 구입 수송하여 직접 판매함으로써 시전 상인들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였으며,66) 이는 후술하듯이 청상·일상의 점포 철수를 요구하는 시전상인들의 철시 운동을 발생시켰다.

일본상인도 청상과 마찬가지로 밀무역을 하고 있었다. 일상은 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낙동강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진주·통영 등 미개항장이나 내륙의 포구 등지를 왕복하며 밀무역을 하면서, 동해안과 부산~인천 사이의 서남해안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한 무역권을 차지하여 갔다. 일본은 1880년대 후반 이후에는 활동권을 황해·평안 등 서해안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정부에 대해 황해·평안도 연안 각지에 핍주하는 청상의 밀무역을 근절시킬 수 없다면 평안도 연안에도 개항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원세개의 간여로 거부당하였다.

일상의 내지통상은 앞의 〈표 8〉에서 보듯이 곡물수출의 급증과 함께 1880 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지고 있었다. 이들 일상의 내지통상은 대부분 자본력이 풍부한 곡물 매입상이었으며, 수입품 판매에 종사하는 내지통상자는 수도 적

<sup>64)</sup> 한우근, 앞의 책, 78~80쪽.

<sup>65)</sup> 한우근, 위의 책, 49쪽.

<sup>66)</sup> 나애자, 앞의 글, 186쪽.

었을 뿐 아니라 극히 영세한 상인들이었다. 곡물 매입상의 매입 규모는 몇 백 석이 보통이고 천 석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드물게는 몇 만 석인 경우도 있었다.

일상의 내지에서의 곡물 매입은 청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내지객주 또는 개항장객주에게 자금을 선대하여 곡물을 매집하게 위탁하는 등 객주의 중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선인객주가 이들 곡물을 매집해 인도하지 못할경우 선대한 자금과 이자는 고스란히 그의 부채로 남게 되었다. 부산항의 경우 1885년부터 1894년까지 미청산된 부채가 원리금 합계 14만여 냥에 달하는데, 이 금액이 총 대부된 건 중 분쟁 대상이 된 극히 일부라는 점, 그 중에서도 사료상 잔존한 것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총 대부 규모는 엄청난 액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율은 월 3%와 5%의 두 종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재한 일본국립은행의 대부 이자율이 월 1% 전후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일상은 이 자금 대부를 통해 순수하게 곡물수출을 통한 상업이윤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도 은행이자와 조선상인에 대한 대부 이자 사이의 차액만으로도 월 2~4%의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일본상인은 상인자본과 고리대자본의통일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의 자금 대부는 풍흉에 좌우되는 곡물 생산의 불안정성, 상품경제 발전수준의 한계로 인하여 곡물수출이 투기적이고 불안정한 점을 극복하고 필요한 곡물을 적절한 시기에 확보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책이었다. 또한 대다수 일상이 곡물 매입 자금을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여 항상적으로 이자 부담에 쫓기고 있었던 상황과 관련하여 그들의 이윤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책이기도 하였다.

반면 조선상인은 자금차입상의 불리한 조건에 몰리면서 최종적으로 개항 장 일본상인에게 곡물을 인도하기까지 일체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 히 운반과정에서의 江運事情의 악화, 화물선의 침몰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sup>67)</sup>

<sup>67)</sup> 이병천, 〈거류지무역기구와 개항장객주〉(《경제사학》제7호, 경제사학회, 1984), 95~102쪽.

조선상인들이 일본상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본상인들은 담보로 잡았던 전답·가사를 방매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선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통하거나 직접 채무자의 친족 등이 사는 마을로 찾아가 지방관의 도움을 얻어 그 친족에게서까지 채무를 징수하는 행태를 보여 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 허다하였다. 물론 이러한 횡포와족징은 1880년대 후반 이래 일본상인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청국·미국·영국 등의 상인과의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1892년에는 각국 상민으로부터 부채를얻지 못하게 하라는 훈령을 전국 각지에 내렸으나 이러한 상황은 쉽게 근절될 수 없었다.68)

#### 다. 구미상인의 침투

구미 열강의 경우 이미 청을 거대한 상품시장으로 확보하여 조선에 대해서는 시장가치를 크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일본과 달리 몇몇 상회사들만이 침투하였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만 시기순으로 보면 영국의 怡和洋行(Messrs, Jardine, Matheson & Co.), 독일의 世昌洋行(H. C. E. Meyer & Co.), 그리고 미국의 모오스—타운센드상회(Morse and Townsend & Co., 이하 타운센드상회로 줄임)가 있는데 모두 인천 제물포에 지점 또는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이화양행은 조선해관 총세무사였던 묄렌도르프의 알선에 의해 1883년 6월 인천에 대리점을 개설한 후 그해 8월 상해에서 인천까지 정기항로를 개설하 였다. 이 양행에서는 우피무역에 종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광산채굴 사업도 시도하였으나 조선정부의 빈번한 제재 조치로 인하여 모두 무위에 돌아감으로써 1884년 12월 말에 철수하고 말았다.69)

세창양행(H. C. E. Meyer & Co.)는 1873년 중국 천진에 본사를 두었다. 독일 함부르크와 런던·홍콩에 지사를 설치하여 영국의 섬유제품과 독일의 잡화를 동아시아에 판매하고 중국으로부터는 이불에 넣는 깃과 담배를 수출하

<sup>68)</sup> 도면회, 〈화폐유통구조의 변동과 일본금융기관의 침투〉(《1894년농민전쟁연구》 1, 역사비평사, 1991), 238~239쪽.

<sup>69)</sup> 한우근, 앞의 책, 96~97쪽; 이배용, <1880년대 열강의 이권외교에 나타난 제 특성〉(《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하, 일조각, 1994), 1603~1605쪽.

던 회사였다.70) 이 회사 역시 묄렌도르프의 권유에 의하여 1884년 여름 인천 제물포에 지점을 설치한 후 바늘·염료·면포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철 강·약품·기계·무기 등을 수입하는 한편, 조선에서는 사금·금괴·홍삼·우피·곡물 등을 수출하면서 큰 수익을 거두었다.71)

게다가 세창양행은 1885년 2월 4일 조선정부와 세곡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전라도 稅米 2만 7천석을 인천으로 운송하는 이권을 획득하였다. 이어서 1885년 11월에는 재정 궁핍을 겪고 있던 조선정부에 2만 파운드의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라도 稅米 운송권을 따냄으로써 이전까지 세미 운송을 담당해오던 京江船・地討船・漕船 등 조선의 선운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1886년 2월에는 전환국의 화폐 주조를 위하여 근대적 조폐기계를 구입하면서 드는 비용 3만원, 1887년 3월에는 한성·수원·공주·전주·거창·대구·부산을 잇는 한성~부산간 南路電線 가설에 필요한 전선과 전기재료 등의구입 비용 34,150원, 1887년에 도입한 기선 蒼龍號 구입 비용 5만 7천여 원등을 모두 조선정부에 차관으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막대한 이권을 획득하였다.72)

타운센드상회는 일본 요코하마 주재 미국무역상사(American Trading Co.)의 조선 대리점으로서 1884년 5월 인천 제물포에 설립되었다. 모오스가 조선으로 진출한 시점은 3백만원 차관 교섭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김옥균이 교섭에 실패한 후 모오스와 차관교섭을 하면서 1884년 4월 울릉도 삼림 채벌권을 양여한 이후였다. 모오스는 자기 회사에 고용되어 미국산 상품의 수입과 위탁판매, 무기판매업 등에 종사해 온 인물인 타운센드를 김옥균과 함께 조선으로 보내 모오스—타운센드상회를 설립하게 한 것이다.

타운센드상회는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1885년 초 경영 곤란으로 폐점한 조선 상회사 順信昌상회를 인수하였으며, 조선정부에 소총·탄환·기관총 등

<sup>70)</sup> 조흥윤, 〈세창양행, 마이어,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동방학지》 46·47·48 합집, 연세대학교, 1985), 741~742쪽.

<sup>71)</sup> 이배용, 앞의 글, 1606쪽.

<sup>72)</sup> 김정기, 〈조선정부의 독일차관도입(1883~1894)〉(《한국사연구》39, 한국사연구회, 1982).

무기류, 농무목축시험장용 가축, 기선, 왕궁의 전등 시설 공사에 필요한 발전설비, 전등기계 및 전기용품 등을 수입하였다. 이외에도 우피와 식료품, 식기류, 의류, 침구류, 문방구류, 실내장식용품 등 약간의 잡화류 수입과 판매도 겸하였다. 1892년에는 인천항에 정미소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에서 증기력을 이용한 정미공장의 효시로 꼽히는 것이었다. 청・일 상인과 마찬가지로 곡물 무역에도 참여하였는데, 선대제 방식으로 조선 내지객주들과 직거래하기도 하고 徐相潗과 같은 대리인을 고용하여 미곡을 인천항으로 사들이기도 하였다.73)

타운센드상회는 수입품 외상판매, 수출곡물 자금 선대 등에 의하여 많은 조선상인들과 채권 채무관계를 맺었고, 이는 조선상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많은 외채분쟁을 불러 일으켰다. 1892년 4월 미국공사를 통해 타운센드가 제출한 조선인 부채자 명단과 부채액을 보면, 수원·개성·인천·성천 등지의 상인이 도합 엽전 7만 9천여 냥, 은화 893원을 미상환한 상태였다. 74) 이는 전술한 바 1885~1894년간 조선상인이 일본상인에게 미청산한 부채액의 반을 초과하는 거액이었다.

### (3) 조선상인층의 대응과 변모

가. 조선정부의 상업정책과 객주상회소 · 상회사의 설립

1884년부터 외국상인의 내지통상이 개시됨에 따라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개항장객주였다. 외상이 이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지객주를 통하여수출입무역을 하였으므로 거래를 주선하고 얻던 구문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조선정부 역시 외국상인의 내지통상 및 밀무역으로 인하여 관세 수입이감축되고 개항장객주로부터 징수하던 상업세 수입 역시 감소함으로써 개항장객주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설립되기 시작한 것이 객주상회소라는 조직이다. 이는 1883년의 원산상회소를 필두로 하여 1887년 이후 다수 창설되었

<sup>73)</sup> 하지연, 〈타운센드상회연구〉(《한국근현대사연구》제4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6), 8~33쪽.

<sup>74)</sup> 한우근, 앞의 책, 95쪽.

는데, 부산의 釜山商會所・東港商會・商法會社・同契社・均興商會社, 인천의 船商會社・均平所・商法會社, 부산・원산・인천 세 개항장객주가 조직한 均平會社 등이 그것들이다.75)

그러나 조선정부는 관세율의 인상이나 불평등조약의 개정 등은 거의 생각지 않고 조선상인에 대한 통제와 수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상업 보호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취한 정책은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항장객주에게 수출입무역의 유통 지배권을 부여하는 것과 아울러 세수 확보를 위하여 개항장객주에게 영업세 징수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정부는 1883년 부산항객주 중에서 別檢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1885년에는 부산항의 객주와 거간들이 속임수를 일삼아 분쟁을 일으키는 폐단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元客主 2명을 차정하여 선상과 행상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1884년 4월에는 인천감리의 고시로 잡품을 제외한 모든 수출화물은 반드시 객주나 상회를 거쳐 報單에 기입한 후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고시문은 일본측이 자유무역을 보장한 통상조약에 위배된다고 항의하여 곧 철폐되었으나 얼마 동안은 그대로 시행되었다.

또 1886년 6월에는 인천항 萬石洞에 부두를 쌓고 內港으로 삼아 국내 상선을 정박하게 하고 외국선박과 뒤섞여 外港인 折浦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국내상선이 외국 선박과 뒤섞여 항세를 포탈하는 것을 막고 내항의 객주에게도 상업 이익을 보호해 주어 상권을 넓히는 한편 수세하려는 데그 목적이 있었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만석동 선상객주들은 1887년 12월 선상회사를 설립하여 광무국과 통리아문에 구문의 일부를 납부하는 대가로 인천항에 운송되는 화물의 중계 독점권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내항·외항을 구별하여 선상은 내항객주가 전담하고 육로 객상은 외항객주가 담당하게 한 이 시책은 외항객주의 반발을 사 만석동으로의 화 물 출입을 차단하는 집단행동을 야기하였다. 게다가 조선 선박을 고용한 일 본상인도 화물을 만석동에서 부리면 외항 근처에 있는 조계지 부두까지 다

<sup>75)</sup> 홍순권, 〈개항기 객주의 유통지배에 관한 연구〉(《한국학보》제39집, 일지사, 1985), 109쪽.

시 수송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운송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자유무역에 위배 된다고 철폐를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하여 만석동 내항은 1892년 말까지 여러 차례 철폐와 복설을 반복하였다.

정부는 재정수입 보충을 위하여 1889년 9월부터는 종래의 구문제도를 영업세제도로 바꾸고 인천항 객주 중 徐丙浩를 船陸首客主로 선정, 매년 1만 냥을 납부하도록 했다가 객주들의 요청에 따라 객주분읍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889년 11월부터 인천항에서 실시된 25객주 분읍제는 객주 중 비교적 자본이 많은 25명을 선정하고 각각에게 전국의 주요 읍을 전관지역으로 할당하여 매매주선 독점권을 부여하되 각 읍 시장의 규모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영업세를 상납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객주지정제도는 원산과 부산에서도실시되었다. 특히 부산은 인천과 유사한 방식으로 1890년 3월 25家 객주제가시행되어 인천과 함께 매년 2만 냥의 영업세를 상납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선정에서 탈락된 객주와 상품 유통량이 적은 읍에 배정된 객주, 그리고 전보다 구문 부담액이 늘어난 데다가 예전처럼 임의로 객주를 선택할 수 없게 된 선상·행상 등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특히 후술하는 일반 상회사 역시 이들의 독점권에 대하여 격렬한 저항을 보이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외국공사들의 격렬한 항의도 불러 일으켰다. 즉 통상조약에 보장된 자유무역 조항, 관세 이외의 모든 세금의 면제 조항에 저촉된다고 하는 외국공사들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후술하는 균평회사와 비슷한 시기인 1890년 6월경 모두 폐지되었다.76)

조선정부는 25객주 분읍제 실시 기간 중 내외의 반발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량형 정비라는 명분 하에 균평회사를 설치하였다. 개항후 청상・일상은 조선의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각각 자국의 斗衡을 사용하면서 조선산품 구입시에는 후한 두형을 사용하고 수입품 판매 시에는 박한 두형을 사용하는 등의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량형의 통일은 시급한 일이었다.

1885년 인천 · 부산의 상인들이 도량형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

<sup>76)</sup> 나애자, 앞의 글, 196~197쪽.

하기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887~1889년 사이에는 정부에서 직접 權平局·均平所 등을 특설하여 도량형 통일을 꾀하려고 하였지만 이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도 끝에 정부는 25객주 분읍 제를 실시하던 중인 1890년 1월 3港에 개항장 객주를 중심으로 均平會社를 설립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승인한 절목에 의하면 균평회사는 일본 됫박과 서양 저울 중 가장 공평한 것을 선정하고 이를 각 개항장에 20개씩 나누어 주고 수출입무역시 도량의 준거로 통용하도록 하였다. 균평회사는 이 화물 도량을 담당한 대가로 貨主에게서 每石當 1升씩의 斗稅를, 每秤當 1兩씩의 衡稅를 거두어 그일부를 정부에 상납하게 하였다.

균평회사의 설립은 단순히 도량형이 정비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만을 지닌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차인을 파견하거나 관지정 25객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던 상품과세를 균평회사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지속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즉 모든 거래 상품을 균평회사를 통하게 함으로써 25객주 분읍제 시행에 강제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객주구문과 혼합되어 있던 상품과세를 분리하여 균평회사로 하여금 징수, 監理署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세 창설로 주요한 세원을 잃게 된 감리서의 경비를 보족하려는 것이었다.77)

그러나 균평회사 역시 위 25객주 분읍제와 같은 운명을 걸었다. 내적으로 는 균평회사의 독점성을 비판하는 일반 조선상인의 반발, 외적으로는 균평회사를 무역화물세 징수를 위한 기관으로 파악한 외국공사들의 반발로 인하여설립된 지 3개월만인 1890년 4월 이후 6월에 걸쳐 모두 폐지되고 말았다.78)

이로써 개항장객주를 보호하려고 했던 정부의 의도는 좌절되었으나 재정 수입을 보충하려고 했던 의도는 계속 관철되었다. 이후에도 개항장객주의 영 업세 상납 의무는 계속되었고 정부는 원활한 영업세 징수를 위하여 客主頭

<sup>77)</sup> 전우용, 〈19세기말~20세기초 한인회사연구〉(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1997), 74~77쪽.

<sup>78)</sup> 박수경, 〈개항후 인천항 객주에 관한 연구〉(《대한제국연구》5, 이화여자대학 교 한국문화연구원, 1986), 72~74쪽.

目, 監董 등을 임명하고 납세를 연체하는 객주를 처벌하는 등 수세 강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79)

객주상회사와 함께 나타난 조선상인의 움직임으로 船商 등 일반상인들이 합자하여 설립한 상회사들이 있었다. 이들 상회사는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하여 1883년 이래 〈표 10〉과 같이 전국 각지에서 다수 설립되었다.

〈표 10〉 1883∼1894년간 설립된 상회사

연 도	상 회 사 명	소재지	업 종
1883	大 同 商 會	한 성	매매,운송
1884	義 信 會 社	한 성	상업, 무역, 어업, 선운업
	順信昌會社	인 천	메메
	布木商會社	경상도	매메
	金泉商會	경상도	메메
	博 林 社	한 성	메메
	乃成里商會	안 동	메메
	太平會社	한 성	메메
	永 信 商 會	한 성	메메
1886	大 興 商 會	인 천	상업
	濟 與 社	인 천	상업
	信昌商會	순 천	상업
1887	大 安 商 會	천 안	상업
	船商會社	한 성	상업
1888	濟 生 會 社	한 성	무역
	湊 會 社	부 산	상업, 수세
	太平會社	경상도	상업
1889	海産會社	부 산	어획, 매매
	廣 成 會 社	인 천	상업
	槐 興 會 社	괴 산	상업
	蓉 湖 會 社		상업
1890	濟 通 會 社	부산	상업
	新福商會社	부산	상업
	汝 産 會 社	부산	상업

<sup>\*</sup>출전:전우용, 앞의 박사논문, 〈부록 1〉1883~1910년간 韓人會社一覽 중 상업· 무역과 관련된 회사만 정리함

<sup>79)</sup> 한우근, 앞의 책, 191~194쪽.

이들 상회사는 관허회사로 인가를 받았고 업종에 따라 세금 상납의 의무를 지는 대신 내지객주의 푼세 등의 잡세나 세력가의 수탈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개항장으로 화물을 싣고 가 매매를 할 때에 객주의 중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다. 이처럼 상회사가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았던 것은 당시 정부의 상업진흥책에 의한 것이었다. 이 점은 전현직 관리들이 상당수 상회에 출자하였고 정부에서도 양반의 상업 참여를 권장하고 있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양반의 상업에 대한 투자는 이미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고 있었지만 개항 후무역 발전에 따른 상업이익의 증가로 더욱 확대되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권장하였던 것이다.

이들 상회사는 3항구에서 25객주 분읍제가 실시되었을 때 종전과 달리 개항장에서 화물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객주의 중계를 거쳐야 하게 되었으나, 객주와의 상권 분쟁 끝에 상회의 자본으로 구매 수송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권을 인정받을 만큼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상회사역시 정부로부터의 허가를 받고 특정 물종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가진 이상, 소상인과 소상품생산자들의 불만을 샀고 이러한 폐단 때문에 광성회사·해산회사 등 몇몇 상회사가 철폐되는 결과를 빚었다.80)

#### 나. 외국상인 점포 철수운동

개항장객주가 외국상인의 침투로 인하여 고통받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한성의 시전상인들이었다. 조선정부는 시전상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1885년 봄부터 청국측에 청상 점포의 한성 철수를 제의하기 시작하여 그해 12월 원세개에게 청상의 한성 점포를 도성 밖의 근접지인 용산·양화진 등지로 이설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1886년 2월 원세개가 조선정부의 요청에 동의하였지만 조선정부의 즉각적인 행정조처, 특히 도성내 추가 입주의 금지, 도성내 정주 청국 상인에 대한 토지·가옥 보상 문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국측의 무성의로 인하여 진전이 없었다.

일본측에도 동일한 요구를 하였으나 일본은 '청국 상민 점포 철수에 대해 영국 독일 양국은 물론 여타 조약 체결국도 모두 동의를 표하고 조선정부가

<sup>80)</sup> 나애자, 앞의 글, 200~203쪽.

철수하는 일본 상민의 가옥·토지를 실비로 보상해 줄 경우' 철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일본측은 조선정부의 재정 궁핍을 알고 조약 조문에도 없는 이전 비용 문제를 제기하여 사실상 조선정부의 철수 요구를 좌절시키고자하였다.81)

이로써 조선정부는 청·일 양국에 대한 점포 철수 요구를 보류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1886년 4월부터 시전상인들의 집단적 저항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통리아문에 외국상인의 한성 개잔으로 인한 폐해를 호소하는 한편, 외국상인에 대해서는 물화의 매매시에 물품 사용세와 같은 세금을 징수할수 없으므로 매일 자기 휘하의 廛員을 외국인 거류지 및 점포에 파견하여 외국상인과 상거래를 하는 내국인에게 그 구입액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시전상인들의 두 번째 저항운동은 1887년 2월 3일에 다시 폭발하였다. 이들은 청상들에 의한 피해는 그런 대로 참아 왔지만 그동안 진고개 일대에서 만 상행위를 하고 있던 일상들이 1887년에 들어 종로 일대에 점포 개설 요구를 해 온 데 격분하였다.

이번에는 통리아문에 대한 호소에만 그치지 않았다. 시전상인들은 2월 3일 아침부터 미곡·어물 등 일용품 판매상을 제외한 모든 점포를 폐문 철시하여 버렸다. 이들은 일용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일상과의 매매거래 일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방문을 붙이고 수천 명이 통리아문에 몰려가 한성개잔 및 용산·양화진 개시를 규정한 조약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시전상인의진정에 대해 통리아문에서는 청국이 점포 철수를 약속하였으니 3~4월까지기다리면 각국 정부의 회신이 도착하고 외국상인들이 철수할 것이므로 그동안 가옥·토지를 사사로이 외국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생업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단 시위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청은 점포를 철수하기는커녕 그해 9월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일본 상인들의 점포가 증가하고 계속 가옥을 건축하고 있다는 구실 하에 청상의 용산 이전을 거부하고 이전 비용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889년에 들

<sup>81)</sup> 김경태, 〈갑신·갑오기의 상권 회복 문제〉, 앞의 책, 302~305쪽.

어서는 청상의 보호를 이유로 남대문 안 경운궁 옆에 중국인 거류지역을 하나 더 지정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조선인 가옥을 헐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취하게 했으며 도성 한가운데에 청국 경찰서를 설치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82)

외국상인의 점포 철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시전상인들은 본격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하였다. 1890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에 걸친 철시와 연좌시위 운동이 그것이다. 수백 명의 상인들이 통리아문 근방 시가지에 돗자리를 깔고 연좌시위에 들어갔고, 米廛(쌀가게)를 제외하고는 六矣廛과 육의전의 分店, 술집, 음식점 등 거의 모든 상점이 철시동맹파업에 동참하였다. 이들의 주장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외국상인은 인천항에만 국한시키고 조선상인은 한성을 전담하게 되면 인천과 한성이 서로 표리를 이루어 쌍방이 모두편리하게 된다고 하여 외국상인의 점포를 인천에만 한정시킬 것을 제기하고있는 점이었다.

철시동맹파업은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절정에 도달하였다. 銀麵廛 (술 담그는 누룩 판매하는 가게)과 佐飯廛(반찬가게)를 비롯하여 심지어 골동품 가게까지 철시를 하여 시위에 가담하였다. 이같은 철시동맹파업에 겁먹은 일본 대리공사는 일본 외무대신에게 군함 급파를 요청하는 한편 한성에 거류하는 일본 부녀자들을 인천으로 피난시키기까지 하였다.

조선정부는 1월 12일 일본공사와 회담하여 청·영국·독일이 조약 변경을 허락하고 점포 철수에 따른 비용을 보상한다면 일본도 이에 따를 것이라는 회답을 받았다. 이어서 시전상인 대표를 소집하여 20일의 말미를 주면 그 기 간 내에 청국정부로부터 청국 점포 철수 확답을 획득하겠다고 약속하여 철 시파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 대표가 고종의 친서를 휴대하고 天津으로 가서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을 만나 회담한 결과는 실망적이었다. 이홍장은 원세개의 보고에 기초하여 이전 비용 20만원을 사전에 보상할 것과, 청국의 점포 철수 후일본도 철수한다는 확약을 받을 것 등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sup>82)</sup>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일지사, 1982), 185~188쪽.

조선정부의 점포 철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외국상인의 점포 철수 문제는 좌절되고 말았다.<sup>83)</sup>

〈都冕會〉

# 2. 국내적 상품유통의 변동

개항으로 국내적 상품유통은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시기는 농민 전쟁 이후나 보호국화된 뒤의 단계만큼 유통구조의 재편이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대외무역이 증대하고 각 지역의 상권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재편 되면서 종래의 상품유통권, 유통상품의 구성, 유통조직 등 유통구조는 전반 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각 개항장은 전통적 원격지 유통의 중심지를 대신하여 각지에서 생산된 상품이 집산되고 국내의 각 포구 등으로 중계하는 유통의 거점으로 등장했다. 종래 동해안과 서해안 사이의 원격지 유통의 중심지로, 특히 북어의 집산지로 명성이 있었던 마산의 상권이 부산의 개항으로 몰락했던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전통적 국내상품유통권은 크게 경상도의 동해안과 강원도의 영동지방 및 함경도를 연결하는 유통권과 전라·경상도에서 서울·개성을 거쳐 황해·평안도를 잇는 유통권으로 양분할 수 있다.1)

그런데 개항 직후부터 대일무역이 증가하면서 부산항 중심의 새로운 유통권이 형성되어 갔다. 원산항이 1880년 4월, 인천항이 1883년 11월에 개항되기 이전에는 주로 부산을 통하여 수출되고 있었다. 1879년 당시 수입품의 대종을 이루던 카네킨의 판매지역은 대개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 등4개도였는데 수입품이 엽전을 매개로 곡물로 바뀌어 수출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부산항 중심의 새로운 유통권에는 이 4개도가 포함되었다고 보여진

<sup>83)</sup> 김경태, 앞의 글, 315~318쪽 ; 김정기, 〈1890년 서울상인의 철시동맹파업과 시 위 투쟁〉(《한국사연구》67, 1989), 78~80쪽.

<sup>1)</sup> 李重煥,《擇里志》卜居總論 生利條.

다.2) 당시 국내적 유통과 대외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쌀과 콩 등의 국내적 곡물수급구조는 이 새로운 유통권이 형성되면서 위협받았다. 종래 함 경도 지역은 강원도의 영동지방과 경상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곡물 유통권 아래 경상도에서 미곡을 공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항의 곡물수출이 증가 하면서 함경도로 공급되던 곡물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식량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함경도의 많은 농민이 유민화하고 만주지역으로 월경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1882년의 임오군란이 곡물의 대일수출에 따른 미가 상승과 식량부족에서 발생했다는 지적도 이 새로운 곡물유통권의 형성으로 인한 전국적인 곡물수급구조의 교란현상에 근거한다.3) 실제로 개항 이전에 주로 서울로 운송되던 전라도의 미곡은 1890년을 전후하여 10분의 7・8이 부산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4) 그래서 1892년 전라감사는 '외국인의 곡물수 출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부안 등 14개 읍에 방곡을 실시하기도 했다.5) 그 뒤 1885년과 1886년은 부산항의 수출비율이 총쌀수출액의 각각 83.6 • 98.1%을 차지했으나 그 이후는 인천항의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60% 전후를 차지하다가 1893 · 1894년경에는 오히려 인천항의 수출비율이 각각 73.3 · 82.9%로 역전되었다.6) 두류(豆類)는 1887년 이후 인천항과 부산항의 수출비 율이 대등하며 후기로 갈수록 오히려 인천의 수출양이 우세한 추세에 있었 다. 그러므로 곡물수출의 주도권도 후기로 갈수록 초기의 부산 중심에서 인 천으로 이동하였다. 인천항은 입지적인 관계로 서울의 유통권과 밀접한 관계 를 가졌기 때문에 종래 서울로 향하던 무곡선은 인천항의 미가와 서울의 미 가의 차이에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890년 이후 급격한 곡물수출 의 증가는 서울의 곡물가격을 등귀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전통적인 국내 최 대의 곡물소비지인 서울과 대일 곡물수출의 새로운 중심지로 등장한 인천항

<sup>2)《</sup>日本外交文書》12, 사항 9, 문서번호 125, 224쪽.

<sup>3)</sup> 彭澤周,《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硏究》(東京:高書房, 1969), 292\.

<sup>4) 《</sup>明治官報》2242(1890. 12.17), 仁川米穀商況, 234쪽; 전라도의 미곡 가운데 珍島 이남은 주로 부산으로, 북부지역에서는 인천으로 운송되어 수출되었다고 한다(《通商彙纂》55 號外 1, 28년 仁川港商況年報(1896. 8.5)).

<sup>5) 《</sup>全羅道關草》 4책, 壬辰 11월 23일 完營報.

<sup>6)</sup> 李憲昶,〈韓國 開港場의 商品流通과 市場圈〉(《經濟史學》9, 1985), 130~31쪽.

사이에 같은 유통권의 주도를 놓고 상권대립이 치열했다. 그래서 1893년 1월 조선정부는 인천항으로의 곡물유출을 막기 위한 한 방법으로 외무독판이〈萬石洞廻船令〉을 내려 조선선박의 인천항에서의 적하와 양륙을 금지했고, 이에 대항하여 일본상인들은 철폐를 요구하고 조선상인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던 것이다.7)

한편 이 시기 기선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운송수단의 도입은 워격지 유 통의 확대와 이에 따른 국내 상품유통의 전반적 증대를 가져왔다. 부산의 예 를 들면 1885년 국내상품 이입액이 38.495에·이출액이 68.856엔이었던 데 비해 1894년에는 각각 520.848엔. 473.653엔으로 증가했다. 원산은 1885년에 이입 76,781엔, 이출 62,247엔이던 것이 1894년 이입 326,894엔, 이출 428,625 엔으로 증가했고 인천도 1885년이 이입 16,649엔, 이출 5,174엔인데 1895년은 이입 297.601엔, 이출 277.164엔이었다. 이 가운데 이입액에는 외국과의 교역 을 위한 상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출액은 대부분 국내적 유통을 위 한 것이었다. 외국과의 무역상품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국내적 상품유통에 서는 중요한 상품이었고 외국상품의 수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던 명태와 마포의 예를 들면 명태는 1880년대 중엽에 5만엔 정도에 불과한 원산의 이 출액이 1890년대에 30만엔 내외, 마포는 1885년 6만엔대에서 1890년대 초 한 때 100만엔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8) 이 같은 유통량의 증대는 무엇보다 기선이라는 근대적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한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조선사회 내부의 상품생산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었음도 함께 의미하는 것이다. 즉, 대 외무역 특히 곡물과 금 등의 대량수출로 전반적으로 조선사회의 상품구매력 이 증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원격지유통은 주로 일본인이 소유한 기선에 의존했다. 따라서 국내적 상품유통에서도 일본상인이 주도권을 쥘 수 밖에 없었고 일본상인에 대한 조선상인의 종속도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기선을 이용해 개항장 사이의 교역을 주도했고 개항되지 않은 연안의 포구에서 밀무역을 자

<sup>7)《</sup>通商彙纂》8호 附錄, 명치 26년중 仁川港商況年報. 《仁川府史》、1029~1030等.

<sup>8)</sup> 李憲昶, 앞의 글 참조.

행하기도 했던 것이다. 일본상인들은 일본에서의 곡가가 하락할 때 매입한 곡물을 다른 개항장으로 이송하고 상업적 이윤을 취득했다. 항상적으로 부산항에서 미곡을 공급받고 있던 원산항으로의 일본기선에 의한 곡물수송이 바로 그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다른 상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1889년 인천의 연안무역의 경우 미개항장에서의 미곡운송 등은 조선상인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원격지인 부산의 미역, 원산의 명태 등의 상권은 대체로 기선을 이용한 일본상인이 담당했다.10》 그래서 종래 조선상인에 의해 육로를 통하여 서울로 수송되던 함경도의 명태와 마포의 상권이 해로를 이용한 일본상인에게 침식당해 서울의 어물전상인이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었고 1893년 일본인의 보고에 의하면 "명태어의 판매권도 점점 韓商의 손을떠나 在留外商의 손에 이행"되고 있었다고 한다.11》뿐만 아니라 일본상인은호남지방에서 목면을 서울에 반입하고 판매함으로써 백목전상인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12》

이 같은 외국상인의 상권침탈은 종래 유통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전통상인에게 대응과 종속을 강요했다. 위의 어물전이나 백목전의 경우와 같이 외국상인이 직접 서울에 점포를 설치(漢城開棧)하며 시전상인의 상권을 침해하게되자 이들은 외국상인의 점포철수를 요구하는 동맹철시를 하기도 했다.13) 또한 조선 후기 이래 세곡운송을 통하여 성장하여 온 京江商人들은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상권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일본기선의 세곡운송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입고 있었다. 개성상인은 종래의 상업조직을 이용하여 개항이후 활동영역을 수출입유통업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 시기까지는서울 이북지방에서 계속 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해주·재령상인들도 황해도 지방에서 미곡을 매집하는 일본상인과 대응하여 일정하게 유지했다. 평양상인들은 1883년 인천항에 대동상회를 설치하고 개항 초부터 수출입상품의유통에 종사함으로써 적어도 진남포가 개항되고 일본상인이 적극적으로 침투

<sup>9) 《</sup>明治官報》 2726(1892. 7. 29), 釜山貿易景況, 313쪽.

<sup>10) 《</sup>通商報告》, 1890년 3월분, 명치 22년중 仁川港貿易景況, 66쪽,

<sup>11) 《</sup>通商彙纂》 4, 명치 6년중 京城商況年報(1894. 4.16).

<sup>12)《</sup>所志謄錄》, 戊子 9월 18일, 白木廛元必成等所志.

<sup>13) 《</sup>所志謄錄》, 戊子 11월 21일, 己丑 10월 11일조.

하기 이전까지는 상권을 오히려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14) 보부상은 惠商公局에서 商理局으로 소속되는 등 어용상인화하면서 관권을 빙 자하여 경제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던 소상인을 침탈하는 전근대성을 면치 못 함으로써 갑오농민전쟁에서도 보부상의 작폐 금지요구가 나왔던 것이다.15)

개항 후 등장한 새로운 상인층으로는 개항장 객주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개항 초기에는 경강과 외방의 객주와는 달리 주인권을 소유하지 않아 특권 에 기초한 중개독점권이나 영업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개항장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정부는 수출화물에 대한 수세와 함께 개항장 객주를 선정하는 등 통제를 시작했다. 개항장 객주들도 상회·상의소 등의 객주조합을 결성했 다. 관허의 상회사는 상업세을 내는 대가로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매매주선 권을 보장받는 특권적 상인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1880년대 말부터 외국상인 들이 본격적으로 내지행상에 나서 산지의 객주에게 직접 상품을 매매하면서 개항장 객주의 상권은 위축되어 갔다. 봉건정부도 개항장 객주에게서 거두는 세입이 감소하자 이들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하려고 특정 객주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각 지역의 매매주선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25가 객주전관제와 같은 특권적 상업정책을 실시했다가 행상 등 소상인의 반발과 외국공사들의 항의 로 인해 곧 철폐하기도 했다.16) 그런데 개항장 객주는 그 성격상 상품유통과 정에서 외국상인과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다가 자본면에서도 외국상인. 특히 일본상인의 금융지배체제에 예속되어 있어 그 성장 자체가 매판화의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항 이후 상품유통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전되었고 국내 상품유통도 기선과 같은 근대적 수송수단의 도입과 대외무역의 확대에 따른 구매력의 증진에 힘입어 원격지유통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국내적 상품생

<sup>14)</sup> 李炳天, 《개항기 외국상인의 침입과 한국상인의 대응》(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85), 제3장 참조.

<sup>15)</sup> 韓活劤,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一潮閣, 1970), 142~172쪽 참조.

<sup>16)</sup> 韓沽劤, 위의 책, 172~204쪽. 朴修鏡,〈開港後 仁川港 客主에 관한 研究〉(《大韓帝國研究》V, 1982). 洪淳權,〈開港期客主의 流通支配에 관한 研究〉(《韓國學報》39, 1985). 李炳天, 앞의 글(1985), 2장.

산과 수요확대는 국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세계자본주의체제 편입의 결과였으며 유통과정도 기선을 장악한 외국상인이 주도하여 감으로써 국내시장 자체가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개항 이후 상품유통의 증대는 조선경제의 제국주의에의 예속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국내시장이 보호되지 못하는 속에서 상인조직도 외국상인과 연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상권이축소될 수 밖에 없어 이 시기 상인계급의 성장은 매판화의 가능성을 함께가지는 것이었다.

### 3. 방곡령실시의 사례와 원인

防穀은 행정의 강제력으로 곡물의 域外流出을 금지하는 일종의 경제정책으로 조선 고유의 용어이다. 물론 이와 같은 예는 중국과 일본에도 존재했다. 고대 중국에서는 '遏糴'이라고 하여 他國으로 미곡의 유출을 막는 제후의정책이 있었고,<sup>17)</sup> 일본도 봉건제 시기에 貢納入 전이나 기근시에 領內의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津留'라는 경제정책을 썼다.<sup>18)</sup>

조선 후기 이래 농민층 분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나 향촌지역에 곡물시장이 형성되고 지주·부농·곡물상인들이 무곡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무곡행위는 곡물유출지역에서 곡물을 구매하여 생계를 잇던 빈농이나 무전농민의 반발을 초래했다. 곡물의 유출은 그 지역의 곡가등귀를 유발했던 것이다. 더구나 흉년의 경우 유출지역내 곡물수요자의 반발은 심각했다. 이에 지방관은 관할지역내 수요곡물을 확보하고 곡가의 안정을 꾀하는 수단을 강구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나타난 것이 곡물의 유출을 행정의 강제력으로 저지하는 방곡의 실시였다. 그러나 방곡은 원래 법전상에 규

<sup>17)《</sup>備邊司謄錄》, 哲宗 11년 10월 20일조; "左議政趙[斗淳] 所啓 今之防穀 即古之 遏糴也 春秋隣國之間 尚以遏糴大禁 況疆場之內 安有彼此之別 而使貿遷路阻 緩急之不爲互濟乎": 張洽,《春秋集典》; "[僖公九年]九月戊辰 諸候盟于葵丘 孟子 曰五覇桓公 爲盛 癸丘之會 諸侯東牲載書 而不挿血 … 五命曰 無曲防無遏糴 …"

<sup>18)《</sup>日本史辭典》(弘文書館, 1981), 341쪽.

정된 것은 아니었다.

1858년 우의정 趙斗淳은 방곡과 防納의 폐를 논의하면서 특히 방곡에 대해서는

한 州나 한 邑에서 편벽되게 관할지역의 경계 밖으로 賢遷하게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법전에 적혀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들으니 諸道에서 왕왕 방곡을 해 서 이 때문에 상선이 빈 배로 갔다가 빈 배로 돌아와서 장시의 시가가 점차 등 귀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19)

라고 하여 법전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물론 흉작시 지역내의 구황책으로써 곡물의 유출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했으나,<sup>20)</sup> 각 지역의 방곡이 심해질 경우 서울의 곡가안정을 꾀할 수 없었으므로 방곡의 발생시마다 이를 금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관할지역내 민정의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관으로서는 환곡이나 진휼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한 지주나 부농의 곡물유출을 막음으로써 곡가안정을 꾀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방곡은 중앙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방관들에 의해 곡가안정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었다. 더구나 개항 이후 곡물수출이 증대하면서 곡물의 상품화가 더욱진전되고 기왕의 유통구조마저 변용되고 있어 곡물의 유출과 곡가등귀는 한층 심화되었고 방곡의 발생도 필연적 추세였다.

여기서는 유통과정의 변화를 전제로 방곡령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려 한다. 제1기(1876~1884)는 일본상인의 행상이 허용되지 않던 시기였고, 제2기(1885~1894)은 일본상인이 행상으로 개항장 밖에서 곡물을 직접 매입하게 되는 시기였다. 제3기(1895~1904)는 곡물수출이 본격화하던 시기였지만 일본의 외교적 압력으로 방곡시행 자체가 어려웠다. 이렇게 나누어진 각시기에 따라 실시의 원인이나 실시대상, 그리고 발생의 頻度數 등 제반사항이 달라진다. 따라서 시기적 구분은 방곡령의 성격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반

<sup>19) 《</sup>承政院日記》, 哲宗 9년 3월 20일조.

<sup>20)《</sup>承政院日記》, 純祖 9년 6월 14일조;"救荒無他策 專任積穀 積穀亦無他策 一道之內 守該道所在之穀 一邑之內 守該邑所在之穀 穀在其土 然後民可得食."

드시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곡물유통과정에서의 일본상인과 조선인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sup>21)</sup>

#### 1) 제1기(1876~1884)

〈표 1〉은 각종 사료에 산견되는 이 시기(1876~1884) 防穀수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 ①의 방곡으로 말미암아 충청・황해・강원 감사가 문책을 받고 있는 것과 ⑧의 경우 京畿・海西・三南地方에 방곡이 발생하여 정부가禁飭을 내리는 것으로 미루어 ①에서 3건, ⑧의 삼남의 충청・전라・경상 각도에서 각 1건씩만 일어났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적어도 14건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각 지방관의 방곡으로 정부에서 논란이 된 것은 ①④⑤⑧의 경우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선 전국적으로 흉작이었던 시기라는 점이다. 또, 방곡으로 말미암은 곡물유통의 장애로 서울의 곡가가 등귀하기 때문에 정부가 방곡의 철폐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 한 예로 ④의 1882년 정부가 지방관의 방곡을 금했던 경우를 보면

<sup>21)</sup> 개항 이후 防穀수에 대한 기왕의 연구로는 우선 1889년의 함경도와 황해도, 1890년의 황해도 방곡령사건으로 인한 賠償문제와 한일간의 외교적 분규를 다룬 田保橋潔과 唐澤たけ子의 연구를 들 수 있다. 田保橋潔의 연구는 방곡령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지만 단순히 이 사건의 외교적 측면의 기술에 그치고, 唐澤たけ子는 개항 이후 1884년에서 1901년까지 27건의 방곡령 발생사례가 있었다고 하여 일부 학자들도 아무런 비판없이 이를 따르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항 이후 방곡령은 1876년에서 1904년까지 적어도 100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었다. 그밖에도 한우근이 '東學亂' 원인 규명을 위해, 吉野誠은 1890년 이후 경상도·전라도 양 도의 자료를 중심으로 '米穀商品化'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다루었다. 김경태는 대한제국시기에 한정해서 방곡령 실시의 원인을 분석한 바 있다.

田保橋潔、《近代日鮮關係の研究》(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53~103쪽.

唐澤たけ子、〈防穀令事件〉(《朝鮮史研究會論文集》6.1969).

吉野誠、〈李朝末期における米穀輸出の展開と防穀令〉(《朝鮮史研究會論文集》15, 1978).

金敬泰、〈大韓帝國時期의 米穀通商構造〉(《大韓帝國研究》 IV, 1986).

의정부에서 계를 올렸다. 경기도 내의 농작이 흉작을 면치 못해 都下의 시가가 점점 올라 작은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근래 들으니 外道에 빈번히 防穀하는 바람에 [곡물:필자]판매의 길이 두절된다 합니다 … 각도 관찰사에게 영을 내려 管下 각읍에 엄히 삼가하게 하고 [판매를:필자] 허가하면 유통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왕이 윤허했다.<sup>22)</sup>

라고 하여 흉작으로 서울의 곡가가 오르는데 각 지방관이 방곡을 하여 곡물의 販買之路가 막힌다고 하며 철폐를 지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각 지방관에 대한 정부의 방곡금지의 지시는 개항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의 방곡령이 국내의 곡물수급구조내에서 발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①의 경우는 대일관계에서 지방관이 방곡령을 발령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종래의 유통구조내에서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즉, 1876년과 1877년은 개항직후로 일본상인의 진출이 급격하지도 않았고, 국내의 대흉작으로 말미암아 일본으로의 곡물수출이 거의 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곡물이 수입되고 있었으므로,<sup>23)</sup> 이 경우의 방곡령은 국내 유통구조내에서 발생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충청도 지역의 방곡은 다소 사정이 다르다고 본다. 1876년 방곡의 실시로 문책을 받던 충청감사 趙秉式은 연해의 방곡실시는 '潛輸之弊'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sup>24)</sup> 이 해에 정부가 왜선의 潛賣를 막으라고 충청도에 지시하던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sup>25)</sup> 조병식이 막으려던 '잠수지폐'에 일본으로의 곡물유출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⑤ ⑧의 각 지방관의 방곡은 이미 살핀대로 이 단계에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곡물의 대일유출이 증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산항 중심의 새로운 곡물

<sup>22)《</sup>日省錄》, 고종 19년 10월 12일조;"命外道防穀嚴飭無碍流通:議政府啓言 畿內農形 未免歉荒 都下市直 漸就騰踊 誠非細憂 近聞外道輒多防穀 以致販買之路 絶 … 令各該道臣 嚴飭管下各邑 許卽無碍流通 … 允之。"

<sup>23)《</sup>日省錄》, 고종 15년 5월 27일조;"德源府使文川郡守與日本船長問答記 … 我日 … 故昨年我國歲飢 貴國米幾萬石 自萊館出來 …".

<sup>24)《</sup>日省錄》, 고종 13년 10월 16일조;"疏略曰 以遏糴事 至承問備之典 臣之罪益 著矣 盖沿海防穀 欲察潛輸之弊 以濟難食之患 區區愚淺 非私伊公 自有廟飭 隨 帖許貿 初無防遏 之於守宰之恣意壅遏 京商之徒手空歸 以臣昏謬不能周察 不憚 朝飭 關罪何居"

<sup>25) 《</sup>忠淸兵營關子謄錄》 1책, 丙子 9월 30일조.

유통권에 포함된 경상·전라·충청·강원 지방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①④⑤⑧의 방곡은 종래의 곡물유통권과 개항 장 중심의 새로운 유통권이 대립하는 가운데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방관이 실시했고 전자가 보다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丑 1〉 1876~1884年의 防穀令 發生事例

번호	발생년월	발 령 자	발생지역	내 용	비 고(出典)
1	1876. 9~10 1877. 2~3 (음력)	各地方官	各地方	政府가 防穀禁筋 내림. 忠清・黄海 江原 監司문책.	《日省錄》, 高宗 13年 9月 2日, 10月 6日, 10月 16日, 10月 20日, 14年 2月 20日, 3月 6日
2	1880. 5 (양력)	慶尙道地方官	慶尙道	釜山日本領事항의	《通商彙編》,明治 14年 釜山港之部
3	1881. 5~6 (양력)	慶尙監司 各邑守令	경상도 각지	在釜山 日本領事 항의・철폐	위와 같음
4	1882. 10 (음력)	各 地方官	各地方	政府의 防穀禁飭	《日省錄》,高宗 19年 10月 12日
5	1883. 10 (음력)	各 地方官	各地方	政府의 防穀禁飭	《日省錄》, 高宗 20年 10月 27日
6	1884. 4 (음력)	黄海道 鳳山 ・長淵府使	鳳山・長淵 200石 執留	大同商會 地租 甲申 4月 23日	《八道四都三港日記》
7	1884. 7 (양력)	德源府使	元山	都賈潛賣금지・ 日本公使 항의	《日案》,高宗 21年 閏 5月 19・20日
8	1884. 9 (음력)	各 地方官	京畿・海西・ 三南	政府의 防穀禁飭	《日省錄》, 高宗 21年 9月 19日

<sup>\*</sup>비고:①④⑤⑧은 防穀의 발생으로 政府內에서 논란이 있던 年月이다.

⑥의 1884년 황해도 鳳山과 長淵의 방곡은 그 대상이 大同商會이다. 1883년 평안도상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동상회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근대적기업체라고 하지만,26) 1884년에는 거의 수출입무역에 종사하지 않았다.27) 더구나 地租 200석을 운반하다가 이 지방의 방곡령에 걸려 곡물을 운반정지당한 것으로 미루어28) 이 방곡령은 곡물수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sup>26)</sup> 韓祐劤, 앞의 책, 220~223쪽.

<sup>27) 《</sup>通商彙編》, 仁川港之部, 명치 18년, 351쪽.

<sup>28)《</sup>八道四都三港口目記》1冊, 甲申 4월 23일 關鳳山府・長淵府條;"… 大同商會

② ③의 경상도 방곡령 때는 각 읍 수령이 境內의 방곡을 실시하고 감영에서는 관리를 보내어 東萊 부근에서 곡물을 執留했다. 1881년 부산항주재일본영사 近藤眞鋤는 외무대신 井上馨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말했다.

지난 달(양력 1881년 5월) 중순부터 조선인이 본 항으로 수송한 米穀이 점차 감소하고 하순에 이르러 거의 穀路가 杜絶되는 양상이 나타나기에 探偵하여 보니 梁山·九浦·金海 등의 지방에 大邱官吏가 출장하여 輸穀을 差留하고 있었다. 작년도 이 때쯤 되어서 같은 폐해를 받고 자못 곤란했는데, 전철을 밟고 있다.<sup>29)</sup>

그래서 5월 23일 일본영사는 동래부사 金善根에게 현재의 미곡유출 저지사건은 양국간에 미협정된 것이어서 관리의 독단으로 개항장으로의 곡물유통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30) 이에 대하여 김선근은 양식이 궁핍한 때 각영 각읍에서 백성을 위해 지방관이 방곡을 시행하는 것은 상례라고 했다.31) 그러나 일본영사는 방곡은 바로 곡물수출을 금하는 것이라 하고 양국상민의 무역을 관리가 막을 수 없다는 〈丙子修好條規〉 제9관을 들어반박하며 1880년 5월경(음력 4월)의 방곡에 대해 언급한 후 大邱官吏의 穀物執留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32) 그러자 김선근은 대구관리의 執穀은 '세곡의 횡령을 막으려는 것(稅穀防奸)'으로 商路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며,33) 대구의 감영에서는 항의에 따라 관리들이 철수했다.34) 이 시기 빈번하던 세곡의 潛賣를 상기하면 ②③의 방곡령에는 文面대로 세곡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며, 일본영사가 언급한대로 개항장으로의 곡물유출을 저지하려는 의도도 개재되었을 것이다.

社報稱 該商會社所貿 本郡地租二百石 現爲該地方防穀 至於執留云 …."

<sup>29)《</sup>通商彙編》,明治 14년,釜山港之部,제56호 大丘官吏輸穀差留候義ニ付東萊府使ト照會ノ始末上申,132等.

<sup>30)</sup> 같은 책, 別紙 甲號(近藤→金善根), 133쪽.

<sup>31)</sup> 같은 책. 別紙 乙號(金善根→近藤). 133쪽.

<sup>32)</sup> 같은 책, 別紙 丙號(近藤→金善根), 133~134쪽.

<sup>33)</sup> 같은 책, 別紙 丁號(金善根→近藤), 134쪽.

<sup>34)</sup> 같은 책, 別紙 庚號(金善根→近藤), 135쪽.

함경도 元山에서 발령된 1884년 ⑦의 방곡령은 '都賈潛商'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즉, 德源府使 鄭顯奭은 각 사(社:地方行政區域의 하나)에 낸傳令에서 부랑무뢰가 饒戶의 돈으로 外村에서 곡물을 매점하여 利를 꾀하므로 조선인과 일본상인이 장시에서 곡물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도고잠상을 급한다고 했다.35) 그러나 日本署理公使 시마무라(嶋村久)는 이에 항의하여 10~20석의 곡물을 구입하는 것도 都賈라고 하여 막으니 일본상인이 곡물을 매입하지 못한다고 철폐를 주장했다.36) 이에 정부는 덕원부사에게 철폐를 지시하는 한편,37) 미개항장에서의 밀무역은 엄금하라 하며 이를 일본서리공사에게 통보했다.38) 덕원부사의 傳令에는 도고잠상을 막는다고 하나 소량의 곡물매입까지 금지한 것과 일본공사가 항의한 것으로 미루어 원산항에서의 일본상인에 의한 곡물유출의 저지라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곡사건의 발단은 饒戶의 곡물매집이다. 요호, 즉 부농의 자금으로 부랑무뢰배, 곧 곡물상인들이 都賈행위와 무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조선 후기부터 계절적·지역적 곡가의 차이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던 지주·부농·곡물상인들이 개항장이라는 대규모의 곡물시장이 출현하면서이를 대상으로 곡물의 상품화를 주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곡가의 등귀는 필연적인 것이었고 이에 따른 빈농이나 무전농민의 반발은 결국 지방관의 방곡시행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이 시기의 방곡령은 크게 나누어 종래의 곡물유통구 조내에서 발생된 경우와 개항장으로의 곡물반출이나 왜선의 잠매행위를 막 으려는 의도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가 보다 우세했다. 그러 나 후자의 경우에서도 그 대상은 조선의 곡물상인이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sup>35)</sup>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編,《舊韓國外交文書》1(《日案》1); 고종 21년 閏 5월 19일조(이하《日案》으로 함); "前日德源府使 傳令於各社 以米栗豆太多 出於邑部元山場市 然後我民與日本商民 可以分買均利 而近或有浮浪無賴輩 多持 饒戶之錢 都賈穀物於外村 輸出他境 為專利之計 使我民與彼商不得買取於場市 都賈潛商 邦禁至嚴云云."

<sup>36)</sup> 위와 같음.

<sup>37)《</sup>八道四都三港口日記》1책,甲申 閏 5월 22일 關德源府使;甲申 閏 5월 27일 關德源府使.

<sup>38) 《</sup>日案》, 고종 21년 윤 5월 19일조.

같이 1876년 8월의 〈朝日通商章程〉에 의하면 일본상인의 곡물유출을 제한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 1884년까지 일본상인의 개항장 이외 행상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은 산지에서 개항장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시기(1876~1884)의 방곡령은 그 직접적 대상이 일본상인이 아니라 조선의 곡물상인일 수 밖에 없었다.

실시의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무곡으로 부를 축적하던 부농이나 곡물상인들이 곡물을 매집 또는 유출하여 곡가등귀를 유발하고 이때문에 지방관이 境內의 곡가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래의 국내 곡물유통과정에서 흔히 보는 경우로 이 시기 대개의 방곡령은 이와 관련되어 있었다. 1884년 덕원부사가 곡물상인의 도고행위을 막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개항장으로의 곡물유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1876년 충청감사 조병식의 방곡령에서 보이는 곡물의 밀무역을 막기 위한 것, 1880·1881년 경상도지역에서 개항장으로의 세곡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한 것, 1884년 덕원부사의 방곡령에 내재된 원산항으로의 곡물유출을 막으려는 의도가그러하다. 그리하여 후기로 갈수록 재래의 곡물유통권과 개항장 중심의 새로운 유통권이 대립하는 가운데 곡물의 대일유출을 저지하기 위한 방곡령의 실시도 빈번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 2) 제2기(1884~1894)

개항직후의 無關稅貿易과 곡물의 대일유출에 따른 많은 폐단을 시정하기위하여 조선정부는 일본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가지게 되어 마침내 1883년 7월 25일(음력 6월 22일) 42款에 달하는〈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과〈海關稅則〉을 조인하고 11월 3일(10월 4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39) 이〈통상장정〉의 제37관에는

 <sup>39)</sup> 이 조약의 성립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金敬泰,〈不平等條約 改正交渉의 展開〉(《韓國史研究》11, 1975).
 夫貞愛,〈朝鮮海關의 創設經緯〉(《韓國史論》1, 1973).
 田保橋潔,《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557~673쪽.

만약 조선국에 가뭄·수해·병란 등의 일이 있어 국내 양식의 결핍을 우려해 잠시 粮米의 수출을 금하려면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 시기를 미리 항구의 일본상민에게 轉示하고 일체 준수해야 한다.40)

라고 되어 있다. 개항 이후 일본에 의한 곡물유출을 저지할 조약상의 명분이 없던 조선은 이로써 제한적이나마 법제적 장치를 가지게 되었다. 즉 旱害나水災, 또는 兵亂이 있어 국내양식의 결핍이 염려될 때 1개월 전의 사전통보로 방곡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1개월 전의 사전통보라는 제한규정으로 말미암아 그 실효가 의심되어 고종도 "좀 늦지 않느냐? 빠른 것만 못하다"41)라고 했다.

한편, 방곡령의 발령권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1888년 1월 경상도의 방곡령에 항의하던 일본영사 무로타(室田義文)에게 東萊府伯兼監理事務 李容植은 제37관의 '由地方官'의 유(由)는 자(自)의 의미로 원래 지방관만 그것을 專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영사는 정부가 곡물의 수출을 금하려 할 때 지방관에게 지시하는 것이며 지방관이 임의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42) 종래 관습적으로 방곡을 시행하던 쪽은 지방관이었다. 중앙정부는 방곡으로 인한 서울의 곡가등귀와 관련해 오히려 이를 저지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방곡을 지시할 처지가 아니었다. 이용식의 조약문 해석은 이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상인에 의한 곡물유출이 증가되면서 그동안 지방관의 방곡에 대하여 '國之大禁'<sup>43)</sup>이라는 입장을 취하던 중앙정부는 지방관이 임의로 발령한 방곡령을 인정하기도 했다. 즉, 1886년의 嶺南防穀으로 일본의 항의를 받

<sup>40)《</sup>舊韓末條約彙纂》(上), 64琴;"如朝鮮國 因有旱潦兵戎等事 恐國內缺乏粮食 欲 暫禁粮米出口 須先期一個月 由地方官 知照日本領事館 以便豫將其期 轉示在口 日本商民 一律遵照."

<sup>41) 《</sup>高宗實錄》권 30. 癸巳 9월 22일조.

<sup>42) 《</sup>日本外交文書》 21. 事項 9. 문서번호 98. 260~69쪽.

<sup>43)《</sup>日省錄》, 고종 20년 10월 27일조;"議政府啓言 防穀國之大禁也 卽聞外邑輒皆 閉藏不出 遠近商賈有錢莫售云 萬萬慨歎 以此意三懸令 關筋諸道 許從便懋遷 … 請並爲分付 允之."

자 조약상 국내에서의 외국인의 質穀을 금할 수 없지만, 영남지방의 계속된 흉년으로 민정이 불안하므로 지방관의 방곡 역시 철폐할 수 없다고 했다.44) 1887년 3월 경상도 관찰사의 방곡령에 대해서도 督辦交涉通商事務 金允植은 지방관의 방곡은 일종의 관습으로 조약에 저촉되긴 하나 민정이 불안하여 어쩔 수 없다고 일본공사에게 답했다.45) 그러나 일본측의 지방관 임의의 방곡에 대한 계속적인 항의때문에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고수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측의 항의가 있을 때마다 철폐를 지시하고 지방관이 임의로 방곡을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일례로 1891년 長端府使의 방곡령에 대해 철폐를 지시하는 關文에서, "통상 이래 防穀一事는 장정에 정해진 대로 판단할일이지 원래 각 營・邑에서 함부로 발령해서 막을 일이 아니다"46)라며 지방관이 독자적으로 방곡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완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사료에 산견되는 이 시기의 방곡령을 정리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이 밖에 각 읍 수령들에 의해 실시된 군소의 방곡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 표는 다소 복잡하지만 발령권자를 우선하여 정리하고 방곡령 발령지역 내의 하급관리들이 과세나 운반정지하여 발생된 사건은 그 발생의 일시와지역, 집행한 하급관리, 대상 인명 및 화물 등 실제 내용을 세분함으로써 방곡령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1893년 10월에서 1894년 3월 사이의 방곡령사건[표의 36~45]은 정부가 발령한 전국방곡령과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정부가 개항장의 곡물유출만막을 뿐 그밖의 지역에서의 방곡은 금하고 있는데도 각 지방관은 관할지역내에 독자적으로 방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때의 방곡은 지방관들이 정부의 방곡령을 빙자하고 더구나 정부방곡령이 방곡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곡기간내에 발생된 방곡사건은 정부발령의 방곡령하에서 일어난

<sup>44)《</sup>慶尚道關草》14, 丁亥 정월 23일 關嶺營; "所謂防禁課稅等事 嚴令該管速為 廢除 以符兩國章程等 因査此亦中 約條中旣許內地通商 則他國人貿穀者 雖不可 禁現當嶺南屢歉之餘 民情修足領領 地方官防穀亦不可廢."

<sup>45)《</sup>日案》, 고종 24년 3월 1일조;"穀物防禁 寔襲內地舊例 然有碍條約 … 惟嶺南 民情見穀物出郷 不可嗷嗷 該監司之防禁 諒亦不獲已也."

<sup>46)《</sup>京畿道關草》4책, 辛卯 11월 8일 關長湍.

것으로 보아 모두 1건으로 처리하고, 그 기간 이외의 것은 각 지방관이 발령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17의 경기 7읍, 21의 전라 9읍, 22의 경상 4읍, 23의 황해·전라 19건, 경기 17건, 경상 16건, 황해·충청 각 7건, 함경 5건, 강원 2건의 순이다. 그런데 1890년까지는 경상도 지역이 대부분이며 1891년 이후는 경기·전라·충청 등지가 가장 빈번하다. 이는 종래 부산항을 중심으로 곡물을 구입하던 일본상인들이 행상의 증가와 함께 서울 중심의 곡물유통권에까지 깊이 침투하는 데서 기인한다. 1890년대 이후 인천항의 곡물수출이부산과 버금가거나 더 많아지고 있던 사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발령권자는 각읍수령이 단연 우세하고 다음으로 각 도觀察使·水使・轉運使・兵使의 차례가 된다.

연도별 발령 빈도수로는 1885년 · 1886년 각 한 건이던 것이 후기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 같은 경향은 방곡령의 발생이 풍흉과의 관련보다는 오히려 일본상인의 곡물유통과정 침투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표 2〉 1885∼1894년의 방곡령 발생사례

нł	발령		, 발령 ·		방	곡령으로 발	생한 사건의	내용		
번 호	전 연월 발령자 (양력)	발령자	발령 지역	발생 연월	방곡 집행자	발생지역	대상인물	대상 화물	발생사항	비고 [出典]
1	1885.	慶尙 監司	慶尙道	•						〈日外書〉21 #98
				洛東江	岸 沙門·	~九浦에 10億	餘 防禁穀物	所 설치		
			慶信領	1886. 12. 20	三浪都監	守山・三浪 之間	河野忠次郎 ・古森兵助 ・大浦登		雲山에서 購買・운 반정지	〈日案〉, 고종
2	1886. 12.	慶尙 監司		•	守令	守山	橋木彌三郎	穀物	課稅・地 方民과 충돌	24년 1월 8일 (이하 高宗 생략) 〈慶關〉, 丁亥
					守令	玄風	日本商人	大豆	監營서 허가 · 반출	1월 23일
				•	收稅官	院洞	•		課稅	
3	1887. 3.	慶尙 監司	釜山 등지	都賈防	止 위해	防穀				〈日案〉, 24년 3월 1·2·5일

	발령				방	곡령으로 빌	:생한 사건의	의 내용													
번 호	면월 (양력)	발령자	발령 지역	발생 연월	방곡 집행자	발생지역	대상인물	대상 화물	발생사항	비고 [出典]											
				宜寧・	咸安・昌	留와 索錢	〈慶關〉,丁亥 11월 18일														
					1887. 11. 7	守令	咸安 大山村	野田卯三郎	大豆 19石 2斗	宜寧·咸 安에서 구매 운반정지											
				11. 11	守令	咸安 道供村	梅野德治	大豆 91석	昌寧에서 購買・ 課稅												
4	1887. 11 ~12.	慶尚 監司・ 慶尚道 - 慶尚道	]     慶尙道	慶尚道	慶尙道	慶尙道	慶尙道	慶尙道	慶尙道	慶尙道	慶尙道	慶尙道	慶尙道	慶尙道		守令	大邱・ 玄風	川門郎次龜村藤大久・・・・・・・・・・・・・・・・・・・・・・・・・・・・・・・・・・・・	大豆	운반정지	〈日案〉, 24년 11월 16·18· 20·21일
						守令	宜寧・ 咸安	鞆田計之助	大豆 80 餘石	운반정지											
				11. 27	守令	東萊下端	一倉喜作 堀田忠三郎 기타	大豆 108石 大豆 400石 大豆 5~600石		〈日外書〉21 #120											
5	1888. 1	慶尙	慶尙道	1個月前	前 通報(	1887.12.29~	L 1888. 1.26)後	1		〈日外書〉 21											
6	~3. 1888. 7	監司   成鏡   監司			出禁止。	指示	#98~103 〈日案〉, 25년 6월 21일 〈咸關〉, 戌子 6월 27일														
7	1888. 9 ~11.	慶尙監司	慶尙道	米豆禁	出令을		《日案》, 26년 8월 21일 《釜錄》, 戌子 10월 2일														

	발령				방	곡령으로 발	생한 사건의	내용		
번 호	<sup>2</sup> 연월 (양력)	발령자	발령 지역	발생 연월	방곡 집행자	발생지역	대상인물	대상 화물	발생사항	비고 [出典]
8	1889. 2	成鏡 監司		1889. 2. 1	守令	定平 布德里	中村寛治郎 ・龍井貞造 ・池本・本 田・大庭	大豆 大豆 4 ~500俵	執留하고 課稅	〈元史〉,110쪽
	9 1					虎頭浦	河田直一의 고용인 磯部六造・ 石川芳太郎	大豆 2,383石	1~5월 곡	〈日案〉, 26년 5월 21일, 6월 27일, 8월 24일, 28년 12월 7일.
9		黄海 監司		•	•	金川助浦	磯部六造 庄野嘉久藏 ・吉妻保藏 의 고용인 日野彌 三郎・石川 芳太郎	2,130石		〈黃關〉, 己丑 5월 21일
	1889. 10	咸鏡		로 철펴	].	,	各公館에 통 <sup>2</sup> 1890년 6월		속 防穀	〈日外書〉22# 170~4 〈元關〉,己丑 9월 23일,庚寅 1월 15일,2월 9일,4월 13일
10	~11.	監司	咸鏡道	1890. 4.	守令	端川・明川 ・吉州	I 4 共 字 田	大豆 250包	•	〈日案〉, 27년
				1890. 4	守令	端川	江夏喜平太	大豆		3월 12일
							梶山新介・ 大塚榮四郎 等 40人	大豆	課稅	〈日案〉, 28년 11월 7일
11	1890. 2	守令	慶 尚 道 河東	日本商	人 梶山ら	비 前貸金으로	그 곡물 매입	하려던 金	成辰 被囚	〈釜錄〉, 庚寅 2월 8일
12	1890. 3	黄海監司	黃海道	1890. 3.	黃州 兵使	鐵道	土井龜太郎 • 佐竹甚三		까지 平 安・黄 海 道 서	〈仁史〉,

## 200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발령		2-2		별	구령으로 박	발생한 사건	의 내용		
번 호	년월 (양력)	발령자	발령 지역	발생 연월	방곡 집행자	발생지역	대상인물	대상 화물	발생사항	비고 [出典]
12	1890. 3	黄海監司	黃海道	1890. 3.		黄州・ 鳳山	美 商 Townsend 의 고용인 金贊奎		운반정지	〈統記〉, 27년 윤 2월 1일
13	1890. 3 ~6.	全羅左 水使		1890. 3.	•	水營	梶山嘉一	*	운반정지	〈釜錄〉, 庚寅 閏 2월 16일
14	1890. 4	守令	慶尚道昌寧			昌寧 栗津	小宮 龜助之	米・太	執穀 ・課稅	〈釜錄〉,庚寅 3월 6・13일
15	1890. ? ~6.		海南 珍島					•	•	〈釜錄〉, 庚寅 4월 5일
16	1890. 11 ~12	成鏡 監司	咸鏡道	監司 로 철:	요청에 唐 폐.	〈日案〉, 27년 10월 21·24일				
17	1891. 11	1	京長坡朔漣道		長湍守令	長湍	仁川 商民 李命根 麻浦 商民 李泰鉉	大豆 幾百石 大豆 750石	구입· 운반정지	〈京關〉,辛卯 11월 8일 〈京關〉,壬辰 3월 16일
	~?	77	守令 連川・ 麻田・ 積城・ 豊德				三湖 商民 金聖文	大豆 700石	운반정지	〈京關〉,壬辰 3월 18일
					守令	連川	京居 尹羲景	大豆 600石	운반정지	〈京關〉,壬辰 3월 28일
18	1891. 11	泰仁	全羅道泰仁			泰仁府 黃山浦	入田八郎의 고용인 安岡德平・ 金汝玉・ 李 徳 益	米豆 300 包	압수	〈日案〉, 29년 2월 6·10일 〈仁牒〉, 壬辰 1월 24일
19	1891. 12	成鏡. 監司	成鏡道 咸興・ 定平							〈元史〉,143쪽
20	1891. 12	各邑 守令	慶尙道		•					〈東案〉,辛卯 11월 15·22일

	발령				방	곡령으로 발	생한 사건의	내용		
번호	연월 (양력)	발령자	발령 지역	발생 연월	방곡 집행자	발생지역	대상인물	대상 화물	발생사항	비고 [出典]
32	1893. 2.	水使	全羅 右水營	•	•	•	•	•	•	同上
33	1893. 2.	統制使	慶 尚 道 沿海 各邑							〈慶關〉, 壬辰 12월 30일
34	1893. 3.		京畿道長湍	•		高浪浦	林市治郞의 고용인 崔致雲	大豆 1,700 餘包	울부터 長 湍 · 漣川 · 麻田에	〈日案〉,30년 1월 27일,2월 18일 〈京關〉,癸巳 1월 29일
35	1893. 가을	郡守	全羅道 古阜	防穀前	後의 穀(	賈差異를 이	용한 郡守 超	趙秉甲의	取利	〈資料〉,中 344쪽
36	1893. 10.	忠清 監司	忠淸道			•				〈日案〉 30년 10월 12일
37	1893. 11.	坡州 牧使	京畿道 坡州	•	•		林長太郎・ 山野源七			〈日案〉 30년 11월 7일
38	1893. 11.	原州 守令	江原道 原州	•	•	•	力武平八	大・小豆 50石	우바전지	〈江關〉 癸巳 10월 17일
39	1893. 11.	安城 守令	京畿道 安城				京居 安兵使	米 110石 18斗		〈京關〉 癸巳 10월 22일
40	1893. 11.	各守令	忠魯連林恩石						監官 李南 洲를 파견 하여 貿穀 케 함	〈忠關〉 癸巳
41	1893. 11.	牙山 守令	忠淸道	٠	٠	·	桑名市平	穀物	水原・牙 山에서 매입 운반 정지	〈日案〉 30년 10월 25일
42	1893. 11.	長湍 府使	京畿道 長湍	•	•			穀物		〈日案〉 30년 10월 30일
43	1893. 12 ~ 1894. 3.	政府	全國	7일· o 釜山	부터 防	巷 1個月(11.1			194) 호 19	〈五關〉 癸巳 10월 1일 甲午 1월 7일

	박령		2-3		빙	·곡령으로 빌		비 내용		
호	년월 (양력)	발령자	발령 지역	발생 연월	방곡 집행자	발생지역	대상인물	대상 화물	발생사항	비고 [出典]
번호		발령자政	발령역	<ul> <li>・ 内</li> <li>・ 内</li> <li>・ 水</li> <li>・ 水</li> <li>・ 1893.</li> <li>12.</li> <li>1893.</li> <li>12.</li> <li>1893.</li> <li>12.</li> <li>1893.</li> <li>12.</li> <li>1893.</li> <li>12.</li> </ul>	おび	世 생 지 역	近港 解田 良 岸 之 力 고 虎 筒伊 丁 澤 總 本 即 ま の ま の ま の ま の ま の ま の ま の ま の ま の ま	대상 화물   따름 *** *** *** *** *** *** *** *** *** *	운반정지 운반정지 운반정지	〈日案〉 30년 11월 6일 〈日案〉 30년 11월 7일 〈慶關〉 癸巳 11월 8일 〈日案〉, 30년 11월 9일 〈日案〉, 30년 11월 11일 〈五關〉, 癸巳 11월 11일 〈日案〉 30년 11월 11일 〈日案〉 30년
	 	府國	12.		<b>汀鏡浦</b>	太野 五平	<b>小</b> 亚		11일 〈忠關〉, 癸巳 12월 13일	
				1892. 12.	7 77	黄海道 白川	力武平八 고 용인 佐藤庄 九郞	米豆 500餘包	운반정지	〈日案〉, 30년 11월 12·14일
				1893. 12.	守令	京畿道 喬桐		米 豆 1,000 餘石	우반정지	〈日案〉, 30년 11월 12일
			1 1	1893. 12.	各 守令	京畿道 長湍 ・坡州・ 連川・麻田		穀物	운반정지	〈慶關〉, 癸巳 至月 14일
				1894. 1.	守令	忠淸道 稷山	岸本 保之助	穀物	澤에서 구	〈忠關〉,癸巳

ы	발령		HJ. 24		바	곡령으로 발	생한 사건의	의 내용		
번호	연월 (양력)	발령자	발령 지역	발생 연월	방곡 집행자	발생지역	대상인물	대상 화물	발생사항	비고〔出典〕
43	1893. 12 ~	政	全	1894. 1.	守令	京畿道 朔 寧・積城 黄海道 兎 山・江原道 鐵原	平原準雄	*	운반정지	〈日案〉, 31년 12월 20일 〈江關〉, 31년 12월 21일
	1894. 3.	府	國	1894. 2.	監官	京畿道 平 澤・軍門浦	巖本 保之助	米太 438石	課稅	〈日案〉, 31년 1월 12일
				1894. 2.	守令	京畿道 長湍	金森玄三	穀物	課稅	〈日案〉, 31년 1월 18일
44	1894. 3.	各守令	京畿 宇 朔 溥川, 江原 鐵原	•			山野源七・ 左近倉太	大豆	운반정지	〈日案〉, 31년 2월 27일
45	1894. 3	各 守令	京畿 麻田・ 長湍・ 坡州				村田忠三	米穀	운반성지	〈日案〉, 31년 2월 27일 〈京關〉, 甲午 2월 28일

\* 備考:出典에서 略記된 史料의 原書名은 다음과 같다.〈日外書〉→〈日本外交文書〉,〈慶關〉→〈慶尚道關草〉,〈咸關〉→〈咸鏡道關草〉,〈黃關〉→〈黃海道關草〉,〈平關〉→〈平安道關草〉,〈忠關〉→〈忠清道關草〉,〈京關〉→〈京畿道關草〉,〈全關〉→〈全羅道關草〉,〈江關〉→〈江田港關草〉,〈仁關〉→〈仁川港關草〉,〈益關〉→〈益山港關草〉,〈佐牒〉→〈仁川報牒〉,〈五關〉→〈五都九道關草〉,〈釜錄〉→〈釜山港監理署日錄〉,〈東案〉→〈東萊監理署送電存案〉,〈資料〉→〈朝鮮交涉資料〉,〈元史〉→〈元山發達史〉,〈仁史〉→〈仁川府史〉,〈統記〉→〈統署日記〉

出典 中〈日案〉과 重複되는 것은 생략했다.

의미한다. 일본상인의 행상은 1887년 이후로 급증하는데 방곡령의 발생 역시 이와 일치하는 것이다.

전시기 방곡령의 실시대상이 모두 조선상인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 방곡령의 대상은 거의 일본상인이다. 물론, 중국상인과 미국상인 타운센드 (Townsend)의 고용인도 각기 한 차례씩 방곡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조선의 곡물상인도 관련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일본상인의 고용인이 거나 자금전대를 받은 자, 또는 개항장으로 곡물을 유출하려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방곡령 발생의 주된 원인은 일본시장과 조선의 곡물시장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해 일본상인이 곡물유통과정에 침투하여 오는 데 있었 고 결과적으로는 곡물의 대일유출에 대한 저항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표에서 1889년까지는 방곡령에 저촉된 일본상인의 대다수가 대두의 유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곡물의 대일수출액 중 1889년까지 일본으로 수출된 곡물의 대부분이 대두였던 것과도 일치한다.

이 시기 방곡령 실시의 직접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인 흉년으로 곡물의 국외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곡령이 한 건 실시되었다.47) 이 방곡령은 쌀만 대상곡물로 하고 있어 대두의 수출은 막지 못했고.48) 쌀의 경우도 외국선박을 사용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의 외국 인의 곡물운수는 허용하고 개항장에서의 수출만 막았다.49) 그런데 이 전국방 곡령은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일본미가에 국내미가가 연동하여 등귀하는 것 을 막아 전반적으로 국내곡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얻었지만. 일본상인의 국 내에서의 곡물우송은 그대로 둠으로써 그들의 곡물매집을 오히려 효율적으 로 만들고 말았다. 일본영사의 보고에 의하면, "我商은 內地各道의 방곡으로 인한 米價低落을 틈타 쌀의 매집에 따르는 손실을 구실로 싼 가격으로 매입 할 수 있어 該슈의 영향은 전혀 일반의 예상과는 다른 의외의 호황"을 가져 왔다고 한다.50) 더구나 방곡으로 말미암아 조선상인은 곡물을 운반할 수 없 게 된 데 반해 일본상인의 반출은 구애를 받지 않아 "이 때문에 韓商의 업 무는 일시적으로는 다소간 일본 행상자의 수중에 옮겨진 상태가 되었다 … 이번 粮米수출 금지의 사건은 의외로 당지에서의 本邦商(일본상인-필자)의 상업을 內地로 확장하는 단서를 열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처지였 다.51) 그러므로 이 전국 방곡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기 어려웠고, 이 전국 방곡을 전후해 각 지방관의 방곡사건이 많았던 것은 전국 방곡으로는

<sup>47)《</sup>五都九道關草》2科, 癸巳 9월 10일 關五都九道,

<sup>48)</sup> 위의 책, 癸巳 10월 1일 關五都九道.

<sup>49)</sup> 위의 책, 癸巳 10월 28일 關水原.

<sup>50)《</sup>通商彙纂》 8 附錄, 명치 26년중 仁川港商況年報.

<sup>51) 《</sup>通商彙纂》 4, 명치 26년중 京城商況年報(1894. 4.6:京城).

사실상 각 지역에서의 일본상인의 곡물반출을 막을 수 없었던 탓이었다.52)

둘째, 방곡령의 발령 때마다 지방관들은 대개 곡물유출로 인한 경내 곡물시장의 곡가등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방곡시행의 주된 원인이었다. 지주나 부농·곡물상인이 곡물의 상품화를 주도하며 곡물을 매집하여 곡가가 높은 지역으로 무곡하고 부를 축적하던 것이나 이로 인한곡가등귀를 막으려던 지방관의 방곡은 조선 후기 이래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개항 후 자금력에서 조선의 곡물상인보다 한결 나은 일상이 유통과정에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방곡실시의 요구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대개의 각 음 수령의 방곡은 이에 속한다.

이 시기에는 민중이 직접 방곡령의 실시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사례는 사료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일본상인의 곡물유출로 말미암아 民情이 불안했던 일은 자주 있었다. 1886년 12월 경상도 防穀令 때 密陽管下의 守山에서는 곡물을 배에 싣고 지나던 일본상인 하시키(橋木彌三郎)는 관리의 수세에 항의하다가 군집한 민중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53) 1887년 11월에서 12월에 방곡령을 실시한 경상도관찰사 李鎬俊은 흉작으로 米價가 高騰하는 처지에 일본상인들이 각 지역에서 米豆를 質遷하는 바람에 곡가가 등귀하여 농민들은 種糧마저 준비할 수 없어 廢農의 지경이라고 했다.54) 또한 1889년 10월 경상도의 방곡 때 관찰사 趙秉式은 일본상인이 각 邑을 遍行하며 콩을 매집하여 각 邑・村闆의 장시에는 斗升도 나오지 않아 민정이 격앙된 상태라고 했다.55) 또 1893년 3월 경기도 長端府使는 방곡실시의 이유를 '民情窘碍'라고 표현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56)

<sup>52) 《</sup>統署日記》. 고종 30년 10월 16일 ; "防穀一事 只有禁穀之名 實無所防之益."

<sup>53) 《</sup>慶尙道關草》 1책, 丁亥 정월 23일 關嶺營. 《日案》, 고종 24년 1월 8일조.

<sup>54)《</sup>日本外交文書》21, 事項 9, 是서번호 103, 281零;"至昨秋沿海各邑 偏被歉荒 裔事纔畢 米直已高 窮蔀殘民 愈形遑汲 ··· 種糧罄乏之際 此日本商人 遍入內地 貿遷米豆 全省米穀 價值越添 農民之斗升種糧 無以辨備 勢將廢農"

<sup>55)《</sup>咸鏡道關草》2책,己丑 10월 17일 關咸營;《日本外交文書》22,事項 7,是付 世호 171,409쪽;"今年穑事 三災極備 一省失望 以本土之穀 雖我民有無相資 猶患不瞻 近見日人遍行各邑 其所貿太 尤有甚焉 各邑村閭場市之間 斗升不入 民 情嗷嗷 方秋時節 事勢如此 嚴冬窮春 尤無可言."

<sup>56)《</sup>日案》, 고종 30년 2월 18일조; "公稅收納 所重逈別 挽近民習不古 岡念先公

셋째, 수세를 목적으로 실시한 방곡령을 들 수 있다. 1887년 11월에서 12월에 걸친 경상도관찰사와 轉運使의 방곡령에 대하여 在釜山日本領事 무로타(室田義文)는

大邱監營과 轉運御史[現在 馬山浦에 滯在]의 명령으로 本年 경상도는 오곡의 수확이 나빠 인민의 식량이 결핍하다는 명분 아래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미곡을 운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그 실제 목적은 운반 때 稅錢을 징수하는 수단이다.57)

라고 곤도(近藤眞鋤) 대리공사에게 보고했다. 이 말은 상당히 진실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표 2〉의 발생사항에 적기된 과세는 모두 방곡령하에서 수세를 전제로 일본상인의 곡물반출을 허용한 경우이다.

1894년 충청도 恩津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상인의 반출곡물에 일체 수세하지 말라는 정부의 關文에 대해 수세는 公用을 위한 것이므로 재고해 주기를 당부했다.58) 그러나 1889년의 황해도와 함경도 방곡령사건 때 일본상인에게서의 수세로 말미암아 외교적 분규와 함께 거액을 배상하게 된 정부의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지 마라. 일을 일으켜 후회할 일을 하지 말 것"59)이라고 하여 일본상인에 대한 수세를 금할 수 밖에 없었다.

넷째, 곡물유출로 야기된 稅納穀物의 부족에도 방곡령 실시의 한 원인이 있었다. 앞서 본 1887년 11월 馬山浦에 滯在중이던 轉運使의 방곡령이나, 1893년 12월 전라도와 충청도 江鏡浦에서 곡물을 매집하던 일본상인 사와다 (澤田總太郎)와 오오노(大野五平)가 호남 전운사의 방곡령으로 운반 정지당하는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60) 전운사의 임무가 원래 세곡의 징수와 운송에 있

之義 欲售肥己之計 膽負米粮 繞路潛運 因之公納晉欠 民情窘碍 所以暫禁境內例運"

<sup>57) 《</sup>日本外交文書》21, 事項 10, 문서번호 120, 354쪽.

<sup>58)《</sup>忠清道關草》34, 甲午 2월 20일 恩津報;"即因關文 日本商所貿之穀物分稅 切勿舉論之意 謄關令飭矣 各穀各物之貿遷也 其所收稅 初無一分私囊者 舉皆爲 公用 各官各營所納 俱足莫緊之公納公用云 故茲以據案事."

<sup>59)</sup> 위와 같음.

<sup>60)《</sup>日案》, 고종 30년 11월 11일조.《全羅道關草》5책, 癸巳 11월 11일 關湖南轉運使.

었음을 상기하면 이 경우의 방곡령은 세곡의 확보를 위한 것이 틀림없다.61) 또 1893년 3월 일본상인 하야시(林市郞治)가 고용한 조선인 崔致雲이 경기도 長端・麻田・漣川 등지에서 콩 1,700여 包를 운반하다가 長端府使의 방곡령으로 말미암아 高浪補에서 禁輸당했을 때62) 장단부사는 경기도 관찰사에게 보낸 牒程에서 방곡의 실시이유를 공납의 부족으로 민정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했다.63)

다섯째,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권의 변화 때문에 서울의 곡물유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도 있었다. 1892년 12월 전라감사가 扶安 등 12개 읍에서 '外國人質穀之弊'를 막으라는 嚴飭에 따라 방곡령을 실시한 것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부산감리에 대한 일본영사의 항의로 전라감영에서는 정부에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도 황해·함경 양도의 방곡령사건을 상기하여 즉각 철폐하도록 했다.64) 원래 지방관의 지역적 방곡에 대하여 지방관이 방곡을 요청하는 몇 건의 사례를 제외하고 정부가 지역적인 방곡을 지시하는 예는 사료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방관이 요청하지도 않는데 정부가 직접 지방관에게 방곡을 지시했다. 그 이유는 앞서 본 대로 1890년에 비해 1892년에는 서울의 미가가 3배 정도로 등귀하여 서울의 곡물사정이 악화되자 서울의 곡물수급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전라도 곡물의 국외유출을 막음으로써 서울의 곡가를 안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곡물유통권을 보호하려고 방곡령의 실시를 전라감사에게 지시했던 것이다.

여섯째, 일본상인의 개항장 밖으로의 행상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상인의 기존상권이 위협받자 이들의 상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사례도 있었다. 1889년 10월의 함경도 방곡령 당시 威營의 關文에는 일본상인과 符同한조선인으로 말미암아 원산의 객주들이 조직한 元山商會所가 廢館할 지경에

<sup>《</sup>忠淸道關草》 3책, 癸巳 12월 13일 關恩津.

<sup>61)</sup> 轉運使에 대해서는 韓祐劤, 앞의 책, 241~262쪽 참조.

<sup>62) 《</sup>日案》, 고종 30년 1월 27일조.

<sup>《</sup>京畿道關草》4책, 癸巳 1월 29일 關畿營.

<sup>63) 《</sup>日案》, 고종 30년 2월 18일조.

<sup>64)《</sup>全羅道關草》4책, 壬辰 11월 23일 完營報.

이르렀다고 하며,65)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대두를 유출시키는 船主와 沙格에 대해서는 梟警 또는 刑配시킬 것이라고 했다.66) 그래서 일본대리공사 곤도는 본국에 보고하기를, "該監司는 원산상회소(朝鮮客主의 集合所)를 보호하기 위해 內地行商을 억제하고 該會所와 通聯하여 現今 각국 商民을 제지하고 我行商과 거래를 못하게 하므로 숙박과 운반에도 지장이 있다"고 했다.67) 이것은 개항장 객주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관의 조처이지만 이밖에 일본 상인의 행상으로 상권을 위협받는 일부 지방객주의 보호를 위한 것도 있었다고 믿어진다. 즉, 1890년 3월 吉州牧使가 城津의 客商主人 金成基에게 방곡의 傳令을 내린 것이나,68) 1891년 11월 전라도 泰仁에서 仁川居留商人 이리타(入田八郎)의 고용인 야스오카(安岡德平)와 金汝玉・李德益이 米豆를 수송하려 할 때 객주 辛玉年이 방곡이라 하여 압수한 사례는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69)

끝으로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원인이 있다. 1888년 1월 경상감사 李鎬俊이 1개월 전의 사전통보 후 방곡령을 실시했을 때 부산영사 무로다(室田義文)는 본국의 외무차관 아오키(靑木周藏)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當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 기타에 있어서도 한발과 수해 등의 징후는 조금도 없고 작년에는 諸道가 豊熟하여 미곡도 충분히 貯積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 중에 대구감사가 미곡의 出口를 금하여 내지미곡의 가격 하락시 모두 그것을 매집하고 解禁 후 가격 등귀 때 매각하여 이윤을 얻으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이 가장 신빙할 만하다"고 했다.70) 사실의 진위는 가릴 수 없지만 매집곡물이 대두의 경우라면 상당한 일리가 있다. 쌀은 흉작으로 일본보다 가격이 높은 형편이었으나 대두에 관한 한 비상한 풍작이어서 일본상인의 목적이 대부분 大豆수춤에 있

<sup>65) 《</sup>日案》, 고종 26년 11월 21일 附 咸營關文.

<sup>66) 《</sup>日案》, 고종 26년 11월 21일 附 巡甘結(10月 21日出 11月 初 2日到); 巡甘結 (11月 初 1日出 11日到).

<sup>67) 《</sup>日本外交文書》22, 事項 7, 文書番號 174, 415쪽. 그밖에 같은 책 23, 事項 8, 문서번호 87, 210쪽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sup>68) 《</sup>日案》, 고종 27년 3월 12일 附 吉州牧使 防穀傳令 庚寅 閏 2월 12일.

<sup>69) 《</sup>日案》, 고종 29년 2월 6 · 10일조.

<sup>70) 《</sup>日本外交文書》21, 事項9, 文書番號100, 277쪽.

#### 었으므로 가능성이 있다.71)

또 1894년 古阜民亂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고부군수 趙秉甲의 탐학사항 가운데 하나가 그 전년 가을 방곡을 실시하고 미곡을 매수한 후 미가가폭등할 때 방매하여 이익을 꾀한 것이었다고 한다.72) 곡가의 계절적·지역적차이를 이용한 지방관의 방곡행위는 사료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가 지역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移質하던 사례가 이미 개항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나,73) 이 시기에도 수령이나 이서층이 농민에게서 부세를 作錢할 때최고의 시가로 거두고 곡가가 쌀 때 質穀하는 일이 흔했던 것으로 미루어게이 시기 방곡 중에는 앞서 일본영사가 지적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본다. 뒤에서 보겠지만 지방관이 방곡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조세금납화가 시행되는 청일전쟁 후의 단계에서 더욱 증가한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의 방곡령은 개항 이후 전시기를 통하여 가장 많은 방곡령이 실시되며 그 실시의 원인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기 방곡령 실시의 원인 가운데 대다수가 일본상인의 개항장외 행상의 증가로 관할구역내 곡물이 심하게 유출됨으로써 곡가가 등귀하고 民情이 불안하여 지방관이 이를 막고자 실시한 것이었다. 개항 이전에도 계절적·지역적 가격차이를 이용해 지주나 부농·곡물상인들이 매점하거나 무곡함으로써 지역내 곡물시장의 보호가 절실했던 처지에 이 시기 일본상인의 곡물유출이 심화되면서 재래의 유통구조마저 붕괴되고 있는 이상, 지역적 소비곡물의 부족에 대한 민중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관의 방곡령은 필연의 추세였다. 일본이란 외압 앞에 무력할 수 밖에 없었던 정부가 방곡의 발생시마다 지방관들에게 철폐를 지시했지만, 境內・民情의 불안에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었던 지방관으로서는 이에 대한 유일한 대처방안은 방곡의 실시였던 것이다.

<sup>71)</sup> 위의 책, 문서번호 102·103 참조.

<sup>72)</sup> 巴溪生,〈全羅道古阜民擾日記〉(《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中),344\.

<sup>73)</sup> 茶山研究會譯註,《牧民心書》3, 1981, 13~14쪽.

<sup>74) 《</sup>備邊司謄錄》, 고종 22년 10월 25일.

### 3) 제3기(1895~1904)

청일전쟁 이후의 방곡령은 〈표 3〉에서 보듯이 전시기에 비해 발생건수가 줄어 18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었다.

방곡령의 발령자를 살펴 보면 각읍 수령이 대부분이며 관찰사의 것이 2건, 암행어사의 것이 2건, 정부가 1건이었다. 방곡령의 대상은 여전히 일본상인이 대부분이었지만 발령지역내의 농민이 대상인 사례도 적지 않다. 발령지역으로서는 충청도와 전라도의 곡창지대가 대부분이며 함경·경상·제주도에도 한 두 차례 나타난다. 발생연도별로 보면 1895년과 1896년의 청일전쟁직후를 제외하고 매년 두 세 건의 방곡령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처럼 방곡령의 발생이 줄어들고 있었던 근본원인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정치적 압력이 증대하면서 정부가 각 지방관의 방곡령을 인정할 수 없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1897년 11월 충청남도 恩津을 비롯한 각 지방의 방곡실시에 대해 정부는 충청남도 관찰사에게 이의 철폐를 지시하는 訓令에서

防穀一款은 정부에서 各公領事와 協商 호야 日期를 定限 호고 各道各郡에 訓知 한면 해지방관이 遵訓施行而已여널 胡爲乎徑行禁防 호야 致誤約章에 貽此外 詰고 ···75)

라고 했다. 즉, 방곡령은 정부가 각국 공·영사와 협의한 후 지방관에게 실시토록 하는 것이며 지방관의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01년 정부가 발령한 전국 방곡시에는 지방관의 방곡으로 일본상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지방관으로부터 문책징수할 것이라 하고 1889년의 함경도 방곡령사건을 상기시켰다.76)

1901년의 전국방곡 때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외교적 압력은 정부의

<sup>75) 《</sup>忠淸南北道來去案》 1책. 광무 원년 12월 7일 훈령.

<sup>76) 《</sup>위의 책》, 광무 5년 10월 7일 훈령 제2호; "若外國人이 因此 [地方官의 防穀 : [筆者] 有責言이면 該地方官에게 倍償을 斷當責徵홀지니 必有後悔之日이며 年前咸鏡道防穀이 釀成鉅案호영스니 前鑑不遠이라."

방곡령실시가 단지 개항장에서의 곡물유출만 저지할 뿐 실제로 방곡의 필요 성이 절실했던 곡물 유출지역내의 곡물시장보호는 불가능했음을 보여 준다.

1901년 7월 24일 외부대신 朴齊純이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에게 1개월 후의 방곡을 통보했을 때77) 일본공사는 전국의 農況을 들어 2개월간의 방곡실시 보류를 요청했다.78) 또한, 방곡대상 곡물도 조선측에서는 쌀을 포함한모든 곡물을 대상으로 삼았으나,79) 일본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80) 쌀만을대상으로 했던 것이다.81) 뿐만 아니라 일본공사는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제37관의 곡물수출 금지는 외국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일 뿐 국내 매

<sup>77) 《</sup>日案》, 광무 5년 7월 24일조.

<sup>78)</sup> 일본공사가 각 영사의 보고에 근거하여 주장한 농황은 다음과 같다. "平安南 道와 黃海道의 일부분은 강우가 적지만 旱魃이라 할 수 없고 필경 2~3分의 減作에 불과하다. 平安道의 대부분 지방은 이미 상당한 강우가 있어 풍작은 평상과 다름이 없고. 평양부근에 黍 · 粟의 발육이 다소 妨害가 있으나 역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江原・咸鏡 양 도의 풍작은 작년과 다를 바 없어 한 발의 해가 조금도 없다. 慶尙道 大邱以南 洛東江一帶의 지방에서는 근래 충분 한 강우가 있어 가장 먼저 파종이 끝나 한발이 전혀 없다. 全羅道는 全州부근 에 비가 부족하지만 豊凶은 지금 판명이 곤란하다. 기타는 강우가 適量하여 京畿・忠淸 양 도는 目下 降雨가 鮮少하나 한발의 災害가 있다함은 의문스럽 다"(《日案》, 광무 5년 7월 27일조), 그러나 일본영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에는 한경도・강원도 지방은 풍작이었고 전라도와 경상도에 다소의 降雨가 피해 가 덜하지만 전국적인 흉작이라고 한다. 특히 경기도지방은 평년 수확의 5할 에 불과한 극심한 흉작이었다(《通商彙纂》臨時增刊 7, 仁川 35년 貿易年報 (1903. 10. 22: 仁川);《涌商彙纂》臨時增刊 241. 釜山 34년 貿易年報(1902. 9. 15. 釜山) ; 같은 책. 元山 34년 貿易年報(1902, 10.7 : 元山)), 실제현장의 시찰 보고는 "丙子(1876) 이래 大旱"이라 할 정도의 흉작이었다고 한다. 경기・강원 · 충청도 지역을 유력한 일본인의 보고로는 충주지방 같은 곳은 평년작의 1 할도 거두지 못했고 대부분이 2~3할의 수확에 불과했다(《通商彙纂》211. 韓 國京畿道江原道及忠清道農商況視察報告書(1902.1.14:京城), 120~21零),

<sup>79)</sup> 조선측은〈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제37관을 들어 방곡령을 발령했는데, 37 관의 '禁粮米出口'의 粮米를 《周禮》를 인용하여 모든 곡물이라 했다(《日案》광 무 5년 7월 24일, 8월 10일;《海關案》, 광무 5년 7월 24일, 7월 26일조).

<sup>80) 1876</sup>년의 〈通商章程〉第6則, 즉 "嗣後於朝鮮國港口住留日本人民 粮米及雜穀得輸出入"에는 粮米와 잡곡으로 구별했으므로 37관의 粮米는 쌀에 한한다고 일본공사는 주장했다(《日案》, 광무 5년 7월 27일, 8월 10일, 8월 11일조;《外部來文》5책, 광무 5년 8월 3일).

<sup>81) 《</sup>日案》, 광무 5년 8월 16일, 8월 17일, 10월 1일조. 《海關案》, 광무 5년 8월 17일조.

매로 인한 지역간의 곡물이동과는 상관이 없다 하고 지방관의 방곡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즉 "만약 誤認하여 이른바 방곡이란 것을 一般 視하여 이것이 매매・운반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귀국상민은 물론 제국상인(일본상인 - 필자)의 洣惑이 심해서 商業停止의 결과가 생긴다. 오히려 매매・운반을 막는 것은 사실 粮米의 결핍을 고한 지방이 그를 보충할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라며 지방관의 방곡을 금할 것을 요구했다.82) 8월의 전국 적 방곡령실시에 앞서 지방관의 방곡은 한발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특히 금강유역의 각 군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일본공사의 국내 방곡 허용요구는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것이었다.83)

⟨표 3⟩ 1895~1904年의 防穀令發生事例

번 호	발생연월	발령자 및 집행자	발령지역	내 용	비 교(出典)
1	1897. ?~5	관찰사	함경북도	일본공사 항의로 철폐	《日案》, 건양 2년 5월 14·15일
2	1897. 4~6	전남관찰사 암행어사	寶城 및 각 읍	위와 같음	《日案》, 건양 2년 6월 3·4일
3	1897. 11~2	암행어사 (발령) 각 읍 수령(집행)	<ul><li>会남 恩津・</li><li>徳山・九萬浦</li><li>・禮山・牙山</li><li>・屯浦</li></ul>	위와 같음	《日案》, 광무원년 12월 4·7일
4	1898. 1. 12	•	경상도 固城	地方隊兵丁康津上納 船 勒奪	《독립신문》, 광무 2년 3월 8일
5	1898 초	제주목사	제주도	방곡이용 부정으로 농민봉기	《濟州道防穀事》
6	1898.6~12	목사	제주도	中山庄吉대두 매집, 운반정지	《全羅南北來案》, 광무 2년 10월 9일
7	1898. 5.	군수	충북 鎭州	•	《독립신문》, 광무 2년 6월 4일
8	1898. ?~12	군수	전남 흥덕	英學黨사건	《重犯供草》9
9	1899. 11	군수	충남북각읍	·	《독립신문》, 광무 3년 11월 30일

<sup>82) 《</sup>日案》, 광무 5년 7월 27일조.

<sup>83) 《</sup>通商彙纂》 臨時增刊 231, 群山 34년 貿易ノ年報(1902. 6.27: 群山), 66쪽.

#### 214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번 호	발생연월	발령자 및 집행자	발령지역	내 용	비 교(出典)
10	1900	지방관	제주		《皇城新聞》, 광무 4월 112월 7일.
12	1901	군수	대구	수출곡물 매집금지	《通商彙纂》196
12	1901. 7	군수	은진	日商米豆 1,500~1,600석 차압	《日案》, 광무 5년 7월 24일·10월 30일
10	1901.8~	정부(발령)	전국	1개월 전 통보 쌀에 한함	《日案》, 광무 5년 7월 24일, 10월 30일
13	11. 9.	함경도 각 군수	함경도 각 지역	쌀 이외 곡물 방곡으로 일본항의	《日案》, 광무 5년 10월 30일
14	1902. 4.	각 군수	전라도 각 읍	상납금으로 무곡	《續陰晴史》하
15	1903. 3.	진위대 군수	江界 후창군	강계진위대 후창군수 방곡	《各府部來牒》, 광무 7년 3월 28일
16	1904. 1		전라도 寶城·樂安	거제인 朴汝辰 곡물압류	《各郡狀題》上, 甲辰 1月 10日
17	1904. 3	군수	전남 咸平	日商의 항의로 배상	《續陰晴史》下
18	1904. 6	군수	平康	독일인광산 所運米 執穀, 世昌洋行에 배상	《内部案》, 광무 8년 6월 1일・7월 23일

#### 그래서 정부는 충남북의 관찰사에게

此次防穀이 非謂內地販運이라 不過是暫禁出口니 出口者と 即由通商港口 運 出外國者라 此港口에셔 彼港口로 運出宮도 自不可禁이어눌 況內地販運은 水陸 間에 何以沮遏이리오 각 지방관이 不鮮約旨で야 但稱防穀で고 境內運出을 尚欲 禁阻で니 殊甚慨歎이라.84)

라는 훈령으로 지역적 방곡을 금했다. 그러나 개항장에서의 곡물유출 금지만 으로는 지방에서의 일본상인의 곡물매집을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사 실, 구매곡물로 생계를 잇던 도시의 빈민이나 농촌의 임노동자층의 처지에서 가장 절실했던 문제는 지역내 곡물가격의 안정이었지 단순한 개항장에서의

<sup>84) 《</sup>忠淸南北道來去案》 1책, 광무 5년 10월 7일 훈령 제 2호.

곡물유출 저지가 아니었다. 1901년 대구군수가 한발의 영향으로 미가가 등귀하자 수출을 위한 매점을 금지하는 방곡을 실시했을 때 일본인도 '빈민구조의 一策'이라고 수긍하고 있었다.85)

그러나 정부가 일본측의 압력으로 지역적 방곡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방관의 지역적 방곡실시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곡물유출지역 에서의 빈민층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했다. 1898년 2월 15일 평양민 2천여 명은 평양의 '細民'이 기아에 처해 있는데 일본상인에 의해 미곡이 적 출된다며 평양군수에게 방곡령의 실시를 요구하는 하편. 일본상인의 미곡을 적재한 선박의 출범을 막았다. 그러나 평양군수나 평안도 관찰사는 방곡령실 시를 거부했다.86) 같은 해 5월 20일 '平壤細民' 80~90명은 곡가의 앙등에 반 발하여 재차 관찰사에게 방곡령의 실시를 요구했다.87) 이러한 평양민의 요구 에도 불구하고 평안도관찰사는 방곡령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중앙정 부의 지역적 방곡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구나 지역내 곡물의 유출이 심하여 지방관이 정부에 방곡을 요청할 때에도 정부는 들어주지 않았다. 즉. 1897년 12월 황해도관찰사 金嘉鎭이 외부에 낸 보고서에는 흉작인데다가 내외국선박이 각 포구에 몰려와 高價로 곡물을 매 집해 가는 것이 몇 천 석이나 되어서 곡가가 등귀하고 장시에 곡물이 나오지 않아 境內 백성이 걸식하는 참상을 보고하면서 방곡령의 실시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실시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88)

1898년 제주도 방곡령사건 때에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제주도 방곡사건은 이 시기 방곡령실시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일어

<sup>85)《</sup>通商彙纂》196, 韓國慶尙北道大邱附近農況(1902. 7.16:釜山), 79~80쪽.

<sup>86) 《</sup>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국사편찬위원회, 1995), 明治 31년 各領事館來信, 平 壤亂民蜂起報告, 24~25쪽.

<sup>87)</sup> 같은 자료, 平壤細民蜂起/件. 이 경우 '細民'은 곡물을 구입하여 생계를 잇던 도시의 빈민층을 가리킨다.

<sup>88)《</sup>黃海道來案》1冊, 光武 元年 12월 1일 報告, " … 又況內外國賈船商舶이 湊集 各浦 で 無論各穀 で 早價買之 で 日日出浦者 ] 不知其幾千石乎 中 由是而 非徒穀價之 刁騰 이라 各郡場市에 每為絶穀 で 男女布袋 ア 之東之西에 乞糧不 得 で 號泣道路에 廳間 の 極惨 이다 と 若不及 今通變 이 면 明春 餓殍之相望 은 勢 所 必至 이 온 바 … 以此 意 로 知照各國 で 와 質穀 一款 은 限 明年 新麥成熟 で ゆ 為嚴防 之 地 望 客"

난 대표적 사례이므로 좀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제주의 土穀은 出陸하지 않는 것이 常規였는데, 1898년 초엽 제주목사 李秉輝는 표면상으로 방곡을 엄히 시행하면서도 裏面에서는 '受賂暗放'하여 民擾가 발생했다.89) 즉 이병휘는 방곡을 시행하면서도 뇌물을 받고서 "牟利輩가 不知遠慮 학고 但思己欲학야 豆太를 潛載出陸학と 弊"를 묵인했던 것이다.90) 이것이구실이 되어 같은 해 3월 1일 島民 수만 명이 房甲(일명 鎭社, 星七)을 중심으로 南學黨이라 칭하고 관아를 습격하여 제주목사 이병휘와 大靜郡守 蔡龜錫에게 중상을 입혔다.91) 그리하여 朴用元이 察理使兼濟州牧使로 파견되어 민원에 따라 大豆의 유출을 금지함으로써 민심이 수습되었다.92)

그 뒤 부산거류 일본상인 나카야마(中山庄吉)가 같은 해 3월 제주도에 행상하여 城山浦에서 周文喜 등 조선상인 수 명과 대두매매의 계약을 맺고 총계 1,400俵에 대한 前渡金으로 1,500관문을 9명의 상인에게 지급하고 6월에太豆를 受授할 때 박용원은 방곡을 실시했다.93) 이에 나카야마는 駐釜山日本警官 시라이시(白石由太郎)와 함께 와서 항의했으나 제주목사 박용원은 허가하지 않고,94) 정부에 대해서도 민심수습의 명목으로 불허를 요청했다.95) 그러나 정부는 일본공사가 항의한다 하여 철폐를 지시했으며 박용원이 재차나카야마의 화물은 出給하나 방곡은 계속하게 해 줄 것을 요망했지만,96) 정부는 방곡금지의 지령을 내렸다.97) 이에 따라 12월 7일 박용원은 防穀撤鎖의전령을 관하 三郡과 각 里坊曲에 내렸다.98) 그러나 이듬해 나카야마는 실제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배상을 요구했다가 박용원의 항의에 賠償申請

<sup>89)</sup> 奎 26061 〈濟州島防穀事〉.

<sup>90) 《</sup>全羅南北來案》 1책. 광무 2년 8월 15일 보고서 제1호.

<sup>91)</sup> 金允植、《續陰晴史》上、456~68쪽、

<sup>92)〈</sup>濟州島防穀事〉。

<sup>93) 《</sup>全羅南北來案》 1책, 광무 2년 10월 9일 보고서 제2호; 奎 20711 《濟州太穀事報告案》, 外部報告書 제2호.

<sup>94) 《</sup>全羅南北來案》 1책, 광무 2년 8월 15일 보고서 제1호;《濟州太穀事報告案》, 外部報告書 제1호.

<sup>95)《</sup>全羅南北來案》 1책, 광무 2년 10월 6일 指令.

<sup>96)</sup> 위의 책, 광무 2년 10월 9일 보고서 제2호.

<sup>97)</sup> 위의 책, 광무 2년 11월 25일 지령 4호

<sup>98)</sup> 위의 책, 광무 2년 12월 7일 보고서 4호; 《濟州太穀事報告案》, 傳令三郡各浦口.

書를 정정하고<sup>99)</sup> 일본공사를 통해 다시 배상을 요청했다.<sup>100)</sup> 박용원은 손해 배상액과 벌금을 물게 되자 나카야마에게 대두를 방매하던 상인들에게 배상하라고 강요했다.<sup>101)</sup>

이상의 제주도 방곡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병 회의 경우와 같이 지방관이 방곡을 이용하여 이익을 꾀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방곡령의 실시를 요구하는 민중의 봉기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지방관은 방곡령을 실시했지만, 일본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정부는 민중봉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철폐를 지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방관이 민중의 요구에 의해 방곡을 실시하더라도 배상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관이 그 책임을 져야 했다. 따라서 지방관이 일본상인을 대상으로 방곡을 실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1900년 제주의 곡물상인 金根煥 등이 제주도지역에서 곡물을 매집하고 木浦와 智島 등으로 운반하려고 했을때 방곡의 실시로 출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外國人은 無難貿米하야 出入無常하야 初無禁阻하고 唯獨矣等穀包만 末由遷動하온즉 …"이라고 農部에호소한 내용은 방곡의 대상에서 일본상인이 제외되고 있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102)

그 때문에 전시기의 방곡령이 대부분 일본상인이 대상이었던 반면, 이 시기에는 일본상인이 그 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표에서 보듯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대량의 곡물유출은 민중의 반발을 사고 있어 초기의병의 항쟁 때도 방곡령실시를 요구한 일이 있으며,103) 활빈당도 그들의 강령에서 방곡령의 실시를 주장했던 것이다.104) 또 前秘書丞 洪鍾宇는 1898년 4월 8일 경희궁 인화문 앞에서 인민 천여 명과 함께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의 제1항에

<sup>99) 《</sup>務安報牒》 2책, 광무 3년 8월 8일 보고 제43호, 8월 29일 보고 제47호.

<sup>100) 《</sup>日案》, 광무 3년 12월 1일조.

<sup>101) 《</sup>독립신문》, 광무 3년 8월 10일 잡보.

<sup>102) 《</sup>皇城新聞》, 광무 4년 12월 7일,

<sup>103)</sup> 糟谷憲一,〈初期義兵運動について〉(《朝鮮史硏究會論文集》14, 1977), 34쪽.

<sup>104)</sup> 信夫淳平,《韓半島》(東京堂書店, 1901), 76~80\, 姜在彦,《近代朝鮮の變革思想》(日本評論社, 1973), 87~94\,

서 곡물의 국외유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의 실시를 요청했다.<sup>105)</sup> 이 해 10월에도 保民會員 權明浩 등이 內部에 고소하여 "近因交隣通商하야 米穀이 輸出 他邦하오니 所以로 豊年之穀이 貴於凶年하와 穀價가 高登하온즉 … 嗷嗷抑鬱한 民情을 特念하시와 米穀을 他邦으로 輸出치 勿하게 永爲邦禁하와 使此民으로 俾保生命하심을 望喜"이라 했지만 그 대답은 역시 "遏糴은 邦禁也라 決不可認許事"였다.<sup>106)</sup>

중앙정부가 이처럼 방곡령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관 임의의 방곡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境內 곡물유출로 인한 민정의 불안 때문에 지방관이나 암행어사에 의하여 지역적 곡물시장의 보호를 위한 방곡령이 몇 차례 나타난다. 1897년 4월 전라남도 지역에 방곡령을 발령한 암행어사는 그 이유를 포구에서 적출되는 미곡이 하루에도 수천석에 이르러민정이 불안하기 때문이라 했다.107) 앞서 본 제주도민의 봉기 때 박용원이방곡을 실시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방곡은 행정의 강제력으로 유통을 차단하는 행위여서 방곡하는 지역에서는 일단 곡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정부의 방곡금지정책으로 방곡을 시행하지 못한 이웃한 지역에서의곡가를 등귀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1898년 진천군의 방곡과 죽산군의 경우가 그러했다.108)

<sup>105) 《</sup>독립신문》, 광무 2년 4월 9일 잡보.

그런데 홍종우의 상소에 대해 《독립신문》의 논설에서는 이를 반박하여, 방곡을 하면 通商港口로 곡식은 못나가지만 內地各浦口로 나가는 것은 더 심할 터이니 그렇게 되면 탁지부의 海關稅만 잃고 곡식은 곡식대로 나간다고 했다 (《독립신문》, 광무 2년 4월 14일 론설). 褓負商의 두령으로서 萬民共同會를 무력으로 해산시킨 홍종우와 독립협회와의 대립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경우 독립협회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다. 독립협회가 주장하는 내지포구로 곡물이 나갈 것이라 함은 潛賣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방곡령실시가 아니라도얼마든지 가능한 사실이었다. 독립협회의 자유무역적 성향 자체가 일종의 보호무역인 방곡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선언문에서도 방곡령실시의 요구사항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공동회의 구성인원 가운데 곡물을 구입하여 살던 도시빈민이나 농촌의 임노동계층의 참여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독립선문》, 광무 2년 12월 12일 참조).

<sup>106) 《</sup>皇城新聞》, 광무 2년 10월 21일조.

<sup>107)《</sup>日案》, 建陽 2년 6월 3일조, "湖南難是穀鄉 而一自海開埔之後 每日米船之載外 不下數千石 以有限之穀 入無窮之海 億萬生靈莫不嗷嗷 不得不嚴防."

그러나 이 시기 방곡령의 실시 원인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색의 하나는 지방관이 상납금의 전용으로써 곡물을 매집, 무곡하기 위하여 방곡령을 실시했던 점이다. 1898년 12월 전남 興德郡에서 발생한 英學黨事件은 흥덕군수 林鏞炫의 탐학에서 비롯되었다. 군수의 탐학사항 중 하나가 군내에서 방곡을 실시하고는 공전을 가지고 다섯 곳에서 歇價로 貿米하는 데 매석에 시가로 15냥인 것을 13냥 5전에 사들여 차액을 착복한 것이었다.109) 또 1902년 4월에는 전라도의 각 읍 수령들이 방곡을 실시하고 공전으로 읍의 곡식을 減價로 勒買해 東菜로 운반하고 매매함으로써 몇 갑절의 이익을 남겨 민간의 곡물매매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110)

이 경우의 방곡은 지방관이 상인과 결탁해서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1897년 《독립신문》의 "무곡하는 사람들이 수령들을 끼고 방곡을 하야 곡식을 장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고로 그 고을 안에서는 곡식금이 싼지라 무곡장사와 수령들이 그 곡식을 싸게 사서 각 포구로 내보내어 중가로 밧고파니 …"1111)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방곡을 貿穀商人과 수령이 지역간 가격차이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농민전쟁 단계에서 趙秉甲이 전라도 고부에서 곡물의 수확기에 방곡을 실시해 계절적 곡가차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미 살펴 본 대로지만 이시기에 들어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租稅金納의 실시 이후 조세납입 이전까지 지방관이 상납금을 전용할 수 있었던 데다가 대일수출로 인한 시장확대가 계절적 차이만이 아니라 지역적 가격차이를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이 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韓國誌》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나라의 상업유통에 관여하는 관리들은 방곡령 때 자기들의 대리인을 통해서 농민들의 잉여농산물을 싼값으로 매점하여 자기들의 창고에 저장했다.<sup>112)</sup>

<sup>108) 《</sup>독립신문》, 광무 2년 6월 4일조.

<sup>109)</sup> 奎 17282《重犯供草》9, 興德郡亂民取招查案;《韓國學報》35(1984, 여름), 244~254等 所收. "防穀而歇價貿米段은 貿米於五處 而嚴截防穀 租每石時價十五兩者 以十三兩五錢 定價貿置 民多呼冤 至於此境 伏願明查處之教味."

<sup>110)</sup> 金允植, 앞의 책(下), 12쪽.

<sup>111) 《</sup>독립신문》, 광무 원년 12월 2일 논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전시기에 비해 일본상인을 대상으로 지역적 곡물시장의 보호를 위한 방곡령실시가 줄어든 대신 지방관들이 상납금 등의 공전을 전용하여 경내 농민을 대상으로 방곡을 실시하고 싼값으로 곡물을 사들여 무곡하고 私腹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사실상의 식민지화와 함께 이러한 방곡령마저 소멸되고말았다.

필자가 사료에서 찾아낸 바로는 일본상인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방곡령의 실시는 1904년 3월 전라남도 함평군수가 실시한 것이었는데, 이 사례에서 우리는 러일전쟁 이후 방곡령이 발생되지 못했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즉함평군의 방곡이 엄해서 同鄉之民도 식량을 못구해 怨聲이 잦던 차에 일본인 5명이 政堂에 돌입하여 군수를 구타하고 조약위반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군수는 우선 2천 냥을 주었고 또 일본인이 곡물을 모두 매입해가는 바람에 지역민은 식량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113) 러일전쟁도중의 일개 일본상인의 횡포가 이러했으니 이후 방곡령의 발생은 기대조차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국가기구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는 단계에서 방곡령의소멸은 당연한 결과였다.

원래 防穀은 행정의 강제력으로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전근대적 경제정책이었다. 상품화가 고도로 진전되면 소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중앙정부가 외국미의 수입이나 轉運使・檢稅官 등의 무곡으로 서울지역의 곡가를 조절하는 데 반해, 환곡이나 진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의 지방관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곡가안정의 방법은 방곡밖에 없었다. 따라서 개항 이후 100건 이상 발생했던 방곡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곡물가격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관이 조선 후기 이래관습화된 정책으로 시행했던 것이었고 실시된 지역내에서는 나름대로 곡가안정이라는 기능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종래의 계절적・지역적 가격차이를 이용해 무곡하던 조선인 지주・부농이나 곡물상인에서 새로이 곡물유통과정에 침투하여 수출곡물의 유통을 장악하던 일본상인으로 옮겨가고

<sup>112)</sup> 러시아대장성 편,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유풍출판사, 1983), 215쪽.

<sup>113)</sup> 金允植, 앞의 책(下), 85~86쪽.

있었다. 결국 개항 이후의 방곡령은 중앙정부가 외압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제의 경제적 침탈과 직접 대면하게 된 지역적 곡물시장권의 대항이었던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河元鎬〉

## 4. 사회신분제의 동요

조선시대 신분구조는 良・賤과 班・常의 二元的 對立構造를 바탕으로 양반・상민・노비의 3대 주요 신분이 신분구조의 기축을 이루면서, 중인・서얼・향리 등 반・상의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신분층 성격의 신분들과 백정・재인 등 양・천의 사이에 위치하는 身良役賤 성격의 신분들이 폭넓게 존재하는 다소 복잡한 내부구성을 지니고 있었다. 크게 볼 때 이러한 신분구성은 15・16세기에 대개 형성・확립된 후 17세기의 조정기를 거쳐 18세기 이후 동요와 해체의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분제 폐지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주요 역사적 지향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조선 후기 동안 진행되어 온 역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신분제가 이 시기까지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또한 동학농민전쟁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의 신분제의 상태를 포함하는 '신분의 역사'에 대한 일정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이러한 관점에서 19세기 후반 신분제의 동태에 관하여 조선 후기 전체를 시야에 넣으면서 각 신분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sup>1)</sup> 다만 개항으로부터 농민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신분제 내지 신분구조의 구체 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전 쟁의 발상지인 古阜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지역 土族들의 官界와의 오랜 단 절로 인한 殘班化 현상 정도를 추정의 수준에서 거론하는 데 그치며, 여타 신 분층의 동향이나 고부군 전체의 신분구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 고 있다. 李義權, 〈19世紀 後半 古阜의 社會組織構造〉(《全羅文化論叢》7, 1994).

<sup>2)</sup>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에 관한 각 신분별 상세한 설명은 《한국사》 34(국 사편찬위원회, 1995) 참조.

### 1) 노비제의 변화

### (1) 제도적 변화

제도적 측면에서 19세기 노비제의 상태에 영향을 끼친 주요 변화는 內寺 奴婢 해방, 免賤·從良의 기회 확대, 노비신분세습법의 변경과 폐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순조 원년(1801) 정월에 단행된 內寺奴婢 해방은 16세기 이래 진행되어 온 공노비제도의 동요 현상을 일정하게 반영한 것이지만, 이는 1894년 노비제 폐지로 마무리되는 19세기 노비제 해체의 역사의 단초를 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이 때 內奴婢 36,974명과 寺奴婢(各司奴婢) 29,093명 등 도합 66,067명의 내시노비가 해방되었다.3) 내시노비가 공노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조선 후기의 실정을 감안하면 내시노비 혁파는 사실상 공노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4) 이 조치에서 제외된 各官奴婢도 지방 관아의 供役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가 크게 줄어 들고 있었다.5) 내시노비 해방의 결과 19세기 노비제는 내부 구성의 면에서 이전 시기의 노비제와는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면서 노비의 면천·종량 기회는 조선 전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면천·종량의 기회는 혈통(대체로 父系)에 따른 귀속적 성격의 從良路와 납속이나 공로 등에 의한 성취적 성격의 종량로로 대별된다. 귀속적 성격의 종량로는 補充隊를 통한 종량이 대표적이다. 보충대를 통한 천첩자녀의

<sup>3)《</sup>純祖實錄》2, 순조 원년 정월 을사. 內寺奴婢의 해방은 奴婢案을 소각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內奴婢 가운데 일부 누락되는 사례는 있었다(《고종 실록》, 고종 원년 7월 30일). 한편 寺奴婢의 경우 이 조치 이후에도 籍沒 등에 의해 발생하는 형벌노비 중 京中 거주자는 刑曹에 소속시켜 사역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승정원일기》, 순조 원년 9월 20일) 제도적인 면에서 완벽한 폐지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sup>4)</sup> 全炯澤, 《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一潮閣, 1989), 228\.

<sup>5)</sup> 全炯澤, 위의 책, 255쪽.

종량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크게 문란해져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특히 去官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반드시 거관하지 않아도 손쉽게 종량될 수 있었다.6) 또한 같은 범주지만 더 쉽게 종량될 수 있었던 왕실의 천첩자녀의 경우에도 조선 후기에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 《경국대전》에서 일부 宗親(總職以上親)과 外戚(小功以上親)의 천첩자녀에게 贖身없이 종량하도록 하였던 것을, 《속대전》에서는 先王의 방계 후손은 6대 이상(無贖身) 또는 7대에서 9대까지(代口贖身) 외손은 6대까지(代口贖身) 확대하였고, 다시 《대전통편》에서는 嫡孫의 경우 限代를 철폐하고 庶孫은 9대까지 그리고 외손은 7대까지 공사천을 막론하고 대구속신토록 확대하였다. 한편 사족 집안의 경우에도 《속대전》에서 承蔭者가 공천을 취하여 낳은 천첩자녀 또는 士族朝官의 공천 소생 承重者에게 대구속신의 길을 열어주었다.7)

이와 같이 귀속적 성격의 종량로를 통한 면천·종량의 기회가 조선 후기에 들어 확대되고 있었던 것과 함께 世代內 사회이동을 가능케 하는 성취적성격의 종량로들도 조선 전기의 엄격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크게 열린 군공 또는 납속에 의한 면천·종량의 길이 그대표적 유형이다. 그 외에 양인 모칭자 중 과거급제자에 관한 대구속신,8) 親騎衛·別武士 등 특수 군종에 입속한 노비 중 武才가 뛰어난 자에 대한 면천,9) 捕盜・陳告 등 특별한 공로를 세운 노비에 대한 포상 차원의 면천 등이 허용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납속면천은 경제적 부를 축적한 노비들에게신분 변동의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조선 후기 동안 진행된 奴婢戶 격감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0)

현종 10년(1669)에 처음 시행되어 영조 7년(1731)에 확정된 '奴良妻所生從母 役法'은 조선 후기 노비제의 심대한 변화를 이끈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

<sup>6)</sup> 平木實,《朝鮮後期奴婢制研究》(知識産業社, 1982), 184~185쪽 참조.

<sup>7)</sup> 여기서 承蔭者는 '東西班三品正職之子與孫'과 '曾經東兵曹司諫院司憲府弘文館 都摠府宣傳官之子'에 해당된다. 二品以上의 有子女賤妾은《經國大典》에 贖身 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sup>8)</sup> 平木實. 위의 책. 179쪽.

<sup>9)</sup> 全炯澤, 위의 책, 221쪽.

<sup>10)</sup> 全炯澤、〈한국 노비의 존재양태〉(《奴婢・奴隷・農奴-比較史的 檢討-》, 역사 학회 특별심포지움, 1996. 8. 31.), 10~11쪽.

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래 15세기 중엽에 확립된 조선의 노비신분세습법인 從母/從父法은 고려의 '一賤則賤'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노비소유의 안정과 확대에 이해관심이 있는 노비소유자들에게는 크게 유리한 성격의 것이었지만, 거꾸로 노비의 입장에서는 世代間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有入無出'의 신분적 유폐 현상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었다. 종모/종부법은良賤相婚의 경우에도 그 소생을 모두 노비로 만드는 법이므로 노비소유자들은 특히 奴의 경우 良女와 혼인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노비소유의 확대를 획책하였다.11) 실제로 16・17세기 울산 지역의 경우 노비와 양인・양녀 간의혼인이 널리 행해졌고, 이를 통해 양인 인구가 침식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12) 이 법에 의해 노비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것과는 길항 관계에 있는 양인 인구의 위축 현상 곧 良少賤多 현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노비신분세습법은 노와 양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종래 '從父役'의 규정을 받아 노비로 되던 것을 막고 이들에게도 '從母役'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왕의 노비신분세습법에 일대 변형을 가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 법에 의해 종모/종부법에서 '종부'를 제거함으로써 조선의 노비신분세습법은 從母法으로서의 완전한 의미를 비로소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노와 양녀 간의 혼인을 통한 노비 인구의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게되었고 노비의 세대간 신분이동을 차단했던 엄격함도 완화되었다.

'노양처소생'에 대한 從母從良의 시행은 특히 조선 후기 동안 진행된 奴婢 戶口 감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노비 감소에 미친 영 향은 예컨대 영조 37년(1761) 12월 강원도 관찰사 金孝大가 다음과 같이 말 한 것을 보면 그러한 사정을 미루어 알 수 있다.

辛亥(영조 7년) 이후 奴良妻所生을 어미의 役에 따라 양인이 되도록 허락한 후 各驛과 各邑의 노비가 날로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모양을 이룰 수 없다.<sup>[3]</sup>

<sup>11)</sup> 平木實, 위의 책, 143쪽.

<sup>12)</sup> 韓榮國、〈朝鮮中葉의 奴婢結婚樣態〉(《歷史學報》75 · 76 · 77, 1977 · 1978).

<sup>13)</sup> 全炯澤, 앞의 책, 252쪽 참조.

사노비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茶山 丁若鏞(1762~1836)이 종모법 시행이후 19세기 사족층의 보유 노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에서 대개 짐작할 수 있다.

이로부터 상층은 약해지고 하층은 강해졌으며 기강이 해이해지고 民志가 흩어져 제어되지 않는다. 드러나서 뚜렷해진 것으로써 말해 본다면, 萬曆 壬辰之難 때 남쪽 지방에서 倡義한 집은 모두 家僮 數百으로 卒伍를 편성할 수 있었는데 嘉慶 壬申之難 때는 故家名族이 서로 일을 의론하였으나 한 집에 家僮 하나 얻기도 어려웠다. 이 한 가지 일을 두고 보더라도 大勢가 완전히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의지하는 바는 士族인데 無權失勢함이 이와 같으니, 만약위급한 때에 小民들이 모여들어 亂을 일으킨다면 누가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로써 보건대 노비의 법은 좋게 변한 것이 아니다.14)

즉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들이 家奴 수백 명을 부대원으로 동원할 수 있었지만, 종모법 시행 이후 노비소유가 위축되어 임신년(1812) 洪景來의 亂 때는 '一家一僮'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대세가 '全變'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변형을 경험한 노비신분세습법은 고종 23년(1886)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되었다. 내시노비 해방의 뜻을 이어받아 노비의 世役을 금한다는 취지를 담은 傳敎에 의거하여 형조에서 마련한 節目에 의해 노비의 신분세습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15)

### (2) 노비 호구의 변화

노비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호와 인구의 양면에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호적 분석을 통해 알려진 노비 호구의 구성비를 종람할 수 있도록 모아 보면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16)

<sup>14)</sup> 丁若鏞,《牧民心書》禮典 辨等.

<sup>15)《</sup>고종실록》23, 고종 23년 1월 2일; 3월 11일. 이 절목에는 救活奴婢・自賣奴婢・世傳奴婢의 世役 금지, 救活奴婢・自賣奴婢 소생의 매매 금지, 負債에 의한 壓良爲賤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sup>16)</sup> 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문헌은 池承鍾,〈朝鮮後期社會와 身分制의 動搖〉(《韓國의 社會와 文化》10, 1989), 30쪽 참조. 井上和枝,〈李朝後期慶尚道丹城縣の社會變動-學習院大學藏丹城縣戶籍大帳研究-〉(《學習院史學》23, 1985)의 분석결과를 추가함.

〈丑 1〉 朝鮮後期 奴婢戶口構成比의 變化:概觀

(다위:%)

年度   戸   人口   地域   研究者   備 考   例							(단위 : %)
2   1606		年 度	戶	人口	地 域	研 究 者	備考
3   1609   47.0   前山   韓榮國   東・西・南・北面	1	1606		41.66	山陰	盧 鎭 英	賤民
(4) 1630   34.53   山陰   盧 鎮 英   以民   北部   1678   10.8   2.8	2	1606	18.18	64.37		韓基範	賤民
(5) 1663   53.5	3	1609		47.0	蔚 山	韓榮國	東・西・南・北面
(5) 1663   53.5	4	1630		34.53		盧 鎭 英	賤民
(6) 1672 10.8 56.4 月城 金 氷 謨 7 俊 九		1663	53.5		서 울	Wagner	北部
1678	6	1672	10.8				賤民
1678				56.4			
⑨ 1684 46.0       43.1       京 印 方 博         ⑩ 1690 37.1       43.1       大 邱 四 方 博         ⑪ 1711 8.2       彦陽 朴 容 淑         ⑫ 1717 27.6       45.0       丹 城 本 俊 九         ⑭ 1720 44.1       丹 城 金 泳 謨         ⑭ 1729 13.93 31.03       蔚 山 鄭 奭 鍾 農所面         ⑭ 1729 26.5       岁 城 金 泳 漠         ⑭ 1732 43.0       丹 城 金 泳 漠         ⑭ 1738 26.6       32.4       大 邱 四 方 博         ⑭ 1738 20.6       尚 州 金 容 燮         ⑭ 1759 17.6       房 山 Somerville         ⑫ 1759 17.6       房 山 Somerville         ⑫ 1765 7.73       房 山 Somerville         ⑫ 1765 7.73       房 山 Somerville         ⑫ 1783 5.0       15.9       大 邱 四 方 博         ⑫ 1786 8.8       25.9       丹 城 金 泳 漠         ⑫ 1786 8.8       25.9       丹 城 全 後 九         ⑫ 1786 7.7       丹 城 全 後 九         ⑱ 1798 1.4       彦 陽 朴 容 淑         ⑪ 1798 1.4       彦 陽 朴 容 淑         ⑪ 1804 0.54       房 山 鄭 奭 鍾         ⑫ 1804 0.92       22.99       蔚 山 鄭 與 鍾         ⑬ 1804 0.54       廣 山 鄭 與 鍾         ⑫ 1804 0.52       月 田 東 任         ⑫ 1804 0.54       原 山 鄭 與 鍾         ⑫ 1804 0.54       原 山 鄭 與 鍾 <t< td=""><td>8</td><td>1678</td><td>46.7</td><td></td><td>丹 城</td><td></td><td></td></t<>	8	1678	46.7		丹 城		
① 1690 37.1 43.1 大邱 四方博 彦陽 朴容淑   八田 1711 8.2 45.0 円城 朴容淑   八田 1720 44.1 円城 金泳謨   八田 1720 44.1 円城 金泳談   八田 1729 13.93 31.03   京山   鄭黄鍾   農所面   一田 1732 43.0 円城 金泳談   八田 1732 43.0 円城 金泳談   一田 1732 43.0 円域 金泳談   一田 1732 43.0 円域 金泳談   一田 1733 45.0 1759 17.6 月域 金泳談   一田 1759 17.6 月域 李俊九   一田 1759 17.6 月域 李俊九   「京田 1759 17.5   「京田 1759 17.6 月域 李俊九   「京田 1759 1765 2.0 17.07   「京田 1759 1765 2.0 17.07   「京田 1759 1766 8.8 25.9 月域 本 1759 1786 8.8 25.9 月域 本 1758   「京田 1758 1758 1758 1758   「京田 1759 1758 1758 1759 1759 1759 1759 1759 1759 1759 1759		1684	46.0		蔚山	金泳謨	內廂面
1711   8.2				43.1			
② 1717 27.6 45.0 丹城 朴容淑 李俊九   ③ 1717 25.9 44.1 丹城 金泳謨   ⑤ 1729 13.93 31.03 蔚山 鄭奭鍾 農所面   ⑥ 1729 26.5 房山 安郊   ⑥ 1732 43.0 丹城 金泳謨   ⑥ 1732 43.0 丹城 金泳謨   ⑥ 1738 20.6 房山 安郊   ⑥ 1753 16.8 房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② 1753 16.8 房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② 1759 28.2 丹城 金泳謨   ② 1759 17.6 丹城 李俊九   ③ 1765 7.73 房山 安郊   ② 1765 2.0 17.07 房山 寮頭   ② 1786 8.8 25.9 丹城 か容淑   ② 1786 7.7 丹城 李俊九   ③ 1786 7.7 丹城 李俊九   ③ 1786 7.7 丹城 李俊九   ③ 1798 1.4 彦陽   ③ 1804 0.54 房山   ③ 1804 0.92 22.99 房山   ③ 1804 0.92 22.99 房山   ③ 第		1711	8.2			朴容淑	賤民
1717   25.9				45.0			
(望) 1720						李俊九	
(5) 1729 13.93 31.03				44.1			
(6) 1729   26.5			13.93				農所面
① 1732			26.5				
1732   26.6   32.4   大 邱 四 方 博 金 容 燮				43.0		金泳謨	
(9) 1738 20.6 20.6 20 1753 16.8 28.2 月城 金容燮 18氏 柳浦・農所・凡西面 20 1759 17.6 月城 李俊九 20 1765 7.73 17.07 蔚山 鄭奭鍾 農所面 25 1771 7.5 18 19 11786 8.8 25.9 丹城 金泳謨 27 1786 8.8 25.9 丹城 金泳謨 28 1786 7.7 日本 26 2.0 日本 26 2 丹城 金泳謨 29 1786 7.7 日本 26 2.0 日本 27 2.09 日本 27 2.09 日本 28 2			26.6	32.4			
1753   16.8		1738	20.6		尙 州	金容燮	賤民
② 1759     28.2     丹城     金泳 謨 李俊九       ② 1765     7.73     扇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② 1765     2.0     17.07     扇山     鄭 奭 鍾 農所面       ② 1783     5.0     15.9     大邱     四方博       ② 1786     8.8     25.9     丹城     金泳 謨       ② 1786     7.7     丹城     金泳 漠       ② 1786     7.7     丹城     李俊九       ③ 1798     1.4     彦陽     朴容淑     賤民       ③ 1804     0.54     扇山     鄭奭 鍾     農所面       ③ 1825     3.5     鎭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1753	16.8		蔚 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22     1759     17.6     丹城     李俊九       23     1765     7.73     扇山     家面erville     柳浦・農所・凡西面農所面       24     1765     2.0     17.07     扇山     鄭東鍾     農所面內廂面       25     1771     7.5     四方博       26     1783     5.0     15.9     大邱     四方博       27     1786     8.8     25.9     丹城     全泳 謨       28     1786     26.2     丹城     全泳 漠       29     1786     7.7     丹城     李俊九       30     1798     1.4     彦陽     朴容淑     賤民       30     1804     0.54     扇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農所・凡西面農所面農所面農所面農所面農所面農所面農所面農所面農所面農所面農所面農所面農所面				28.2	丹 城		
② 1765     7.73     扇山     房山     Somerville 鄭 鍾 農所面       ② 1765     2.0     17.07     房山     鄭 奭 鍾 農所面       ② 1771     7.5     房山     金泳 謨       ② 1783     5.0     15.9     大邱     四 方 博       ② 1786     8.8     25.9     丹城     金泳 謨       ② 1786     7.7     丹城     金泳 漠       ② 1786     7.7     丹城     李俊九       ③ 1798     1.4     彦陽     朴容淑     賤民       ③ 1804     0.54     房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② 1804     0.92     22.99     房山     鄭 奭 鍾     農所面       ③ 1825     3.5     鎭 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1759	17.6				
② 1765     2.0     17.07     蔚山     鄭 奭 鍾     農所面       ② 1771     7.5     市場     中域		1765	7.73		蔚 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少 1783     5.0     15.9     大 邱     四 方 博       ② 1786     8.8     25.9     丹 城     朴 容 淑       ② 1786     26.2     丹 城     金 泳 謨       ② 1786     7.7     丹 城     李 俊 九       ③ 1798     1.4     彦 陽     朴 容 淑     賤民       ③ 1804     0.54     蔚 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② 1804     0.92     22.99     蔚 山     鄭 奭 鍾     農所面       ③ 1825     3.5     鎭 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1765	2.0	17.07	蔚 山	鄭奭鍾	
② 1786 8.8 25.9 月城 朴容淑 金泳謨 31786 7.7 月城 李俊九 30 1798 1.4 彦陽 朴容淑 賤民 30 1804 0.54 房山 第 鍾 農所面 33 1825 3.5 鎮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25	1771	7.5		蔚 山	金 泳 謨	內廂面
28     1786     26.2     丹城     金泳 謨       29     1786     7.7     丹城     李俊九       30     1798     1.4     彦陽     朴容淑     賤民       30     1804     0.54     蔚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32     1804     0.92     22.99     蔚山     鄭夷鍾     農所面       33     1825     3.5     鎭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26	1783	5.0	15.9	大 邱		
②     1786     7.7     月城     李俊九       ③     1798     1.4     彦陽     朴容淑     賤民       ③     1804     0.54     蔚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②     1804     0.92     22.99     蔚山     鄭 奭 鍾     農所面       ③     1825     3.5     鎭 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1786	8.8				
30     1798     1.4     彦陽     朴容淑     賤民       30     1804     0.54     蔚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30     1804     0.92     22.99     蔚山     鄭夷鍾     農所面       33     1825     3.5     鎭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28	1786		26.2	丹 城	金 泳 謨	
③ 1804     0.54	29	1786	7.7		丹 城	李俊九	
② 1804     0.92     22.99     蔚山     鄭 奭 鍾     農所面       ③ 1825     3.5     鎭 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30	1798	1.4		彦 陽	朴容淑	賤民
③ 1825 3.5 鎮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1804	0.54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32	1804	0.92	22.99	蔚 山	鄭奭鍾	農所面
60 1005 44 125 - 3.55 + 17.55				3.5		武田幸男	
39  1825	34)	1825		4.4	鎭 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東・西面
③ 1825 2.1 10.5 月 城   井上和枝   男丁	35	1825	2.1	10.5	丹 城	井上和枝	男丁 男丁
∞ 1858 1.5 31.3 大邱 四方博	36			31.3			
③ 1861 0.3 彦陽 朴容淑 賤民			0.3				
③ 1867 0.56 14.39 蔚山 鄭奭鍾 農所面			0.56	14.39	蔚 山		農所面
③ 1876 2.6 鎮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東・西面	39				鎭 海		
<ul><li>④ 1882</li><li>0.0</li><li>14.5</li><li>丹 城   井上和枝   男丁 新等・法勿也面</li></ul>	40		0.0	14.5		井上和枝	男丁 新等・法勿也面
④ 1885   0.0   蔚山   金泳 譚   內廂面	41)	1885	0.0		蔚 山	金 泳 謨	內廂面

<sup>\*</sup>비고란에서 '賤民'은 연구자가 분류를 賤民으로 하였음을 뜻함. '男丁'은 인구 통계에서 男丁만 계산하여 婢子가 빠져 있음을 나타낸 것임.

《표 1〉은 시기적으로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걸쳐 있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러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 戶와 口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연구 사례가 적다는 점 등에서 일정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표 1〉으로부터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獨立奴婢戶의 감소 현상이 조선 후기전체를 일관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8세기 전반과 후반 사이에커다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립노비호는 18세기 후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세기말에 이르면 적어도 호적대장 상으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노비호에 대한 통계가 가장 많이 밝혀져 있는 蔚山 지역의 경우, 대체로 18세기 후반에는 10%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19세기에는 1% 이하로 그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丹城지역도 1717년의 27.6%에서 1786년에는 8.8%로 급감하고 1825년에는 2.1%정도에 그치고 있다. 大邱 지역에서도 1690년과 1732년에 각각 37.1%와 26.6%의 비율이었던 것이 1783년에 5%로 떨어지고 다시 1858년에는 1.5%에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비 인구의 구성비 상의 변화는 독립노비호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구·울산·단성 세 지역 모두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노비 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와 울산의 경우를 볼 때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경향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1858년의 대구와 1804년의 울산의 경우 역으로 그비율이 증가되어 나타났다.

《표 2〉는 호적대장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19세기 단성현 2개 면의 노비호구의 변화를 男丁에 국한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노비호는 19세기에 이르러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소수만 잔존한 상태에서 소멸의 길을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비 인구는 19세기 중반까지 증가하여 1861년에 이르러 2개 면 모두 1825년 대비 2배 이상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비 인구 추세의 '反轉 현상'은 호적대장에 등재된 전체 호수나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과도 잘 대비된다.

		新(	笋 面		法 勿 也 面				
	戶 數		人	П	戶 數		人	П	
	奴	面全體	奴	奴 面全體		面全體	奴	面全體	
1825	9	345	54	624	0	566	47	914	
1846	7	314	97		0	495	93		
1861	1	277	114		0	494	119		
1882	0	173	54	345	0	374	81	583	

〈丑 2〉 19世紀 丹城縣 新等・法勿也面 奴婢戶口의 變化(男丁)

이와 같이 노비 인구는 17세기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면서 18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현저한 감소 현상을 겪게 되지만, 이후로는 대체로 안정 국면에들게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반전 현상'을 보이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러한노비 인구의 추이는 外居奴婢와 率居奴婢를 구분하여 고찰할 때 좀 더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다음〈표 3〉은 大邱(四方博)・蔚山(鄭奭鍾)・彦陽(朴容淑)의 사례를 토대로17) 첫 해의 노비수를 기준(100)으로 삼아 '獨立'(외거)노비와 '從屬'(솔거)노비가 시기별로 어떤 추이를 보이는가를 재구성하여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인 인구증가율과 관련된 측면은 여기서 고려되어 있지않다.

《표 3〉의 大邱 사례를 보면, 1690년과 1732년경 사이에 전체 노비수가 13% 가량 감소하고 있는데, '독립' 노비는 35% 가량 감소하지만 '종속' 노비의 수는 오히려 1.5배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된 노비 인구의 감소는 어디까지나 '독립' 노비의 감소 경향이 반영된 것이며, '종속' 즉 솔거노비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1786년경에 이르면 '독립' 노비는 더욱 크게 감소하여 1690년의 8.7% 규모에 지나지 않고, '종속' 노비도 1732년경과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줄어

<sup>\*</sup>자료: 井上和枝, 위의 글, 13~17쪽에서 재구성.

<sup>17)</sup> 大邱의 경우 甘勿川·月背·西下 등 3개 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蔚山은 農所面에 국한되며, 彦陽의 경우는 私奴婢만 반영되어 있다.

들었다. 1858년의 경우, '독립' 노비는 1690년 대비 2.3%에 지나지 않게 되어 거의 소멸상태에 이르지만, '종속' 노비는 오히려 대폭 증가하여 이전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숫자를 기록하였다.

蔚山 農所面의 경우, 1729년과 1765년 사이에 '독립' 노비가 격감하고 '종 속' 노비도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다. 이후 '독립' 노비는 계속 감소하여 1804년 이후 1729년 대비 3% 이하로 줄어 들었지만, '종속' 노비는 1765년과 1804년 사이에 크게 늘어나는 反轉 현상을 보였고 다시 줄어든 1867년에도 1765년의 수준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 彦陽의 경우는 18세기 초에 비해 18세기 말의 전체 노비수가 오히려 늘어난 사례인데, 이는 '독립' 노비 수가 격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 노비 수가 170% 가량 크게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 이 지역에서도 18세기 중후반의 어느 시기에 전반적인 노비 인구 감소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후 1861년에 이르면 '독립' 노비는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종속' 노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전체 노비의 수도 1711년 대비 97.4%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丑 3〉 朝鮮後期 地域別 獨立・從屬奴婢數의 推移

	大	邱			蔚	山			彦	陽	
年度	獨立	從屬	總數	年度	獨立	從屬	總數	年度	獨立	從屬	總數
1690	100 (3,875)	100 (1,333)	100 (5,208)	1729	100 ( 234)	100 ( 555)	100 ( 789)	1711	100 ( 526)	100 (809)	100 (1,335)
1729 1732	65.5 (2,524)	150.8 (2,010)	87.1 (4,534)	1765	15.0 ( 35)	51.4 ( 285)	40.6 ( 320)	_	_	_	_
1783 1786	8.7 ( 338)	85.5 (1,140)	28.4 (1,478)	1804	3.0	87.9 ( 488)	62.7 ( 495)	1798	34.8 ( 183)	170.5 (1,379)	117.0 (1,562)
1858	2.3 ( 91)	208.6 (2,780)	55.1 (2,871)	1867	2.6 ( 6)	51.7 ( 287)	37.1 ( 293)	1861	0.0	160.7 (1,300)	97.4 (1,300)

<sup>\*( )</sup> 아은 奴婢 實數(名).

요컨대, 이 세 지역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조선 후기 동안 진행된 노비 인구의 감소는 '독립'노비의 격감에 의해 주도된 것, 그리고 노비 인구 추세의反轉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는 곧 '종속'노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알수 있다. 또한 19세기 중반의 '종속'노비 수는 18세기 초엽에 비해 오히려더 늘어난 상태이거나(대구·언양) 18세기 중반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서(울산),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노비제에 기초한 신분 관계는 해체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적대장을 토대로 파악된 이러한 '독립'노비와 '종속'노비의 상태는 외거노비와 솔거노비의 개념으로 바꾸어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 조선 후기 노비 호구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戶와 人口의 양면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어 갔다. 戶의 감소는 급격히, 인구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노비 호구의 감소 현상은 18세기 후반에 현저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개 외거노비에 해당하는 독립노비호는 18세기 후반 이래 급격히 감소하여 19세기에는 거의 소멸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솔거노비도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그다지 커다란 동요는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 이후에 보이는 노비 인구의 상대적 안정화 경향은 대체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노비 호구의 감소 경향을 낳은 요인으로는 앞서 서술한 바 1801년의 내시노비 해방, 일련의 면천·종량의 기회 확대, 1731년에 확립된 '노양처소생종모역법'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과 함께,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광범한노비 도망과 身分冒稱 등 노비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거노비의 경우 그 일반적 유형이 조선 후기에는 상전에 대해 신공의 의무만 부담하는 소농민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8) 외거노비는 소경영에 의한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존재양태의 면에서는 양인 농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되어 갔고, 대부분 면천·속량의 확대로 양인

<sup>18)</sup> 이하 朝鮮後期 外居奴婢에 대한 서술은 全炯澤, 앞의 글 참조.

화되어 노비호 격감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외거노비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 경향을 조선 후기 노비 호구 감소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솔거노비는 상전의 직접적 통제를 받으며 예속되어 있었고, 노비의 처지를 벗어날 여러 수단들에 접근할 기회가 제약되어 있었다. 대개 양반 신분인 노비소유자의 편에서도 솔거노비는 생활양식의 유지를 위한 조건가운데 하나였으므로 노비소유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부심하였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이후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솔거노비 수의 '반전' 현상은 대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나, 앞으로 이 현상을 해명하기 위한 정밀한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비 호구 감소의 결과, 19세기에 이르러 외거노비는 거의 소멸하고 솔거노비가 노비의 대부분을 점하며 잔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비제의 구성적 범주는 사노비 중 솔거노비와 내시노비 혁과 당시 제외된 공노비 중 각관노비의 두 범주로 대별됨으로써 이전 시기의 노비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노비제의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솔거노비가 해체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비제 해체에 도달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894년 농민전쟁에서 전개한 노비제 폐지 운동과 개화과 정부에 의해 단행된 노비제의 법적 폐지 조치는 아직 그 여신이 남아 있는 노비제의 역사에 일대 타격을 가하였다는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 2) 중간신분층의 동향

서얼은 15세기 후반 이래 법과 관습의 양 측면에서 규제되고 차대되는 확고한 하나의 신분으로 성립되었다. 서얼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 응시자격을 박탈당하였다. '勿許赴擧'에 의한 서얼금고는 서얼의 양반 신분에의 참여 가능성을 봉쇄한 것으로, 嫡子孫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분을 성립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관직에 진출한 서얼에 대해서는 限品叙

用과 雜職叙用의 제약을 가함으로써 양반 신분에의 참여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봉쇄하였다. 이와 같은 仕宦의 제한은 신분으로서의 서얼이 당면하게된 일차적 문제였고, 이는 '許通'과 '通淸'의 문제로 집약되었다.

서얼 신분에게 가해진 사환의 제한은 순서상 허통의 문제로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일찍이 명종 8년(1553) 양첩자의 아들대부터 허통하는 조치가 있은 후, 인조 3년(1625)에는 다시 천첩자의 손자대부터 허통되었다. 이후 숙종 22년(1696)에 이르러 앞서 선조 16년(1583) 이후부터 양첩의 아들과 천첩의 아들·손자에게 적용하였던 '納米許通'의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물허부거'의 문제는 일단 해소되었다. 또한 이 때 서얼 신분이 과거에 나아갈 때 허통 또는 서얼로 표기하던 직역 명칭도 業儒(文)·業武(武)로 바꾸되 양첩의 손자와 천첩의 증손부터는 幼學을 칭하도록 허용하였다. 직역 명칭에 대한 규제는 숙종 34년(1708) 경부터 서얼 당자만 업유·업무를 칭하고 그 아들부터는 幼學을 사용해도 무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더욱 완화되었다. 이와 같이 17세기 말엽에 이르면 서얼 허통의 문제는 법제적 수준에서는 대개 해결 국면에 들게 된다.

그러나 통청의 문제, 즉 과거나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아간 서얼에게 가해 진 제약이 해소되는 데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였다. 인조 3년(1625)에 '요 직은 허용하나 청직은 불허한다(許要而不許淸)'는 원칙을 세워 戶‧刑‧工曹의 낭관에 서얼 출신도 서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실제 임용된 사례는 희소하였다. 19) 이후 18·19세기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서얼통청운동과 맞물려 제약이 완화되어 갔다. 20) 정조 원년(1777)의〈丁酉節目〉에서 문관은 호·형·공 3조(참상관)와 直講, 무관은 五衛將・中樞・虞候 등을 허용하였고, 지방 수령도 목사(문무당상)・부사(문무당하)・군수(生進・蔭)・현령(未生進・引儀出身) 등에 차등을 두어 임명될 수 있게 하였다. 순조 23년(1823)의〈癸未節目〉에서는限品을 종2품으로 상향 조정하고, 문관은 左尹・右尹과 호·형·공 3조의 참의 및 臺職, 음관은 목사, 무관은 병사를 허용하였다. 〈계미절목〉은〈정유절

<sup>19) 《</sup>英祖實錄》 2. 영조 즉위년 12월 병술.

<sup>20)</sup> 李鍾日、〈18・19세기의 庶孼疏通運動에 대하여〉(《韓國史研究》 58, 1987).

목〉에 비하여 疏通 범위가 다소 넓혀지고 비록 臺官에 한한 것이긴 하지만 淸職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다시 철종 2년(1851)에는 서얼도 사족과 같이 '文槐武宣' 즉 문과 급제자는 承文院에 分館하고 무과 급제자는 宣傳官廳에 薦望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이 더욱 완화되었다.

한편, 17세기 초 인조 대에 이르러 중인 신분이 기술직의 세습화 경향과 '淸職에의 枳塞'관행을 배경으로 양반과 구별되는 중인의 명호를 얻게 되면서 하나의 신분으로 성립되었다. 중인은 19세기 후반에도 그 品第와 等級이서얼과 엇비슷하여 '中庶'라 통칭되고 있었다.21) 이들은 서얼이 통청운동을통해 신분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자극 받아, 철종 2년 서얼의 '문괴무선' 허용 조치를 계기로 한 때 대대적인 통청운동을 전개하려는 노력을 펴기도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22) 중인은 운동의 실패를 우려해서 자제할 만큼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던 이익 또한 적지 않게 가지고 있던 신분이었다.23) 중인은 다른 신분층에 비해서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상층에 속하는 역관·의관 등은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거나 사신 행차의 수행원으로서 국제 정세에 관한 상당한 식견을 지니기도 하였다. 김옥균 일파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개화사상의 형성과 전파에 공헌하였던 吳慶錫(역관)・劉鴻基(의관)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향리의 경우, 조선 후기에 오면서 내부 3계층의 위계질서 즉 三壇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그 대신 향리와 '假吏'의 구분이 강조되었다. 18세기 초반까 지 가리층은 주로 노비로 충원되었지만 이후로는 양민층이 대거 참여하는 양상을 보인다.<sup>24)</sup> 가리의 향리직으로의 활발한 진입으로 인해 향리 직임을 둘러싸고 경쟁·대립이 격화되어 가고, 그만큼 입지가 좁아진 기존 향리층은 이들의 진입이나 득세를 막기 위해 각종 完議나 節目을 만들어 향리와 가리 의 구분을 강조하였다. 또한 향리 가문 내에서도 향리직에 계속 참여하는 경

<sup>21)</sup> 黄 玹,《梅泉野錄》 권 1, (《黄玹全集(下)》, 亞細亞文化社, 1978), 93쪽.

<sup>22)</sup> 韓永愚. 〈朝鮮時代 中人의 身分・階級的 性格〉(《韓國文化》9, 1988).

<sup>23)</sup> 金舸東, 〈중인 신분의 형성과 발전〉(《차별과 연대-조선 사회의 신분과 조직-》, 문학과지성사, 1999), 133쪽.

<sup>24)</sup> 金俊亨, 〈朝鮮後期 蔚山 地域의 鄉吏層 變動〉(《韓國史研究》56, 1987).

우와 탈락하는 경우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같은 향리 가문내에서도 향리와 유학 등 다른 신분직역이 혼재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는 사족층의 입지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던 당시 현실상황에서는 경제적 이권이 많은 향리직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5) 다른 한편, 호장·육방·색리층 간의 엄격한 위계관계도 무너져가고 각 직임이 가지는 현실적 힘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향리층은 조선 후기의 사회변화 속에서 이미 구조화·관행화된 중간수탈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고26) 이들은 지방행정에 능통한 점을 악용하여 수령과 밀착해가면서 鄕廳(鄕所)의 통제도 벗어나고 있었다.

중간신분층은 임오군란 직후인 고종 19년(1882) 7월에 이르러 왕이 門地와 귀천을 가리지 않고 "西北·松都·庶孽·醫譯·胥吏·軍伍를 顯職에 通用한다"27)는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관직 진출의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되었다. 예를 들어, 고종 년간에 서얼로서 淸顯에 이른 자로 첫 손에 꼽는 李祖淵이 청요직에 진출하여 이조참판의 망에 들고 左營使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임오년 이후였다.28) 또한 1894년 갑오개혁에 참여한 소장 관료 가운데 서얼(金嘉鎭·安駉壽·權在衡·李允用·尹致昊), 중인(鄭秉夏·高永喜·吳世昌), 토반(金鶴羽·張博) 등 한미한 신분배경을 가진 '亞流兩班'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다.29) 특히 이들 중 서얼 출신인 金嘉鎭・權在衡・安駉壽 등은 각각 공부・군부・탁지부의 협판직을 맡아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위치에 있었다.30)

이처럼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중간신분층, 그 중에서도 특히 서얼의

<sup>25)</sup> 崔承熙,〈朝鮮後期 鄉吏身分移動與否考 2〉(《韓國文化》4. 1983).

<sup>26)</sup> 張東杓, 〈18~19세기 吏額增加의 현상에 관한 硏究〉(《釜大史學》9, 1985).

<sup>27) 《</sup>高宗實錄》 19, 고종 19년 7월 22일.

<sup>28)</sup> 黄 玹, 위의 책, 79쪽.

<sup>29)</sup> 柳永益,〈甲午更張과 社會制度 改革〉(朱甫暾 의,《韓國社會發展史論》,一潮閣, 1992), 238等.

<sup>30)</sup> 서얼 출신으로 갑오년 이후 大官에 이른 사람들로는 李祖淵을 비롯 李範晋・ 金嘉鎭・閔致憲・閔商鎬・閔泳綺・李允用・尹雄烈・安駉壽・金永準 등이 꼽힌 다. 黄玹, 위의 책, 93쪽.

신분적 지위가 많이 개선되어 사환의 제한에 관한 법적 제약은 거의 해소되었다. 그러나 서얼의 경우, 관의 지배 영역에서 가해졌던 제약이 완화되어 갔던 것과는 달리 사회 관습의 영역에서는 차대가 엄연히 존재하였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가는 일면도 있었다.31)

### 3) 양반 신분의 동향

### (1) 양반 호구의 변화

영조 26년(1750) 知敦寧府事 李宗城은 왕에게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서울이나 외방의 士庶는 큰 부자나 녹을 먹는 사람 이외에는 대체로 궁핍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양반이 가장 많고 또 가장 가난합니다. 士夫의 公卿 자손과 鄕人의 校生 이상을 통칭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 수효는 거의 모든 백성의 반절이 넘습니다.32)

이처럼 지배신분인 양반의 수효가 여타 신분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역계층화 현상은 조선 후기 신분구조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신분제 동요현상에 관한 주된 근거로서 흔히 설정된다. 양반 신분에 해당하는 호구의 수가 조선 후기 동안 계속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호적 연구에 의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표 4〉는 각 지역별 호적 연구에 의해 양반 신분으로 파악된 호구의 전체에 대한 구성비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한 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sup>31)</sup> 宋俊浩,〈朝鮮時代의 科擧와 兩班 및 良人〉(《歷史學報》69, 1976), 123~124쪽.

<sup>32) 《</sup>英祖實錄》 71, 英祖 26년 6월 癸巳.

〈丑 4〉 朝鮮後期 兩班身分戶口構成比의 變化: 概觀

(단위:%)

	6 F	_		4-1 1-1	TITT 1969 LLV	(단위·%)
	年 度	戶	人口	地域	研究者	備考
1	1606	40.00	13.75	山陰	盧 鎭 英	職
2	1606	48.33	18.15	丹城	韓基範	職
3	1609		2.5	蔚山	韓榮國	職
4	1630		15.85	山陰	盧 鎭 英	職
5	1663	16.6		서울	Wagner	形
6	1672	14.2		金化	Shin	形
7	1678		5.6	丹 城	金泳謨	職・準
8	1678	13.6		丹 城	李俊九	職
9	1684	5.1		蔚 山	金 泳 謨	職・準
10	1690	9.2	7.4	大 邱	四方博	形
11)	1711	29.1		彦 陽	朴容淑	形・準
12	1717	19.9	12.8	丹 城	朴容淑	形
13	1717	19.1		丹 城	李俊九	職
(14)	1720		8.0	丹 城	金 泳 謨	職・準
15)	1729	26.29	19.39	蔚 山	鄭奭鍾	形
16	1729	14.48		蔚 山	Somerville	職・鄕班
17)	1732		10.0	丹 城	金 泳 謨	職・準
18)	1732	18.7	14.8	大 邱	四方博	形
19	1738	30.1		尙 州	金容燮	職
20	1753	19.79		蔚 山	Somerville	職・鄕班
21)	1759		9.7	丹 城	金 泳 謨	職・準
22)	1759	24.4		丹 城	李俊九	職
23)	1765	23.45		蔚 山	Somerville	職・鄕班
24)	1765	40.98	32.11	蔚 山	鄭奭鍾	形
25)	1771	16.4		蔚 山	金 泳 謨	職・準
26)	1783	37.5	31.9	大 邱	四方博	形
27)	1786	32.2	23.4	丹 城	朴 容 淑	形
28	1786		14.3	丹 城	金 泳 謨	職・準
29	1786	31.4		丹 城	李 俊 九	職
30	1798	68.3		彦 陽	朴容淑	形・準
31)	1804	35.8		蔚 山	Somerville	職・鄕班
32	1804	53.47	43.67	蔚 山	鄭奭鍾	形
33	1825		38.6	鎭 海	武田幸男	職・準・男丁
34)	1825		32.6	鎭 海	武田幸男	職・準・男丁 東面
35	1825	57.1	42.1	丹 城	井上和枝	職・準・男丁
36	1858	70.3	48.6	大邱	四方博	形
37)	1861	84.4		彦 陽	朴容淑	形・準
38	1867	65.48	67.07	蔚 山	鄭奭鍾	形
39	1876		36.9	鎭 海	武田幸男	職・準・男丁 東面
40	1882	83.4	65.8	丹 城	井上和枝	職・男丁
<u>(1)</u>	1885	38.6		蔚山	金泳謨	職・準
			•	1 -1 -1 0		

<sup>\*</sup>연도, 지역 및 연구자 배열은  $\langle$ 표  $1\rangle$ 과 같음.  $\langle$ 표  $1\rangle$ 에 있는 비고란의 面地域 표시는 대개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음.

<sup>\*\*</sup> 비고란에서 '職'은 '職役表記', '形'은 '記載形式'의 줄임이며 분류기준임. '準'은 '準兩班'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임.

이 표의 형태는 노비 호구에 관한 앞의 〈표 1〉과 동일하지만, 노비의 경 우 그 범주의 획정이 단순하고 호적상에도 대개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연구 자들 간에 상위함이 거의 없음에 비해. 양반 신분에 대한 파악방식은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의 비고란을 보아도 대개 짐작할 수 있듯이 호적에서 양반 신분을 판별해 내는 기준이 연구자들 간에 통일되어 있지 않 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대략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판별 기 준이 기재형식인가 아니면 직역표기인가 또는 이 둘을 혼용할 것인가에 대 한 견해 차이가 그 하나이고. 직역표기를 분류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양반 직 역의 범주에 관한 견해 차이가 그 둘이며, '준양반'을 구별되는 하나의 범주 로 독립시킬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그 셋이다. 〈표 4〉에 나타나 있는 통계치에는 이러한 연구자 간의 견해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 단적 인 예로서〈표 4〉의 ႍ᠓᠓᠓는 동일 호적대장을 자료로 삼아 양반 호구를 추 출한 것이지만 세 연구자가 적용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구성비가 일 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치만 가지고 시기별 추이 분석이나 지 역간 비교를 정확히 햇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다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 어 있을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이들 지역별 통계치를 단순 비교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난점이 있다. 그러므로 〈표 4〉는 이를 통해 양반 호구의 추이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얻는 정도로 그 의미가 제한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표 4〉를 보면, ②의 경우와 한 번만 조사된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 사례에서 兩班戶 및 兩班人口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증가 경향은 大邱(⑩⑱墮⑯)와 彦陽(⑪శ)에)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양반호는 17세기 말의 9.2%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대략 50년마다 倍增하여 1858년에 이르면 전체의 70.3%를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언양의 양반호(준양반 포함)도 1711년과 1798년 사이에 2배 이상 구성비가 높아지고 다시 1861년에 이르면 전체의 84.4%라는 압도적인 구성비를 기록하고 있다.

이리하여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兩班戶의 전체에 대한 구성비가 지역별로 70.3%(大邱), 84.4%(彦陽), 65.48%(蔚山 農所面), 83.4%(丹城 新等·法勿也面)에 달하고 兩班人口도 48.6%(大邱), 67.07%(蔚山 農所面), 65.8%(丹城 新等·法勿也

面)에 달하고 있어서 이 사실로만 본다면 양반 신분의 소수 특권지배신분으로서의 성격은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호적 분석에 의해 파악된 양반층의 급증현상은 '幼學' 직역층의 급증에 의한 것인데, 대구의 경우 幼學戶의 전체 양반호 중 점유율이 1690년의 41.4%에서 1858년의 89.8%로, 언양의 경우 1711년의 54.6%에서 1861년의 98.4%로, 단성의 경우 1678년의 41.5%에서 1825년의 98.8%로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33) 19세기 후반까지 자료가 밝혀져 있는 단성 新等面과 法勿也面의 사례를 〈표 5〉를 통해서 보면, 1825년 이후에도 양반호 가운데 유학호의 점유율은 최저 96.7%에서 최고 99.6%까지, 양반 인구 가운데 유학 인구의 점유율은 97.0%에서 99.7%까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 2개 면의 경우, 1882년의 유학호 점유율은 新等 96.7% 法勿也 99.0%, 유학 인구 점유율은 新等 97.0% 法勿也 99.0%, 유학 인구 점유율은 新等 97.0% 法勿也 99.3%를 각각 기록하였다.

〈亞 5〉 19世紀 丹城縣 新等・法勿也面 幼學戶口의 變化(男丁)

	新 等 面				法 勿 也 面				
	戶數		人口		戶	數	人口		
	幼學	全體	幼學	全體	幼學	全體	幼學	全體	
1825	123 (97.6)	126	142 (97.9)	145	166 (99.4)	167	204 (99.5)	205	
1846	144 (98.6)	146	148 (97.4)	152	254 (99.6)	255	324 (99.7)	325	
1861	187 (97.9)	191	247 (97.2)	254	323 (99.4)	325	365 (99.5)	367	
1882	147 (96.7)	152	196 (97.0)	202	301 (99.0)	304	406 (99.3)	409	

<sup>\*</sup> 자료: 井上和枝, 위의 글, 15쪽에서 재구성. 이 표에서 '全體'는 兩班 全體를 말하며 準兩班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하였음. ( )안은 양반 전체에 대한 幼學 호구의 점유율(%).

<sup>33)</sup> 李俊九,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한국사》34, 국사편찬위원회, 1995), 16~17쪽.

이처럼 18세기 이후부터 幼學 호구가 급증한 배경에는 유학의 자기 재생산 뿐만 아니라 忠義衛에서 유학으로의 직역 이동과 서얼 후손을 비롯한 중간신분층의 유학 호칭, 그리고 有役下層民의 冒稱幼學 등 다양한 신분층의유학 호칭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유역 하층민의 모칭유학은 18세기를 거쳐 19세기로 오면서 유학층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군역제의 동요와 함께 신분제의 동요를 가속화하였다. 34)유학은 16·17세기까지는 대개 양반의 직역에 해당하였으나, 18·19세기로 오면서 하위신분층에 의하여 모칭되었고 호적상 모칭유학의 추세는 관에서도 제어할 수 없는상태에 이르렀다. 35)그러므로 호적대장 상에 幼學 직역으로 기재된 호구의급증 현상을 곧바로 양반 신분층의 급증으로 해석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따르며,오히려 이를 신분과 직역 간의 불일치 현상으로 해석하고 신분직역제의 해체 문제와 관련지울 수도 있는 것이다. 36)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호적 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兩班戶口의 증가 현상은 양반 신분층의 동요 현상을 설명하는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신분층, 특히 유역 하층민이 19세기로 오면서 양반의 직역인 유학을 모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될수록 양반신분층의 폐쇄성 약화 내지 권위 하강에 관한 증거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는 중세적 신분질서 해체의 징후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 양반 신분의 동요와 분화

조선 후기 양반신분의 동요를 초래한 배경은 비양반층의 신분적 상향 이동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다. 비양반층은 과거라는 좁은 통로를 거쳐 양반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 방식은 양반층의 신분적 지위 자체에는 거의 타격을 주지 않는 성격의 것이며, 양반 신분으로의 充員의 의미를 띠는 班常制의 제도적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양

<sup>34)</sup> 李俊九, 위의 글, 17~21쪽 참조.

<sup>35)</sup> 崔承熙,〈朝鮮後期 幼學·學生의 身分史的 意味〉(《國史館論叢》1, 1989), 117쪽.

<sup>36)</sup> 任敏赫, 〈朝鮮後期의 幼學〉(《淸溪史學》8, 1991), 158쪽 참조.

반 신분의 동요는 과거 이외의 다양한 합법적·불법적 수단들을 통한 상향이동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상제의 제도적 과정을 벗어난 수단들을 통하여 새로이 양반 신분층에 대량으로 진출함으로써 양반 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로 인한 양반 신분의 동요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합법적 상향 이동 수단이 곧 納粟授職이다. 납속수직은 米穀으로 대표되는 일정 財貨를 국가에 헌납한 자에게 그 대가로 官爵을 수여하는, 말하자면 賣官과 다를 바 없는37) 재정염출책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한 상민들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관직이나 품계를 납속수직의 방법을 통하여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국가는 그러한 신분 상승의 열망을 이용하여 부족한 재원을 메꿀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賑恤・軍糧確保・軍器補修・宮闕營建・築城 등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납속수직이 빈번하게 행해졌다. 납속에 의해획득할 수 있는 관직은 대개 老職・贈職・影職・加設職 등으로서 職事가 없는 명예직이 주류를 이루었다. 納粟品官은 군역이 면제되지 않는 등 일반 사대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구별되어 그 신분적 지위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에 위치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38) 제도상의 규정과는 달리시일이 흐름에 따라 본래의 양반층과 마찬가지로 양반 행세도 할 수 있게되었다.39)

납속수직 이외에도 각종의 冒稱·冒屬·冒錄 등 다양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다. 비교적 부유한 상민들은 籍吏와 결탁하여 호적에 幼學으로 冒錄함으로써 避役을 꾀하였으며 이러한 冒稱幼學은 상민 가운데 약간의 식견과 재력이 있는 자는 쉽게 넘볼 수 있었다.40)

<sup>37) 《</sup>英祖實錄》 6. 영조 원년 5월 계묘. 侍讀官 徐宗燮의 말 참조.

<sup>38)</sup> 李俊九,〈朝鮮後期兩班身分移動에 關한 硏究(上)〉(《歷史學報》97, 1983), 152쪽.

<sup>39)</sup> 金容燮,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所有〉(《朝鮮後期農業史 研究》, 一潮閣, 1970), 413쪽.

<sup>40)</sup> 鄭奭鍾,〈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變化〉(《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一潮閣, 1983), 255等;金容燮,〈朝鮮後期 軍役制의 動搖와 軍役田〉(《東方學志》32, 1962), 110等 참조.

또한 재력있는 상민들은 璿派·勳族을 모칭하고 관작을 거짓 기재하여 僞譜를 만들거나, 빈궁한 양반의 족보를 사서 후손으로 冒錄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41) 이와 함께 忠義衛·業儒·業武·校生·院生·軍官·將校 등의 신분식역을 모칭하거나 거기에 모속함으로써 피역을 위한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다.

비양반층의 상향 이동이 활발해지고 이들이 양반 신분층에 대량으로 진출함에 따라 양반 신분은 크게 동요되었고 이는 양반 신분의 분화 현상을 촉진하였다. 본래의 양반 신분은 李重煥(1690~1756)이 지적한 바와 같이 士大夫와 鄕曲品官의 구별이 있었고, 사대부 간에도 大家・名家의 경계가 있었다.42) 또한 柳壽垣(1694~1755)이 素門平族과 高門大族을 나눈 것과 같이43)家世와 門地에 따라 한미한 가문과 문벌 가문을 구분하는 풍토가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대지주로부터 "사는 꼴이 걸인을 방불케 하는"44) 빈곤층에 이르기까지 분화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도 18세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數十家의 양반 권세가에 정권이 집중되어 간 이면에는 지방 사족(특히 영남사족)의 항족화 현상이 자리잡고 있었다.45)

그런데 비양반층의 대량 진출에 의해 촉진된 양반층의 분화 현상은 이러한 전국적 수준에서 상·하를 구분하는 형태와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분화의 새로운 형태는 주로 양반 신분의 하부에 해당하는 재지사족 내지 향반의 수준에서 향촌사회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儒鄉分岐' 즉 土族과 鄕族・鄕品의 분리 현상이었다.46) 영남 등 일부 지역을제외하고 거의 전국적 수준에서 진행된 유향분기는 사족지배체제에서 守令一吏・鄕支配體制로의 변화에 따른 재지사족의 鄕權 상실 경향과도 관련된다. 관 주도의 향촌사회 통제책 시행에 따라 향임이 고역으로 전략하자 본래

<sup>41)</sup> 鄭奭鍾, 위의 글, 261~263쪽 ; 金容燮, 위의 글, 116쪽 참조.

<sup>42)</sup> 李重煥.《擇里誌》總論.

<sup>43)</sup> 柳壽垣、《迂書》 2. 論門閥之弊.

<sup>44)</sup> 宋俊浩, 〈1750年代 益山地方의 兩班〉(《全北史學》11, 1983).

<sup>45)</sup> 韓祐劤. 《東學亂 起因에 關한 硏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42~45쪽.

<sup>46)</sup> 이하 儒鄉分岐에 대한 서술은 李俊九, 앞의 글, 36~38쪽 참조.

의 사족층은 이를 기피하였고, 향임을 담당하는 향족·향품층은 이들과 구분되는 하나의 계층으로 형성되어 갔다. 18세기 후반 이후 향임은 아래로부터올라오는 부민층이 대거 참여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지역에 따라 향임·서얼·이서 등으로 구성된 '新鄉'의 향안 입록을 둘러싸고 기존 입록자인 '舊鄉'과의 사이에 전개된 '鄕戰'과 이를 배경으로 한 향안 파치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재지사족층의 분화를 보여 주는 한 예로 삼을 수 있다.

다른 한편, 1832년경 晉州 지역에서 나타난 元儒와 別儒의 구분과 차별 양상도 재지사족 수준에서 진행된 분화 현상과 관련하여 음미되어야 할 사례이다.47) 원유와 별유는 다같이 幼學을 직역으로 하면서도 원유는 토착·전통적인 지배신분층, 별유는 신분상승 혹은 後來移住로서 지배신분층의 하부에 첨입된 존재로 파악된다. 원유와 별유의 구분은 급증된 兩班戶의 자체 구별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분명한 신분적 상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양반층의 증대에 따른 기존 사족층의 자기 방어 차원의 대응 양상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분화의 제양상은 모든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 그리고 사회적 위신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양반신분의 분화 과정은 신분제 동요의 결과 또는 징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 상민을 비롯한 여러 신분층의 사회적·경제적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양반 신분으로의 대량진출이 양반 호구의 증대를 낳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서 양반 신분의분화가 촉진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층 양반이 이러한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동요된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전형적인 양반 가문은 이질적 요소나 하층 양반과의 구별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를 강화시켜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양반 신분의 동요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양반 신분의 하부이다. 이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에 상민을 비롯한 여타의 신분층이 뛰어들어 휘저어 놓음으로써 반·상의 混淆가 일어나고 호적대장 상의 양

<sup>47)</sup> 李海濬、〈朝鮮後期 晉州地方 儒戶의 實態〉(《震檀學報》60, 1985).

반층 증대 현상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8\cdot19$ 세기에 이르러 다양한 신분층이 幼學 직역에 진출함으로써 이 직역 기재로는 본래의 신분을 구별할 수 없게 된 현상은48) 충분히 주목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49)

〈池承鍾〉

## 5. 개항기 지주제와 농업경영

1) 개항 후 농업변동의 요인

#### (1) 통상무역의 확대와 농촌사회

조선 후기 농촌사회는 신분제의 해체,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변동, 상품화폐 유통경제의 발전 등의 요인으로 중세적 기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1) 이러한 변화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로 국교가 확대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갔다. 이 조약으로 조선사회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불평등한 관계

<sup>48)</sup> 崔承熙, 위의 글, 117쪽.

<sup>49)</sup> 兩班層 增大와 奴婢戶 激減으로 요약되는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의 추세는 조선시대 신분구조의 구성 원리인 班常制와 良賤制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19세기 후반의 신분제는 幼學 職役의 사례에서 극명히 표출되듯이 신분직역체 제가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되면서 국가신분제로서의 성격은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19세기 후반의 계층구조에 대하여 이를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계급을 함께 고려하여 파악하려는 입장, 예컨대 "상층 부에는 兩班士族을 모태로 하는 土豪層과 班常을 포괄하는 신분구성을 갖는 饒戶富民層이 있고, 하층부에는 平民・賤民 신분층의 小貧民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입장은 일정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영호, 〈1894년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변혁주체의 성장〉(《1894년 농민전쟁연구 1》, 역사비 평사, 1991), 26쪽 참조.

<sup>1)</sup> 조선 후기 사회변동은 근대사연구회, 《한국 중세사회 해체기의 제 문제》상·하, 한울, 1987과 한국역사연구회, 〈중세사회의 발전과 해체〉(《한국역사입문》②, 풀빛, 1995에 잘 요약 정리되어 있다.

로 강제로 편입되었으며, 여기에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자기변신을 해 갔다. 특히 통상무역의 확대에 따른 경제 변화가 이를 주도했다. 쌀·콩·소가죽 등 농산물의 수출 판로가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겨냥한 농산물생산의 급속한 발전, 공장제 면제품의 수입에 따른 전통 토포산업의 위축이라는 사태를 맞이하여 농촌사회가 급격히 분해된 것이다.2) 이 중에서도 쌀이 변화를 주도했다. 일본 자본주의는 후발성을 극복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그 기반은 값싼 쌀이었다. 질의 측면에서 조선 쌀은 일본 쌀과 같은 종류였기 때문에 일본자본주의는 조선 쌀을 수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리하여 일본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일본내 쌀 부족 현상이심화되자 조선과의 쌀무역은 더욱 확대되어 갔으며, 그만큼 조선내의 쌀값은 앙등되었다.3)

쌀무역은 국내 곡물시장의 전면적 재편을 초래했다. 개항 이전의 곡물시장은 지주와 국가에 의한 전국적 유통망과 농민에 의한 국지적 유통망이짝을 이루면서 서울 중심으로 형성된 유통구조였다. 그러나 개항이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여기에 부산・원산・인천항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산지・포구 객주↔중개곡물상↔개항지 객주↔거류지 일본무역상이라는 유통권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이것은 곧 서울 중심의 유통권이 개항지 중심의 유통권으로 양분되어 재편 발전해 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서울도 쌀값이오르고 구매력이 커져 갔으나, 대체로 서울보다 개항장의 흡입력이 더 강세

<sup>2)</sup> 면업의 생산과 유통구조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梶村秀樹、〈李朝末期 綿業の流通及び生産構造〉(《東洋文化研究所紀要》46, 1968). 吉野誠、〈李朝末期における綿製品輸入の展開〉(《朝鮮歷史論集》(下), 龍溪書 会, 1979).

권태억, 《한국근대면업사연구》(일조각, 1989).

<sup>3)</sup> 개항기 무역과 국내 유통구조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姜德相.〈李氏朝鮮 開港直後 朝日貿易의 展開〉(《歷史學研究》265, 1962).

吉野誠、〈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12.1975).

吉野誠, 앞의 글(《朝鮮歷史論集》(下), 龍溪書舍, 1979).

이병천, 《개항기 외국상인의 침입과 한국상인의 대응》(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5).

하원호, 《한국근대경제사연구》(신서원, 1997)를 참조.

#### 를 보였다.4)

외국과 잇달아 통상조약을 맺으면서5) 개항장의 수, 거류지와 조차지의수와 규모, 외국인의 토지이용 허용범위, 외국인의 활동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무역의 영향력은 더 커져 갔다.6) 외국 상인, 특히 일본상인은 이를 적극활용하여 활동무대를 넓혀 갔다. 중개곡물상과 개항지 객주를 배제하고 산지 포구 객주와 직접 거래하는 유통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개항장의 유통권이 더욱 강한 규정력을 발휘하면서 일본상인은 조선의 상권을 점점 장악해갔다.

쌀무역은 부산항이 주도했다. 쌀의 수출지가 일본이라는 거리상의 이점과 쌀 가격이 인천보다 부산이 좋다는 점이 반영되어 부산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부산항에서 수출한 쌀의 산지는 전라도 산이 7분, 경상도 산이 3분을 점하였다. 부산항의 비중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대일 무역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커져 갔다.7) 콩도 대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생산량은 쌀의 10%에 불과했지만 수출액은 쌀에 필적할 정도였다. 그원인은 질좋고 값이 싸 일본산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영향으로 콩의 경작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신간전이나 밭의 언덕·둔덕 등도개발하여 재배면적을 크게 확대했다. 콩은 쌀과 달리 지주제가 덜 발달한 부산항의 배후지인 경상북도에서 상품화가 두드러졌으며, 계층에 관계없이 전 농민층이 참여하여 재배했다. 쌀은 지주제의 발전에, 콩은 농민적 부의 축적에 기여했을 것이라 판단된다.8)

 <sup>4)</sup> 이 시기 곡물 유통구조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이세영, ⟨18·19세기 곡물시장의 형성과 유통구조의 변동⟩(《한국사론》9, 1983).
 하원호, 앞의 책, 1997과 주3)의 글.

<sup>5)</sup> 통상조약의 내용은 국회입법조사국 편, 《구한말조약휘찬》(상)(중)(하), 1964 참조

<sup>6)</sup> 한국역사연구회 편,《한국역사입문③》(1996)에 소개된 글과 김정기,〈조선 불평 등조약의 間行權·漢城開棧權 분석〉(《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지식산업사, 1997).

<sup>7)</sup> 하원호, 〈곡가변동의 추이와 원인〉, 앞의 책, 1997, 253~263쪽.

<sup>8)</sup> 콩의 재배와 상품화는 宮嶋博史, 〈朝鮮 甲午改革以後의 商業的 農業〉(《史林》 57-6, 1974;《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 1983, 219~220쪽) 참조.

이러한 유통구조 속에서 쌀무역에 직접 참여한 양반관료와 상인들, 그리고 쌀을 생산 판매하는 병작지주·경영지주들은 크게 이익을 보고 있었다. 9) 생산활동에서 잉여가 있는 부농들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었다. 쌀 생산이 크게이익을 가져와 이들의 토지 구입열도 상승해 갔다. 이들이 구입한 토지는 주로 소빈농층이 방매한 토지였다. 소빈농층도 상품화폐 유통경제권의 확대에따라 여기에 포섭되어 쌀의 상품화에 참여했지만, 그것은 궁박 판매의 형태였다. 이들은 여기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수단인 토지라도 방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쌀값과 땅값은 때로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동반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 중에서도 쌀값이 땅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더 큰 경향을 보였다.10) 더 많은 쌀을 생산하여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각계 각층은 경영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부농들은 차경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때로는 소유지를 확대해 가기도 했으며, 상인 지주들은 소유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했다. 이들의 토지 구입방식은 고관대작이나 부호의 경우 개항장 부근에 일시에 농지를 구입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지주들은 소빈농층이 방매하는 토지를 한 두 필지씩 구입하여 20~30년 지나는 사이 대지주로 성장해 갔다.11)

<sup>9)</sup> 쌀무역과 지주제 변동과의 관련성은 김용섭, 〈개항과 농업문제의 심화〉(《한 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1992)에 잘 정리되어 있다.

<sup>10)</sup> 이 시기 땅값과 쌀값의 동향은 최원규, 〈한말 일제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50·51, 1985)와 하원호, 앞의 책, 1997 참조.

<sup>11)</sup> 김용섭, 〈근대화과정에서의 농업개혁의 두 방향〉(《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1992), 21쪽.

#### 〈丑 1〉 총수출입액과 쌀수출입액 비교

(단위:円)

년도	총수입액	면제품		쌀			(단위 : 円)	
		수입액	총수출액	수출액 % 단가			· 수출액 %	
				127	/0		127	/0
1876	188246	11623	92518			円		
1877	126569	54250	58759	1959	3.3	4.00	4155	7.1
1878	244545	167894	181469	50600	27.9	3.51	25323	14.0
1879	566955	477222	612174	358812	58.6	4.33	99123	16.2
1880	978014	768467	1256225	729706	58.1	5.31	119307	9.5
1881	1873976	147157	2230296	381283	17.1	4.99	196695	8.8
1882	1562169	178640	1768619	21011	1.2	4.90	311325	17.6
1883	2178400	912856	1656078	45625	2.8	4.25	293955	17.8
1884	793734	497593	884060	196	0.0	3.73	100705	11.4
1885	1671652	1122359	388023	15691	4.0	4.85	28884	7.4
1886	2474185	1305731	504225	12193	2.4	5.18	51733	10.3
1887	2815441	1894324	804996	90071	11.2	3.73	335415	41.7
1888	3046443	1961932	867058	21810	2.5	3.28	471541	54.4
1889	3377815	1709142	1233841	77578	6.3	5.55	645429	52.3
1890	4727839	2674807	3550478	2037868	57.4	5.74	1005156	28.3
1891	5256468	2874837	3366344	1820319	54.1	5.05	913939	27.1
1892	4598485	2185073	2443739	998519	40.9	5.36	797884	32.7
1893	3880155	1733458	1698116	667165	21.6	6.06	628324	37
1894	5831563	2494544	2311215	979292	42.4	7.85	506888	21.9
1895	8088213	4713755	2481808	305196	31.2	7.24	923695	39
1896	6531324	3478924	4728700	2509343	57.1	7.00	1277071	29
1897	10067514	5273119	8973869	5556700	68.7	9.12	1710211	21.1
1898	11825249	5185406	5709489	2759046	61	12.12	1124048	24.9
1899	10307830	5384460	4997845	1417842	33.7	8.36	1974863	47.0
1900	11013590	5764990	9439867	3625629	50.1	9.17	2368545	32.7
1901	14822003	6182912	8461949	4195309	56.6	8.13	1881014	25.5
1902	13657063	5561400	8317070	3524619	53.8	9.36	1735945	27.8
1903	18374814	6009321	9477603	4224712	55.6	11.43	1528834	20.1
1904	27034345	8456940	6933504	1300790	22.8	12.88	2399513	42.1

<sup>\*</sup> 출전 : 이세영, 〈개항기 지주제의 동향〉(《한국사》12, 한길사, 1994, 71쪽). 하원호, 앞의 책, 23·125·219쪽.

<sup>\*</sup>비고: 쌀값은 부산항의 1석당 円화 가격이다(하원호, 앞의 책, 219쪽).

그렇지만 쌀무역이 지주제 발전에 무조건 유리하게 작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농민들은 지주적 상품화에 반대하여 지대인하 투쟁을 통한 농민적 상품화를 지향했으며,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란과 항조운동은 이러한 표현의 하나였다.12) 그리고 콜레라 등 전염병이 유행하고, 수재·한재 등 자연재해가 잇달아 일어나 외적 형편도 지주경영을 강화하기에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쌀무역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같은 생산량의 저하 현상은 국내의 쌀부족을 가져와 쌀값을 더욱 앙등시켰다. 이럴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과 관련하여 대일 쌀무역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정부는 이를 고치는 데 힘써 1883년 일본과〈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을 맺으면서 제한적이나마 전통적인 방곡령을 발동하여이를 막을 수 있었다.13) 쌀이 부족하여 민심이 흉흉하여 통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일제는 방곡령으로 쌀무역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되자 강경한 자세로 여기에 대처했다.14) 조선정부에 배상책임을 묻는 한편쌀무역을 확대 강화해 갔다.

대일 쌀무역은 일제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친일 개화파 정권을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역에 의존하는 한 일본내 쌀 수급의 안정성을 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일본 자본주의가 '산업혁명기'에 접어들면서 저임금 구조의 기반인 값싼 쌀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그리하여 일본자본주의는 장기적 안목에서한국 내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경영을 통해 쌀을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했지만,15) 조선내의 조건도 쌀무역의 활성화에 부응해 갔다. 상품화폐 유통

<sup>12)</sup>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②》 중세편, 1995, 537~539쪽과 《한국역사입문 ③》 근대·현대편, 1996, 216~219쪽.

<sup>13)</sup> 국회도서관,《구한말조약취찬》상, 64쪽.

<sup>14)</sup> 하원호, 〈개항후 방곡령 실시의 원인에 관한 연구(상)·(하)〉(《한국사연구》 49·50·51, 1985) 참조.

<sup>15)</sup> 일제의 토지침탈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李在茂, 〈いわゆる《日韓倂合》=《强占》前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による朝鮮植 民地化の基礎的 諸指標〉(《社會科學研究》 9-6, 1958).

김용섭, 〈고종조 왕실의 균전수도문제〉(《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일조각, 1988). 최원규, 〈1900년대 일제의 토지권 첨탈과 그 관리기구〉(《부대사학》19, 1995).

경제가 발전해 가는 가우데 갑오개혁에서 조세 금납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 자 농민경제 전체가 그 영향권에 포섭되면서 쌀 상품화가 크게 진전되었던 것이다.16) 이러한 경제적 조건은 지주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었으며, 여기에 힘입어 특히 개항장 배후지의 지주들이 반사이익을 크게 얻 고 있었다.17) 이들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소유를 늘려나가는 한편, 농 업경영 방식의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강화도 김씨가의 성장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18)

#### (2) 정부 지배층의 농업문제 인식과 농업정책

19세기 후반 전국 여론은 농촌문제의 해결방식을 둘러싸고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문제의 소재는 신분 제ㆍ부세제도 등 각 분야에 걸쳐 있지만, 특히 토지제도의 개혁문제를 둘러 싸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다. 전자는 지주적 입장에서 지주제를 유지 하는 가운데 부세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후자는 농 민적 입장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의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 서 井田論・均田論・限田論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근대 사회를 독립 자영하 는 소농경제에 기초한 사회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 문제에 접근한 것이 다.19) 이를 위해서는 상업이 발달해야 하며, 지주는 지주제를 해체시키는 가 운데 상업 자본으로 전환하고, 농민의 경제 안정과 상품생산을 통한 근대화

<sup>16)</sup> 갑오개혁의 조세 금납화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오두환. 〈갑오개혁기의 부세 금납화에 관한 연구〉(《경제사학》 7. 1984). 왕현종. 〈한말(1894~1904) 지세제도의 개혁과 성격〉(《한국사연구》77. 1992). 이영호. 《1894~1910년 지세제도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sup>17)</sup> 홍성찬, 《한국 근대농촌사회와 지주층》(지식산업사, 1992)의 참고 문헌의 사례 연구 참조. 여기에 예시된 지주들은 대부분 개항과 더불어 급격히 상승해 가 는 전형적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의 성장은 신분적 속성과 크게 관 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sup>18)</sup> 김용섭. 〈강화 김씨가의 지주경영과 그 성쇠〉(《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1992) 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강화 김씨가는 개항기 쌀무역과 관련한 전형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sup>19)</sup> 김용섭, 〈한말 고종조의 토지개혁론〉(《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일조각, 1988) 참조.

를 겨냥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면서 지주층과 일정한 타협을 겨냥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지주의 토지소유를 인정하되 지대를 대폭 낮추어 장기적으로 지주제 해체를 겨냥한 滅租論이 그것이다. 감조론은 당시 농업문제 해결방안의 한 조류였으며, 대한제국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참여했던 海鶴 李沂도 주장한 바 있다.20)

반면 문명개화론자들은 지주의 상품생산을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연결시켜 야 한다는 명제 아래 농업문제 해결책을 두 방향에서 모색했다. 하나는 주류 견해로 이제까지 발전해 온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을 그대로 추인하는 가운데 지주제를 중심으로 생산력을 발전시켜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김옥균・박영효 등이 조선 후기 이래 정부 지배층이 추진해 온 삼정개혁론의 입장에서 지조개정을 주장하고, 신전개발・산림 천택의 치수・도로와 수리시설의 보수・목축의 장려 등 생산력 확충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21)

다른 하나는 소유권은 기존대로 유지하게 하고 경영권에서 타협점을 제시한 견해이다. 유길준의 개혁안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그는《護富論》에서 사유재산권은 보호해야 하며, 토지개혁은 부유층의 원한을 사고 농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지주제를 주축으로 한 농업진흥론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고 부국강병한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다. 방법은 서양 농학을 도입하여 농업기술을 개량하고 농지개발을 추진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정부에서 자금을 대여하여 새로운 회사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이 과제를 수행하려는 것이었다. 개혁은 지주제를 바탕으로 하되 농민의 입장을 일정하게 고려한 방식으로 수행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대를 경감하고 작인의 경작권을 보장하는 대신, 지세는 지주와 작인이 공동 부담하는 방안이었다.22)

<sup>20)</sup> 李 沂、〈田制〉(《海鶴遺書》, 국사편찬위원회, 1956). 이기의 田制에 대해서는 김용섭,〈광무년간의 양전·지계사업〉(《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1988). 최원규,〈19세기 양전론의 추이와 성격〉(《중산정덕기박사화갑기념 한국사학 논총》, 1996) 참조.

<sup>21)</sup> 김용섭, 〈갑신 갑오개혁기 개화파의 농업론〉(《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일조 각, 1988) 참조.

정부는 문명개화론자들의 방안을 정책의 기조로 채택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유관계는 논외로 하고 농업기술 문제나 농업경영 구조개선 문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갑신정변 전야 정부는 1880년 이후 계속된 한해 · 개항무역 · 물가 상승 · 군란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생산력 확충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 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갔다.23) 농과규칙과 농정에 관한 교지가 그 대 책이었다.

통리군국사무아문에서 공포한 農課規則(1883년 11월 29일)은 通戶規則・農 務規則・農桑規則으로 구성되었다.24) 통호규칙은 5가작통의 戸法 아래 각 통에는 統首, 마을에는 副正, 읍에는 農課長의 직제를 신설하고, 권농에 힘쓰 고 농사를 방해하며 놀고 먹는 자를 금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농무규 칙은 농지개간과 수리시설의 신설과 보수를 강조했다. 농상규칙은 양잠업을 비롯한 목면 마포 등 상업적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 다. 특히 농무규칙은 진황지를 개간한 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조치로. 진전을 개발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하고 농민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 이었다. 이 방안은 일반 민인이 진황지를 개간하여 자기 소유지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한 조치였지만, 계속 발전해 온 사적 소유권을 일면 부정하는 조치이기도 했다. 권력층은 이 조문을 빌미로 개간이라는 명분 아래 농민의 사유지를 약탈하는 데 이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25)

1884년 9월에 시달한 농정에 관한 교지도 부국강병을 위한 생산력 확충 방안이었다.26) 그것은 농상ㆍ직조ㆍ목축ㆍ차ㆍ종이 등을 관장하는 기구를 설 치하고,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敎民興業하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전자로서 蠶 桑公司・織造局 등의 기구를 만들고. 후자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자

<sup>22)</sup>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유길준 전서》 1(서유견문), 일조각, 1971, 120~121쪽 ; 《유길준 전서》 4(정치 경제편), 지제의, 135~178쪽.

<sup>23)</sup> 정부의 농정책은 김용섭, 앞의 책(하), 〈갑신 갑오개혁기 개화파의 농업론〉, 1988과 이영학, 〈개항기 조선의 농업정책〉(《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 가 건설》. 1997) 참조.

<sup>24) 《</sup>한성순보》 제7호 내아문포시, 1883년 12월 1일.

<sup>25)</sup> 김용섭, 앞의 책(하), 〈고종조 왕실의 균전수도 문제〉, 1988에서 전북지역에서 왕실이 농민의 소유지를 개간을 빌미로 약탈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sup>26) 《</sup>일성록》, 1884. 9, 12.

본 이외에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새로운 회사형태의 농장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소지주층 이상의 부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자금을 모아 구래의 계나 향약을 기반으로 서구 자본주의사회에서 성행하는 방식의 회사를 설립하여 民富와 國富를 꾀하려는 방안이었다.27)

1885년 정부는 중앙에는 京城農桑會社章程을, 지방에는 交河農桑會社節目를 만들어 회사 설립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sup>28)</sup> 회사 설립자금은 양반지주층을 중심으로 평천민의 지주나 부농층도 사원으로 흡수하여 충당하도록 했다. 운영방식은 향약이나 계의 규약을 기반으로 삼되, 본래의 주 기능인 농민통제 기능은 제거하고 상부상조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었다. 이익은출자에 따라 배당하도록 했다. 사업은 신전이나 진전 등 농지개발을 통해 富를 축적하는 것이 주 목표였으며, 아울러 몰락하여 놀고 먹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 정착 경영하도록 하여 농촌경제의 안정성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었다. 농지경영 방식은 소작인에 대여하는 지주경영, 임노동을 이용하여 직영하는 농장경영, 자본가로서의 차지경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전반적으로 회사 경영 양식은 자본가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나 신분제적 농민통제기능을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은 1894년에 경성농상회사장정을 기초로 재정비한 官許農桑會社章程에서 수정 보완되었다.<sup>29)</sup> 생산력 확충 방법으로 관개시설을 수축하고 水糞法을 채용하여 생산성을 높히는 전통적인 방안 외에, 서구의 기계와 농학을 도입하고 학교를 세워 교육시키는 방안도 새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자금은 단순 모집한 사원의 투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 혹은 외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했다. 그리고 장정 안에 남아 있던 신분제적 요소는 완전히 제거했다.<sup>30)</sup>

서양 농학을 도입하여 농업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농업시험장의 설치와 연구, 농학교의 설립, 농서의 편찬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었다. 1884

<sup>27) 《</sup>한성순보》, 회사설, 1883. 10. 21.

<sup>28) 《</sup>京城農桑會社章程》、《交河農桑會社節目》(奎古 4256-44).

<sup>29)《</sup>官許農桑會社章程》(奎 15322).

<sup>30)</sup> 한우근,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일조각, 1970), 230~232쪽과 김용섭, 앞의 책, 〈갑신 갑오개혁기 개화파의 농업론〉, 1988, 74~89쪽.

년 농무목축시험장을 설치하고 미국으로부터 농기구와 종자 및 가축 등을 수입하여 새로운 농업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책임자는 崔景錫이었 다. 그는 국내외 작물 344종. 가축 64수를 길러 수확물 종자와 해설서를 305 개 지방으로 보내 재배하도록 권장했다. 그리고 양잠을 육성하기 위해 잠상 공사를 설치하고 독일인 기사를 고빙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농서를 번역 하여 보급할 것을 꾀했다. 李祐珪와 金思轍은 《增補蠶桑輯要》(1884), 이희규 는《蠶桑輯要》(1886)를 편찬했으며, 이우규는 더 넓은 계충에 보급하기 위해 한글본의 《桑蠶撮要》를 편찬하기도 했다.

서구 농학 중심의 농서를 편찬하여 보급하는 시도도 했다. 安宗洙의 《農政 新編》(1881), 鄭秉夏의 《農政撮要》(1886), 李宗遠의 《農談》(1894), 池錫永의 《重 麥設》등이 그것이다. 일본 농학계에 소개된 서구 농학을 그대로 도입 소개 한 것으로 지주의 상업적 농업과 상품화가 주 목표였다.31)

농학교를 설립하여 서구의 농학을 교육시키는 작업도 병행했다. 2년제의 農務學堂을 설립하고 영국인 농학교사를 초빙하여 서구의 농학을 교육시켰 다. 교육내용은 토지개량・목축・농지개간 등이 중심이었으며, 교과로는 농 학・耕圃學・농화학・농기학・가축학・수학 등 구래의 농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선정부의 농정책은 현실적으로 지주의 도움없이 수행하기는 어려웠지 만 지주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소유권에 안주하여 지대만을 수탈하는 지주가 아니라 농업경영 능력이 있는 지주를 비롯한 부농층을 대 상으로 한 농정책을 구상했다. 당시 서로 다른 두 개혁론이 서로 대립 갈등 하면서도 정부측의 이같은 농정책에서 볼 때 경영권을 중심으로 양자간에 일정한 타협을 예상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1894년 농민전쟁에서는 정부와

<sup>31)</sup> 농서의 편찬과 내용은 다음 글이 참고된다.

이광린. 〈안종수와 농정신편〉, 〈농무목축시험장의 설치〉(《한국개화사연구》, 일 조각, 1969).

김용섭, 앞의 책(하),〈갑신·갑오 개혁기 개화파의 농업론〉, 1988.

김용섭, 앞의 책. 〈근대화과정에서의 농업개혁의 두 방향〉. 1992.

김영진, 《농림수산고문헌비요》(서울농촌경제연구원, 1982).

이춘녕. 〈개항 및 일정시대의 농학에 관한 연구〉(《학술원논문집(자연과학편)》 31, 1992).

농민군이〈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홀 事〉라는 경영권을 중심으로 한 타협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로 지향점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외세의 침입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기존의 소유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경작권 차원에서 농민 경제의 안정과 균산을 바탕으로 한 생산력 확충방안을 타협안으로 도출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32)

대한제국은 1898년 이 점을 고려하여 양전·관계발급 사업이라는 일련의 근대적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내용은 구래의 소유권을 근대의 소유권으로 추인하되 경작권을 물권으로 인정하고, 지세는 지주와 작인이 공동책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을 마련 근대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무엇보다 생산력 확충을 통한 국부의 증진이 최대 목표였기때문에 여기에 충실한 지주층을 근대 개혁의 바탕으로 삼고 농민층도 여기에 가능한 끌어 들이는 방향에서 정책을 결정했던 것이다.33)

# 2) 지주제의 유형과 동향

개항기 지주제는 조선 후기 지주제를 기본 토대로 재편 발전하고 있었다. 종전 지주제는 크게 병작지주와 병작과 家作을 겸영하는 경영지주로 구분된 다.34) 병작제는 경작인이 독립 소경영을 하고 지주는 농업경영에서 분리된

<sup>32)</sup> 최원규, 앞의 책. 〈19세기 양전론의 추이와 성격〉, 1996 참조.

<sup>33)</sup> 한국역사연구회,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민음사, 1995) 참조. 이 때 양전 사업을 담당했던 김성규는 사업 직전 이 방식을 자기 관할지역의 역둔토에서 실제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作人常定法' '恒定賭租法'을 정하여 실시하고 이를 관리할 농촌자치기구의 개혁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김용섭, 〈광무개혁기의 양무감리 김성규의 사회경제론〉(《한국근대 농업사연구》하, 일조각, 1988); 박찬승, 〈한말 역둔토에서의 지주경영의 강화와 항조〉(《한국사론》9, 1983) 참조.

<sup>34)</sup> 조선 후기 지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김용섭,《조선후기농업사연구(증보판)》1(일조각, 1995).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증보판)》 2(일조각, 1990).

허종호. 《조선 봉건말기 소작제연구》. 1965.

이세영, 〈18·19세기 농촌사회의 계급구조〉(《동양학》21, 1991).

김건태, 《16·18세기 양반지주층의 농업경영과 농민층의 동향》(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채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지대만을 수취하는 형태였다. 병작지주는 주로 권력을 동반한 왕실을 비롯하여 양반·중인 등 중앙 권귀들로, 소유규모가 만석, 천석, 수백 석에 달하는 대지주들이 주류였다. 경영지주는 병작을 주로하면서도 소유지의 일부를 지주가 직영하는 가작제를 겸영하는 존재로, 일반적으로 재지 양반지주들의 농업경영 형태였다. 따라서 경영의 성격은 상업적목적보다는 양반으로서의 체모를 유지하는 자족적 성격이 강했다.35)

전통적으로 병작지주는 지주경영에서의 지대, 長利 혹은 甲利라는 고리대를 통해 부를 축적하여 토지를 집적해 갔다. 신분질서·향촌통제력 등 경제외적 강제가 지주경영의 유지와 확대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생산력과 상품화폐 유통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주제는 확대 발전의 전망과 동시에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신분제의 해체가 노골화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농민적 상품화를 지향하는 농민층의 도전도 그만큼 격렬해졌다. 拒納, 衍納나아가 항조운동이 격심해지고, 몰락 농민층이 크게 증대하고 도적떼가 빈번히 출몰하는 등 지주경영에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항 이후 더욱 증폭되어 갔다. 쌀무역이 확대되면서 지주의 재부축적 여건이 좋아진 반면, 이에 반대하는 농민운동도 농민항쟁·농민전쟁으로 양적 질적으로 확대 발전해 간 것이다. 농촌현실은 지주제의 발전과 농민몰락의 증대라는 현상과, 지주제의 정체와 농민경제의 안정화 운동이라는 모순된 현상이 중첩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경제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강제로 편입되는 새로운 조건 아래 구래의 경영구조를 적극 탈피해 가면서 합리적 경영방식을 동원하여 쌀 상품화에 적극 참여한 지주나 부농층은 성장해 간 반면, 구래의 신분적 지배력을 상실했으면서도 여기에 의존한 종래의 경영방식을 묵수한 지주들은 농민적 상품화 세력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정체 혹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개항이라는 격변기에 대처하는 대응자세에 따라 지주들 스스로가 자기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전자는 개항 무역을 적극 활용해 가는 상인 관료적 성격을 일신에 체현하며 경영변화를 시도한 지주이며, 후자는 반일·반개화 입장에서 중세적 질서

<sup>35)</sup> 김용섭, 〈조선후기 양반층의 농업생산〉(《조선후기농업사연구(증보판)》2, 1990) 참조.

를 묵수해 간 지주였다.36) 전자의 유형에는 개항 전에 양반 관료 혹은 궁방의 중간관리인으로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도 있었지만, 빈농 소상인에서 입신하여 대토지를 집적한 경우도 있었다.37) 이 점은 신분적, 관료적 지배력이 여전히 지주제의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요건이기는 했지만 유통경제에 대한 적응력이나 농업경영 능력이 더욱 결정적인 조건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시대의 변동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봉건적 성격을 간직한 후자의 유형에는 주자학으로 무장한 양반지주, 원격지의 부재지주, 그리고 궁방·서원·향교 등과 같은 봉건기관 지주들을 들 수 있다. 38) 이들은 대체로 중세 해체기라는 조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지주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주의 경영능력 및 경작인과 舍音 등 지주지 관리자들을 장악하는데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특히 농민이 사실상 소유권적 권리를 가진 일부 궁방전의 경우는 더욱 관리가 어려웠다. 이들의 성장과 유지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은 경제외적 강제였으며, 이것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대수입은 불안정성을 노출하면서 계속 감소경향을 보였다. 지주가 직접 농업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한 가운데 나타난 구조적 문제였다. 소유권과 경영권이 거의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정율지대에 기생하는 지주가 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웠다. 지주들이 소유권의 절대성을 확보하여 토지권을 전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만큼 경작권이나 마름 등의 관리권이 강화되는 상황의 반영으로 마름의 중간 작폐

<sup>36)</sup> 홍성찬,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동방학지》49, 1985), 114~115쪽; 〈한 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동방학지》53, 1986), 156~170쪽.

<sup>37)</sup> 장시원, 《일제하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그러한 예로는 홍성찬, 앞의 글(《한국사연구》33, 1982)가 참고된다.

<sup>38)</sup> 이러한 예로는 이영훈, 〈개항기 지주제의 일 존재형태와 그 정체적 위기의 실상〉(《경제사학》9, 1985); 〈개항기 농촌사회 재편의 역사적 의의〉(《한국자본주의론》, 한울, 1989);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제39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1996). 그리고 최원규, 〈조선후기 서원전의 구조와경영〉(《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7)이 참고된다. 궁방전에서 농민의 성장 가능성을 예시한 논문으로는 왕현종, 〈19세기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1894년 농민전쟁연구 1》, 역사비평사, 1991)이 참고된다.

가 심해지고 작인들의 항조운동이 격발한 것이다. 여기에 휩쌓인 지주제는 정체 혹은 쇠퇴할 수 밖에 없었다.

지주제는 세제의 도결화나 조세 금납화와 같은 부세제도의 변동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39) 토지에 집중적으로 조세가 부과되는 도결화로 지세부담이 가중되자 지주들은 작인에 부담을 전가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기도 했지만, 지주제 강화에 반하는 작용도 했다. 즉 이는 당장은 지주권의 강화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 지주를 경영에서 더욱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지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경영에서 배제되어 기생적 성질을 가진 지주제는 봉건적 제 관계가 약화 소멸되면서 존립기반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었다. 소유권적 권리가 경작권에 크게 위협을 받은 것이다. 조세 금납화도 조세납부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조세 금납화는 종전현물조세를 상품화하여 화폐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관료가 조세를 현물로 거두어 상품화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세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지주적 상품화에 혹은 농민적 상품화에 기여했다.

국교확대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추어 지주경영을 확대 성장시켜 간 지주들이 주목된다. 이들은 자기가 처한 조건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구래의 전형적 경영형태인 병작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직영지 경영을 확대하는 등 경영방식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성장해 간 지주들을 특히 주목하고 싶다. 이들의 직영지 경영에는 예속적 노동력이나 임노동이 동원되었다. 농업환경의 변동과 작인의 저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주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 방법이유효했던 것이다.40)

구래의 경영지주들이 동원한 노동력의 유형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다. 대여 지 경영에 동원되는 농민들은 지대납부 외에는 지주가와 무관한 독립 소경 영을 하는 존재였던 반면, 직영지 경영에 동원되는 노동력은 지주가 보유한

<sup>39)</sup> 부세제도의 변동은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②》, 537~539쪽의 글 참조.

<sup>40)</sup> 이러한 직영지 경영의 사례연구로는 김용섭, 〈나주 이씨가의 지주경영의 성장과 변동〉(《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1992)와 최원규, 〈한말 일제하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한국사연구》50·51, 1985)가 참고가 된다.

노비나 고공, 호저집 노동력 등으로 지주가의 농업경영에 종속된 채 예속적 노동에 종사하는 존재였다.41)

19세기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이들의 처지도 변동되었다. 전과 달리 지주의예속관계를 벗어난 몰락농민들이 주류를 이룬 것이다. 이들은 단기 고공이나일고처럼 양반 토호에 인신적 지배를 당하는 관계가 아닌 자유로운 임노동자였지만, 借地 借家하는 작인으로서 고역적 노동을 강요받는 존재이기도 했다. 42) 이들은 주로 지주가의 직영지 경영이나 연료채취, 퇴비제조 등에 동원되었다. 그 대신 반대급부로 소작지를 헐하게 경작하거나 지대를 면제받았으며, 농촌인구의 20~30%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하였다.43) 이들을 고용하는 경영지주는 병작지주와 달리 지주가 직접 농업경영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경영형 지주로 자기 변신을 꾀하기도 했다. 이 때가 되면 이러한 형태의 경영방식이 이미 토호양반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부농경영을 하는 서민들도 지주제로 변신을 할 때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성장을 꾀하기도 했던 것이다.

대여지와 직영지는 경영방식의 차이로 구분한 것이지만, 수확물의 사용처에도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家作 직영지의 수확물은 지주가와 노복의생활, 즉 가계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sup>44)</sup> 그러나 쌀의 상품화의 진전,

<sup>41)</sup> 조선 후기 직영지 경영을 하는 지주에 대한 연구로는 김용섭, 앞의 책,〈조선 후기 양반층의 농업생산〉, 1990; 이세영,〈18·19세기 양반토호의 지주경영〉(《한국문화》6, 1985)가 있다.

<sup>42)</sup> 토호의 행랑 등에 거주하는 협호는 행랑인·협방인·랑속·랑저로, 토호가 지어 준 독립가옥 즉 農幕에 거주하는 협호는 고직·농막인·묘직으로 불렸다. 이들은 종속소작인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총독부,《조선의 소작관행》상(1932, 816~821쪽),(하)속편(99~111쪽)에 당시 실태가 조사되어 있다.

<sup>43)</sup> 협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이영훈, 〈언양호적을 통해본 주호-협호관계와 호정의 운영상황-〉(《조선후 기사회경제사》, 한길사, 1988).

박용숙, <18·19세기의 고공-경상도 언양현 호적의 분석->(《부대사학》7, 1983).

<sup>44)</sup> 이두순·박석두,《한말 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농업경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과 이종범,〈20세기초 자영(소)지주의 농업경영과 농민생활〉(《학림》16, 1994)에 소개된 구례 유씨가의 자작경영은 1898년, 1899년의 경우 총 답44두락과 전 5두락의 규모였다. 가작은 糧米冊의〈流來家作1〉이라는 표현에

특히 개항후 쌀무역이 확대되고 작인들의 항조운동이 격화되면서 가작경영 도 시세변화에 대응하여 그 운영방식을 달리하고 있었다. 당시 지주는 쌀의 상품화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그 주축을 대여지 경영에 두었지만 직영지도 여기서 제외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두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대의 수 익을 확보해 간 것이다. 대여지 경영이 어려울 때는 직영지를 늘려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직영지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조운동과 같은 작인들 의 저항이 발생하여 대여지 경영이 어려움 때 특히 이러한 양상을 보였다.

〈丑 2〉 해남 윤씨가 직영지 규모 (단위: 결-부-속)

년도	총농지소유면적	자작지	%	년도	총농지소유면적	자작지	%
1872	18-40-2	3-4-4	16.5	1893	_	4-85-8	_
1878	18-80-0	3-38-3	18	1894	21-44-0	6-40-2	29.9
1882	19-29-5	2-88-8	15	1895	21-44-0	_	_
1885	18-34-2	2-95-9	16.1	1919	36-32-3	2-59-7	7.1
1889	21-22-5	3-16-8	15	1929	_	11두락	-
1890	21-11-9	3-6-8	14.5				

<sup>\*</sup> 자료 : 최원규, 앞의 글, 《한국사연구》 50·51, 297쪽.

해남 윤씨가의 농업경영에서 전형적인 예를 살펴 볼 수 있다.45) 농민전쟁 기를 전후한 시기에 대여지 경영을 축소하고 직영지 경영을 확대해 가는 모 습을 보였다. 당시 지주들은 지대 경감책이나 탈경 이작책만으로는 양자의 대립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직영지를 확대하여 작인 농민 과의 대립을 피하고 소득도 늘릴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구시대와 달리 소유 와 경영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지주경영의 구조조정을 시도한 것이다. 이 방식은 여러 사례연구에서 예시한 것처럼 당시 관행적 농업경영 방식의 하 나였다. 봉건성과 근대성을 동시에 지닌 이러한 지주경영 방식의 추이는 지

서 보듯 유씨가의 전통적인 농업경영 방식의 하나였다. 그리고 김병하. 《한국 농업경영사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에 소개된 전라도 부안의 황상익 가는 146.8두락 중 45두락 31%가량을 직영했다.

<sup>45)</sup> 최원규, 앞의 글(《한국사연구》50·51, 1985) 참조.

주권과 경작권의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결정되었다. 직영지 경영은 일제하에 지주제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소멸되는 모습을 보였다.

# 3) 농업생산과 지대의 변화

국교확대는 지주경영 내부의 변동도 초래했다. 理財에 밝은 지주들은 시장 경쟁력이 높은 양질의 쌀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경영에 직접 개입을 시도했 다. 우량품종의 재배강제, 적기수확, 적당한 건조 제조를 위한 감독, 정미가 공업의 도입 등 생산과정에 개입하여 출하 쌀의 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자 금을 확보하여 미가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리고 수리시설을 확보하고 개간지를 확보해 가는 작업도 병행했 다.46) 생산과 유통과정의 구조개편 작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 작업은 조선 후기 지주제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개항기에는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특징적으로는 일본의 쌀 수출과 관련하여 경남 호남 등의 개항 배후지에서 왜도를 도입하여 품종을 교체하는 작업이 시도된 것을 들 수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1890년 중반, 전남 학교와 함평은 1890년 전후, 나주・영산포부근은 1894・5년경, 부안・만경지방에서 전래되어 널리 퍼진 것은 1897년 이후였는데 10중 2~3이 倭粗의 재배지역이었으며, 전주지방도 10중 4~5의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계층은 일본품종이라는 점에서 지주・부농 등 상업적 농업을 주도하는 계층이었을 것이다.47)

지대징수 방식도 지역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종래 지주경영에서는 주로 타조로 지대를 받았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8세기말·19세기 주류적 형태였던 타조제는 점차 도조제로의 전환 경향이 증가해 갔다. 賭地制는 풍 흉과 비교적 관계없이 지대가 일정하기 때문에 흉년이 들 경우에는 경작자

<sup>46)</sup> 수리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이광린. 《이조수리사연구》. 1961.

宮嶋博史、〈李朝後期の農業水利〉(《東洋史研究》41-4, 1983).

최원규. 〈조선 후기 수리기구와 경영문제〉(《국사관논총》39, 1992).

<sup>47)</sup> 하원호, 앞의 책, 299~301쪽.

의 타격이 컸기 때문에 농작이 비교적 안정적인 곳에서 실시되었다. 특히 한 전에서는 병작 경영이 곤란하여 도지제의 발전이 현저했다.

도지제로의 변화 요인은 여러 곳에서 찾음 수 있다. 변화의 기본 토대는 생산력 발전에 있었지만, 지주경영 방식에 따라 변화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궁방같은 부재지주지에서 많이 발생했다. 궁방에서는 안정적으로 재정 을 확보해야 한다는 특수성과 부재지주로서 경영의 편리성 때문에 도지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다. 지대수취의 번잡성과 항조운동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도 도지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것이 농촌사회의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48)

이러한 와중에 지주는 더 많은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도지를 혁파하고 병 작반수의 타조제로 다시 역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도지제가 관행으로 정착되 는 과정에서 지주와 경작자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대립 갈등했다. 그 이유 는 통상 도조가 타조에 비해 지대가 저렴하고 경작기간이 보장되어 지주가 마음대로 移作도 할 수 없는, 경작자에 유리한 경영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지제가 반드시 지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타조와 달리 도지제에서는 종자와 지세를 경작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작인 에 더 많은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결과로 지대는 타조제→도지 제→타조제→도지제라는 반복된 변화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도지제 이외에 지대수취방법에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도지제 보다 지대가 낮은 정액 원정제가 실시되었으며49) 지대의 운반문제, 作錢과정

<sup>48)</sup> 도지제 변동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허종호, 앞의 책, 1965.

김용섭. 〈한말에 있어서의 중답주와 역둔토지주제〉(《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1988).

이영호, <18·19세기 지대형태의 변화와 농업경영의 변동>(《한국사론》11, 1984).

도진순, 〈19세기 궁장토에서의 중답주와 항조〉(《한국사론》13, 1985).

이윤갑. 《한국근대의 상업적 농업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sup>49)《</sup>筆岩書院誌》刊 3. 散文 稟報、고종 경자 유 8월、〈院畓九斗落在於西二麥洞 而以賭租言之 可捧六石 而本孫渠自元定四斗耕作 且四斗落在於邑東月坪 而以賭 和言之可捧二石 而本孫渠自元定士五斗耕作 即院任之力 皆未能移時作 目未能破 元定 盖年有久矣 前敢緣由稟報特爲處分爲臥乎事〉.

에서의 폐단 문제, 그리고 지주측의 일정한 화폐수요를 반영한 作錢上納도 실시되었다. 나아가 정액 화폐제인 도전제도 나타나고 있었다.50) 이러한 추 세 속에서 1880년대에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의 전환이 집중적으로 일어 나는 곳도 있었다.51)

도지제는 지주의 경작강제를 배제하고 작인이 경영권을 강화시켜 간 표현물이었다. 도지제에서 작인에게 지세를 부담시킨 것은 소유권을 배제하고 경작권이 국가와 직접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담당자로서 작인의권리가 신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때 작인은 경영의 독립성을획득한 생산력 증가의 주체로서 농민적 상품생산을 주도해 갈 수 있었다. 이를 주도한 계층은 그 중에서도 생산력적 조건이 우위에 있는 이점을 살려차지경쟁에서 승리한 부농이었으며, 이들은 일고 노동자를 고용해 廣作을 하고 상업적 농업을 통해 부농경영을 해 갔다. 그러나 차지경영의 확대는 동시에 다른 농민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농민층 분해를 촉진시키고 이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52)

경작권의 강화와는 반대로 지주제의 확대 강화 경향도 동시에 보였다. 구래의 지주와 달리 지주가 농업경영에 직접 개입하여 수입을 극대화시켜 가는 방향이었다. 일반 민전지주제, 그 중에서도 개항장 배후지에서 이러한 경향이 현저했지만, 왕실에서도 소유권이 약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지주경영을 확대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했다. 궁방전의 경우는 소유권적 권리가 있는 유토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유토에는 궁방(지주)↔작인의 구조, 궁방(수조자, 지주)↔중답주(中畓主) 도장(導掌 지주)↔작인의 구조로 된 것이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경영이 불안정하여 지대가 감소하는 등 현실적으로 지주경영에 많

<sup>50)</sup> 허종호, 앞의 책, 1965와 홍희유, 〈18세기중엽 화폐지대의 발생〉(《역사과학》, 1966. 4) 참조.

<sup>51)</sup> 이윤갑, 앞의 글, 1993, 111쪽. 그리고 홍성찬, 앞의 글(《동방학지》49, 1985, 123쪽)에 예시된 原定이나 元定은 1909~1910년의 예이지만, 이 때는 전반적으로 지주제가 강화되던 시기라는 점에서 도조제의 강인성을 보여주는 적당한 사례라 생각된다.

<sup>52)</sup>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지주들의 한국 농촌지배가 강화되면서 집수제가 도입되는 등 지주들의 농민장악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윤갑, 앞의 글, 1993,  $105 \sim 114$ 쪽.

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궁방은 갑오개혁 무렵부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했다.

첫째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배타적 소유권자로서 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역둔토 사검사업을 실시하여 소유권 확인 작업 을 벌리는 한편, 개간규정을 이용하여 소유지를 확대시키는 조치도 강구했 다. 여기서 개간자인 왕실과 사실상의 소유자인 농민이 소유권을 둘러싼 분 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둘째 합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었던 중답주권을 빼앗 아 중답주를 제거하고 지대수입을 증가시켰다. 셋째 작인 파악을 강화하고 지대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수탈 강화라는 측면도 있 지만, 민전 도지제처럼 작인의 경작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지대수취의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다. 궁방의 일차적 목표는 배타적 소유권의 확보 에 있었고 이를 얻는 대가로 경작권을 일정하게 보장해 준 것이었다.53)

지주층은 농민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했으나 작인의 견제와 저항. 그리고 외 압에 직면하여 그 과실을 완전히 획득하지 못하고 작인들과 일정한 타협 속 에서 이 같은 길을 택한 것이다. 여전히 부농적 발전의 길이 아직 열려 있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주제도 부농적 경영방식을 도입할 때 성장의 가능성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은 지주 가 사례연구에서 보듯 지주들이 농민전쟁이나 의병전쟁에서 작인들과 대립 갈등하면서도 작인과 적절히 타협하는 가운데 대응책을 강구하여 일정한 성 장을 보인 데서도 알 수 있다.

하편 민전 지주들의 경우 작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직영지 경영을 확 대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지주지를 방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주제를 일부 포기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주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강

<sup>53)</sup>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김용섭. 〈한말에 있어서의 중답주와 역둔토지주제〉, 앞의 책(하), 1988.

김용섭, 〈고종조 왕실의 균전수도문제〉, 앞의 책(하), 1988.

배영순. 〈하말 역둔토 조사에 있어서 소유권 분쟁〉(《하국사연구》25. 1979).

박진태. 《한말 역둔토조사의 역사적 성격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최원규, 〈한말 일제초기 일제의 토지권 인식과 그 정리방향〉(《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1997).

구했다. 일부 지주들은 지대 수취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작인에 대한 강경책을 시도했다. 차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경작권을 뺏는 이작을 통해 작인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경작권 박탈은 작인의 생존권을 뺏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쟁송이 벌어질 경우 지주는 臨農奪耕이 아닌 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奪耕移作을 하려 하나 작인의 항쟁이 두려워 이작을 하지 못함은 물론 지대를 받지못하는 곤경에 빠지기도 했다.54) 지주의 경영강화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지주경영책을 마련한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 한 예를 서울 지주가의 《勸農節目》에서 살펴 볼 수있다.55) 권농절목은 작인에게 일정한 양보를 전제로 장토를 경영하여 수익을확보하려는 지주의 경영개선책이었다. 여기서는 이작에 관한 사항이 15개항중 8개조를 차지한 데서 보듯, 작인들의 대지주 투쟁의 원인이 移作에 있다고 보고 상호 대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숨音이나 監打官의 請囑을 받아 이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작인들로부터 지극한 원한을 사지 말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뒤 작인 선정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농사에 게으르고 항조하는 자와 협잡 타조하는 자는 탈경 이작시켜 극력 제거하도록하고, 영농과 상납에 근실한 농민은 계속 차경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이작은 농업경영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농지를 재조정하여 거주지 부근 농지로 옮기는 등 작인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가능한 한 부농층을 작인으로 끌어 들이려는 방안이라고 하겠다.56)

지주제를 해체하지 않는 한 대립은 경작권의 운영을 둘러싸고 전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경작자를 가능한 한 포괄하여 대립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지주와 작인이 義契 같은 契를 함께 조직하여 상하간의 의리를 강조하면서 농민의 저항을 방지하는 방안이 그 일환으로 제기되기도 했다.57)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주측이 지주로서 양

<sup>54)</sup> 김용섭, 〈18·19세기의 농업실정과 새로운 농업경영론〉, 앞의 책(상), 1988, 66쪽.

<sup>55) 《</sup>勸農節目》(奎古 No. 163507의 1).

<sup>56)</sup> 김용섭, 위의 글(《위 책》상, 1988), 66~7쪽.

보함 수 있는 최고 수준인 〈均分而作〉하여 이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실천에 옮겨지기도 했다.58) 1894년 농민전쟁 때 농민군은 전쟁과정 에서 지주의 도조나 전답문서를 몰수하는 등 지주경영에 저항하면서도 정부 지배층이 제시한 이 안에 따라 토지의 평균분작을 타협안으로 도출한 것이 다.59) 이 안은 지주의 소유권은 용인하되 경영권은 농민에 맡겨 농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이었다.

# 4) 1894년 이후 지주제 전망

1894년을 계기로 쌀무역이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점, 농민전쟁에서 농민군 이 패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지주제의 양적 질적 발전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하나는 의병전쟁ㆍ활빈당 운동 등 농민층의 저항과 집단항쟁이 여전히 계속 되는 등 지주제 강화를 위한 무력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는 일제의 침략이 심화되면서 지주와 농민간의 계급갈등보다 당면한 민족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로 대두되어 서로 타협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는 점이다.

이러한 타협선에서 대한제국은 근대화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정책과 토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양전ㆍ관계발급사업은 기존 소유권을 근대적 소유권 으로 추인한다는 점에서 지주제를 대원칙으로 했지만, 경작권의 물권화 그리 고 지주와 작인 동시 납세제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농민적 상품화의 여지를 여전히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지주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직조업ㆍ철공장ㆍ금융ㆍ보험회사 등 각종 근대적 시설이 설립되고 여기에 지주들이 자본을 투자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관료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관료로서의 지위 특권을 이용하여 부를 쌓은 지주층으로서 이른바 지주자본을 산업자본으로

<sup>57)</sup> 최원규, 앞의 글(《한국사연구》50·51, 1985), 282~286쪽.

<sup>58)</sup> 홍성찬, 앞의 글(《동방학지》 53, 1986), 162쪽.

<sup>59)</sup>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일조각, 1993), 27~281·373~385쪽.

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600 또한 이것은 당시 지주경영이 위기에 직면했음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책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일제는 한국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통치권을 확보하면서 지주제를 토대로 한국 농촌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체제 재편정책을 편 것이다. 그것은 소유권의 절대성을 토대로 한 지대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며, 이는 곧 경영권까지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한국의 농촌사회는 지주적 상품화의 절대적 지위 확보, 농민 수탈강화, 대토지소유와 영세 소경영이 확대되고 경영분해가 둔화되어 부농경영은 몰락하거나 지주경영으로 급속히 경영전환을 추진해 갔다.

〈崔元奎〉

<sup>60)</sup> 한말 자본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대왕사, 1973). 권태억, 《한국근대 면업사연구》(일조각, 1989). 전우용, 《19세기말-20세기초 한인회사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